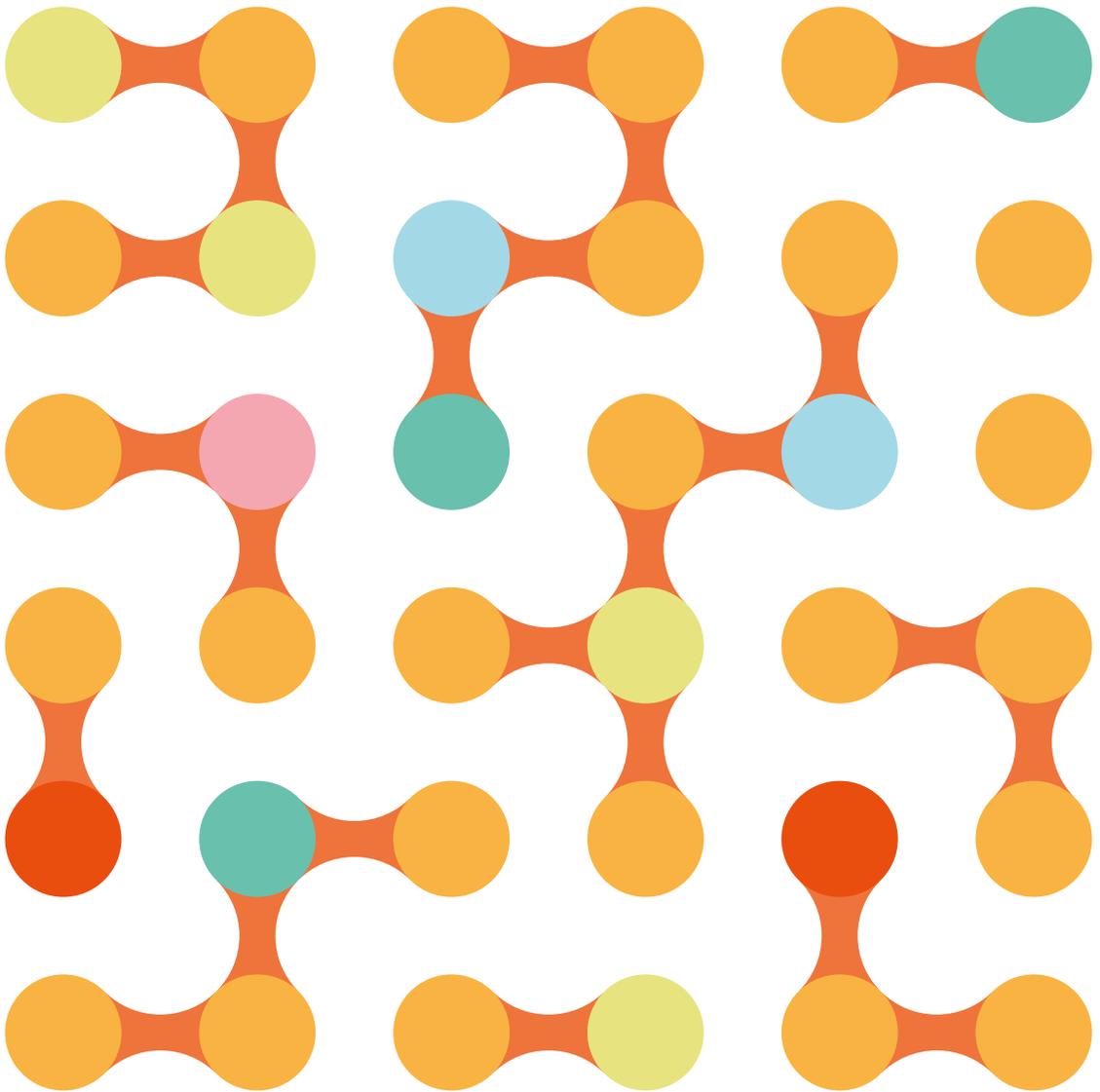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연구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 연구

목차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08
가. 신사회 위협으로서의 죽음	
나.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의 증가	
2. 연구의 방법 및 목적	12

II. 한국과 일본의 무연고사망자 장사(葬事) 행정 비교

1. 한국과 일본의 장사 문화 비교	15
가. 한국의 장사문화	
나. 일본의 장사문화	
2. 한국과 일본의 장제급여 비교	17
가. 한국의 장제급여	
나. 일본의 장제급여	
3. 한국과 일본의 무연고사망자 장사 행정 비교	19
가. 한국의 장사행정체계 및 무연고사망자 장사 행정	
나. 일본의 장사행정체계 및 무연고사망자 장사 행정	

III. 한국의 무연고사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 실태

1. 무연고사망자 현황 및 특징	28
가. 무연고사망자의 연령별 특징	
나. 무연고사망자의 성별 특징	
다. 무연고사망자와 고립사 통계의 혼용	
2. 무연고사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 관련 문제점 및 사례	32
가. 시신 위임과정의 문제	
나. 연고자 범위와 그 순위의 적용 문제	
다. 삶의 동반자 등이 진행할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장례	
라. 장례 등 사후사무를 진행할 사람이 없는 예비 무연고자	

IV. 일본 사후자기결정권 관련 사례연구

- 1. 일본 생활보호법과 사후자기결정권 38
- 2. 일본 생전계약체결 NPO법인 사례 39
 - 가. 인연의 모임(きずなの会)
 - 나. 생전계약 LISS 시스템

V. 한국의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법제 검토 및 입법제안

- 1. 헌법적 기본권 검토 50
 - 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나.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 다.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보장대상의 기본권 충돌문제
 - 라. 자기결정권
 - 마. 사후자기결정권
 - 바. 소결론
- 2. 사후자기결정권의 현행 법제 검토 55
 - 가.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된 경우
 - 나.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법률관계
- 3. 향후 입법 및 정책 방향 제안 68
 - 가. 고립사 및 무연고사망자 관련 법률 발의안 및 개정안
 - 나. 향후 입법 등 개선 방향

VI. 결론

- 1. 연구결과 요약 74
 - 2. 정책제안 76
 - 가. 체계적인 무연고사망자 통계 관리
 - 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전담 지원부서 신설
 - 다. 사회적 고립예방 대책 마련
 - 라. 탈상품화된 공영장례 제도 마련
 - 마. 공영장례를 운영하는 공공의 컨트롤 타워 구축
 - 바. 사회적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
 - 사. ‘가족 대신 장례’와 ‘내 뜻대로 장례’를 위한 법률 제·개정
 - 3. 연구의 함의 및 제한점 80
-

참고문헌	82
-------------	----

부록

1. 일본 장사(葬事) 관련 법률	86
2. 일본 사후위임계약 관련 판례	91
3. 생전계약 관련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보고서	97
4. 「가족 대신 장례」, 「내 뜻대로 장례」를 위한 일본탐방 좌담회	113
5. [칼럼]일본탐방, 일본사회와의 마주이야기	131

표 목차

[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급여종류와 내용	17
[표 2] 「생활보호법」제18조 제2항과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 및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관계	27
[표 3] 연도별 무연고사망자 현황(시도별)	28
[표 4] 성별, 연령별 무연고사망자 현황	30
[표 5] 2013년 고립사(孤獨死) 실태	31
[표 6] 인연의 모임 예탁금 내역	43
[표 7] LISS시스템 예탁금 내역	49

그림 목차

[그림 1] 연도 및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	11
[그림 2] 연도별 1인 가구 현황	11
[그림 3] 고령자 1인 가구 현황	11
[그림 4] 한국의 무연고사망자 업무흐름도	23
[그림 5]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과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25
[그림 6] 「생활보호법」적용	26
[그림 7] NPO법인 인연의 모임(きずなの会)의 역할	42
[그림 8] 생전계약 Liss시스템 구조	47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죽음은 인생에 있어 피할 수도 없고,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지막으로 거쳐야만 하는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다. 그러나 죽음은 망자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인생의 사건이 아니다. 죽은 자를 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산 자들이 행하는 의례가 수반된다(백남대·김미혜, 2015: 1-2). 이러한 의례인 전통 상·장례(喪·葬禮)는 죽은 시신의 ‘처리’ 절차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같이 모여 망자를 떠나보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이별 의식이기도 하였다(임영숙, 2017: 2).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력이 없거나, 혹은 가족 또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죽은 무연고 사망자는 죽음과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상·장례 의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주요하게는 1997년 한국경제 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의 증가와 함께 이혼 등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유기적 의존관계가 심각하게 해체된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다(김영란, 2006: 201). 이렇게 가족구조가 변화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혈연관계가 너무나 쉽게 단절되어 버린다. 또한 변화된 가족 구조는 사회적 위험의 양상에 영향을 주었고, 기존에는 사회적 위험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죽음과 장례’에 있어서도 그 심각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이제는 부모가 자식의 시신을 포기하고, 자식이 부모의 시신을 포기하기도 한다. 즉 혈연의 가족이 있지만, 무연고사망자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하고¹⁾, 이 문제가 이제는 주요한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그러자 언론사들은 해마다 무연고사망자 통계 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앞다투듯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적으로 대서특필한다.²⁾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는 달리 실제 무연고사망자는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오직 위생적이고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처리’와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동시대를 함께 살면서 한국 사회를 유지·발전하는 데에 기여한 망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빈소도 마련되지 않고 제대로 된 장례절차도 없다(강정원·이도정, 2017: 8). 다시 말해 한국 사회는 혈연의 연고자가 시신을 수습하지 않을 경우 사후(死後) 본인 장례 방식 등의 사후사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장 또는 이를 위한 충분한 사회보장이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본인 사후 장례 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혈연의 연고자가 아닌 친구나 지인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삶의 동반자에게 자신의 사후를 부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

1) 서울 무연고주검 100건 중 96건은 가족도 외면했다(송영규, 2019.3.10.검색)

2) [단독]가족해체 시대 민낯...무연고사망자 급증(이진경, 2019.3.22.검색)

지만 현행법과 제도는 이러한 삶의 동반자가 망자의 뜻에 따라 장례와 같은 사후사무를 진행하려고 해도 이를 쉽게 용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으로는 혈연관계의 연고자만이 장례와 사망신고 등의 사후사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고자가 아닌 경우 병원 또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통상 관례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사후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시신은 오직 위생적이고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처리’와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가. 신사회 위험으로서의 죽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화된 가족구조는 사회적 위험의 양상에 영향을 주었고, 기존에는 사회적 위험으로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죽음과 장례’에 있어서도 그 심각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위험은 ‘구사회 위험(old social risks)’과 ‘신사회 위험(new social risks)’으로 구분한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질병·실업·산업재해·노령화 등이 개인과 가정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을 ‘구사회 위험(old social risks)’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가족구조가 변화되면서 구사회적 위험과 구분되는 ‘신사회 위험(new social risks)’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신사회 위험이란, 탈산업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의 결과로 사람들이 생의 과정에서 새롭게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가족구조·성 역할 등의 변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하던 가족 내의 돌봄 기능이 약화하였다. 이에 따라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돌봄을 더는 가족이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나타난 사회적 위험이 신사회 위험이다. 이러한 신사회 위험은 점차 사회 보장의 형태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음마저도 개인과 가족 공동체가 대응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대표적 사례가 무연고사망자의 증가이다. 전통적으로 관혼상제는 개인과 가족 공동체에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장례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돌봄 서비스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오늘날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이 해체되면서 가족의 죽음과 그에 따른 장례의 문제를 가족 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하기에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외롭게 살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은 이후에도 연락할 가족이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오랜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한다.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서류상의 가족이 있다. 이 같은 경우, 아무리 서류상으로 연고자가 있는 사람도 무연고 사망자가 된다. 무연고사망자는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바로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무빈소 ‘직장(直葬)’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망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최소한의 빈소도 마련되지 않고 전통 장례절차도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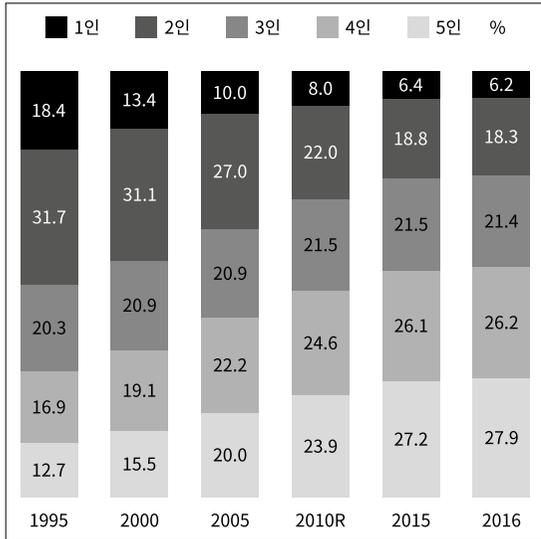
다. 시신만 수습되어 화장된다.

이렇게 죽음마저도 개인과 가족 공동체가 대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사회적 대안과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사회적 위험에 사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건강’은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문제였지만 ‘질병’으로 가족 공동체가 경제적 위험에 빠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 국가는 ‘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으로 이에 대응하였다. ‘실업’ 역시 어쩌면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업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족 공동체가 경제적 위험에 빠질 때 국가는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장으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개입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가족의 돌봄 문제, 예컨대 ‘치매 노인 돌봄’ 등의 ‘신사회 위험’ 역시 이제는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새롭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기존 사회적 위험에 국가는 사회보장의 형태로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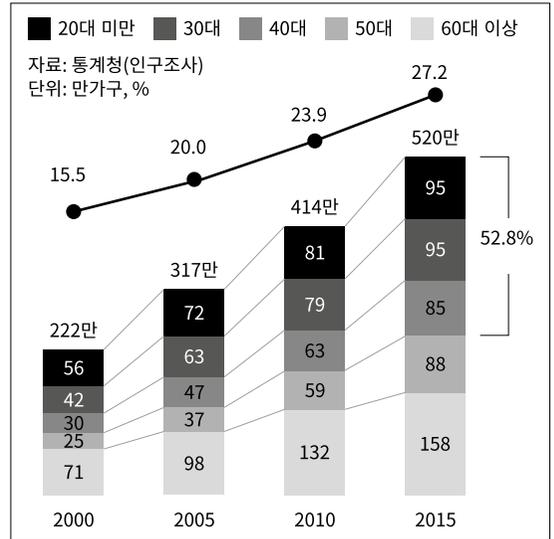
그렇다면 죽음과 이후의 장례 등의 사후사무의 현실이 어떠할까. 한국에는 국립의료원과 같이 공공(公共) 병원이 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도 일단 공공(公共)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즉, 최소한의 건강권은 보장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받다가 장례비용을 미리 마련하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 가족과 이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례절차는 공공(公共)이 보장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하는 장례지원비(장제비)만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공공(公共) 장례식장은 찾기가 어렵다. 죽음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가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 또한 앞에서 언급한 ‘신사회 위험’으로 인식하고 그 대응 방안을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모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망자의 사후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오늘날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가족 공동체가 가족 구성원의 죽음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가 점점 증가해서 무연고사망자가 사회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의 증가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된 가구 유형은 1인 가구였다. 1인 가구는 54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7.9%를 차지하였다. 또한 2035년에는 세 가구 중 한 가구(34.3%)가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계층별로 70세 이상 17.8%, 30대가 17.6%, 20대 17.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30대(22.7%), 여성은 70세 이상 연령대(27.7%)에서 비율이 높았다. 한국 사회에서 1990년 이후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는 4인 가구였지만, 2010년에는 2인 가구, 그리고 2015년 이후로는 1인 가구가 가장 주된 유형의 가구가 되었다(통계청,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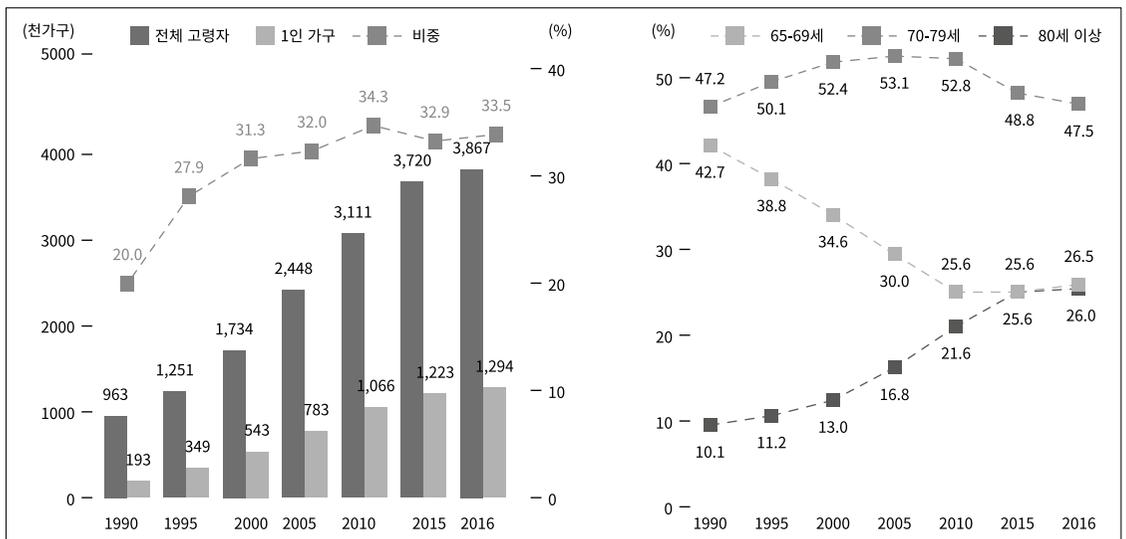


[그림 1] 연도 및 가구원수별 가구 규모(1995T~2016R)



[그림 2] 연도별 1인 가구 현황(2000~2015) | 서정주, 김예구(2017)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1인 가구는 129만4천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 386만7천 가구 중 33.5%를 차지하였다. 성별로 보면 1990년 고령자 여성 1인 가구는 남성보다 6배 정도 많았으나, 의기술 발달 및 기대수명 연장으로 남성 1인 가구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 2016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3.0배 정도 많았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16년 70대 1인 가구의 비중이 47.5%를 차지하고, 80세 이상의 비중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2017년 고령자 1인 가구는 지속해서 증가하여 2045년에는 371만9천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7).



[그림 3] 고령자 1인 가구 현황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이제 한국 사회는 핵가족사회를 넘어 초핵가족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다. 이렇게 초핵가족사회에서 고립된 1인 가구는 멀리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 1인 가구의 증가도 사회적 문제겠지만 40대와 50대 중장년의 1인 가구가 더 큰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 남성들이 이 시기에 실직, 부채 등으로 생애 위험을 겪으면 사회보장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이 1인 가구의 증가를 우려한다. 하지만 그 자체가 사회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은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더 큰 문제다. 사회적 고립이 문제인 이유는 단절과 고립이 질병, 음주 과다, 영양 결핍 등과 같은 ‘신체적 건강 문제’뿐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적 건강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객관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내에서 의미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경우, 그 고립의 결과로 인한 외로움과 사회적 지지 결여 등 ‘주관적 차원의 사회적 고립’은 낮은 수준의 삶의 질, 건강 악화, 더 나아가 사망률과 연결된다(이상철·조준영, 2017). 결국, 이러한 사회적 고립으로 사람들은 평균 수명보다 이른 나이에 고립사³⁾로 죽음을 맞이하는 되고, 죽은 이후에는 가족이 있지만,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하지 않아 무연고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이렇게 될 경우 망자의 장례 등의 사후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은 담보되지 못하게 된다.

2. 연구의 방법 및 목적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사망자의 죽음, 그 자체도 중요한 사회문제일 수 있지만, 죽음 이후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장례가 어떠한지 특히, 연고자가 시신을 포기할 경우 아무런 장례절차 없이 시신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 무연고사망자의 구체적인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들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회적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무연고사망자 등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망자의 죽음 이후 진행될 장례 등의 사후사무와 관련된 사후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무연고사망자를 주제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공동묘지와 무연고묘에 대한 민속학적 탐구로서 무연고 사망자의 죽음권에 대한 연구(강정원·이도정, 2017), 무연고 시신 처리 제도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김혜

3) 이 글에서는 ‘고독사’ 대신 ‘고립사(孤立死)’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고독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를 고려할 때 ‘혼자 생활하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개인적 측면이 아닌 ‘사회적인 단절과 고립된 상태’에서 고립생을 살다가 죽었다는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일본 정부 문서에서는 주로 ‘고립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화, 2015; 황보상민, 2008) 그리고 서울시에서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NPO단체의 실천사례를 통해 무연고사망자 장례식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김진선, 2019) 정도다. 이렇게 무연고사망자 관련 연구 자체는 아직 활발하지 않으며, 또한 이번 연구가 주목하는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 자료와 문헌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무연고사망자 통계 및 장례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언론 보도 자료, 서울시에서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 장례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나눔과나눔」의 장례지원 사례와 무연고사망자의 행정처리 요청문서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 현지를 방문하여 일본 정부의 무연고사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 실태와 민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활동과 움직임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무연고사망자 등의 문제를 ‘죽음’이라는 극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가족공동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장사문화 특징과 무연고사망자의 장사 행정을 비교하였으며, 둘째, 한국 무연고사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의 무연고사망자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실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관련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일본 정부와 민간 NPO 법인의 사후자기결정권 관련 사례를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넷째, 현재 한국의 법제 검토를 통해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관련 법·제도의 현실과 입법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죽음 이후의 사후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해 고찰한 본 연구의 목적은 혈연의 가족과 단절된 상황, 혹은 혈연의 연고자가 부재한 상황 등으로 인한 무연고사망자, 그리고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본인의 죽음과 이후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내 뜻대로 장례’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친밀한 관계의 삶의 동반자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동반자가 혈연의 연고자가 아니라고 해도 ‘가족 대신 장례’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그리고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한국과 일본의 무연고사망자 장사(葬事) 행정 비교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의 증가로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자’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사후에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한 ‘종활(終活·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활동)’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유품 정리와 디지털 유산 상속, 사후 정리를 위한 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종활 상품도 대거 출시되고 있다. 일본뿐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도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⁴⁾ 2004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장례⁵⁾문화 인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례비용은 평균 938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장묘 관련 비용으로 매장 시 평균 714만 원, 화장 시(납골당 안치) 평균 260만 원이 소요되어 총 장례비가 매장 시 평균 1,652만 원, 화장 시(납골당안치) 평균 1,198만 원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장례비용에 관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65.9%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장례비용이 들더라도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줄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이나 친지·동료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낮아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거나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는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장례식도 없이 화장하는 것이 보통이다(김재호, 2015: 554). 그리고 2017년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단칸방 쓰레기 더미 사이에 홀로 생활하던 고령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조모 씨(68)가 누운 상태로 숨져있는 것을 주민센터 자원봉사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였다.⁶⁾ 이러한 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최근 들어 자주 접하게 되는 기사이며 그 대상은 빈곤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빈곤층을 위한 사회보장 내용이 한국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제·자활 등에 드는 기본적인 경비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보장 중 특히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는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한편 장사 행정 전반과 관련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의 장사 관련 행정체계, 법령체계는 전통적으로 그 국가나 사회의 오랜 역사 및 문화와 밀접한 관

4) 해마다 드는 고독사"...웰빙에 이은 웰다잉(김선국, 2018.10.20.검색)

5) 본래 장례(葬禮)란 장송의례(葬送儀禮)의 약칭으로 망자를 장사지내고 애도하기 위한 일련의 의례이다. 이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안으로의 슬픔을 겉으로 표현하여 의례로 만들어진 것이다. 장례는 최근 만들어진 용어이고 원래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상례(喪禮)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표준교육교재』).

6) 기초생활수급자 숨진 지 4개월 만에...부산서 또 고독사(차근호, 2019. 3.21.검색)

계를 맺어 변화하였다. 각각의 국가의 역사와 문화는 고유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특징을 지을 수 없으며, 이러한 역사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 온 장사제도 및 행정절차 역시 국가마다 차이가 존재한다(이삼식 외, 2003: 3). 이에 한국과 일본의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을 비교하기 위해 우선 한국과 일본의 장사문화를 간단히 살펴보고, 사회보장 중 장제급여와 무연고사망자의 장사행정에 대해 비교하여 살펴본다.

1. 한국과 일본의 장사문화 비교

가. 한국의 장사문화

한국의 장사 관행은 전통적인 유교주의 사상과 풍수지리 사상의 영향을 받아 형성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유교주의 사상이 장법(葬法)과 결합하여 매장문화를 주도하게 된 것이다(이삼식 외, 2003: 9). 전통사회에서 상주의 장법 선택은 종교적인 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불교는 화장을, 유교는 매장을 선호하였다. 불교 이전 고대사회는 주로 매장으로 시신을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교를 수용한 이래 일부 왕실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하더라도 매장은 시신을 처리하는 여러 방식 중에 전통적인 장법으로 자리를 잡았다. 고려 시대는 장례로 화장과 매장을 병행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는 불교를 정신적 이념으로, 유교를 사회통치 이념으로 구성된 사회였기 때문이다. 화장은 불교를, 매장은 국장을 통해서 고려 시대 장례 모습을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릴 수 있다. 조선 시대에 접어들어서 왕실용과 대부사서인(大夫士庶人)용으로 상여를 분리하여서 시신을 운구하였다. 왕실은 임금의 옥체 운구용으로 유거와 대여, 견여, 외재궁여로 구체적으로 분리하여서 기능적으로 활용하였다. 사가는 주자『가례(家禮)』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주자는 『가례(家禮)』에서 시신을 모시는 방식으로 매장을 제시하여서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다. 매장은 민간에서 시신을 모시는 하나의 보편적인 방식으로 최근까지 주류였다(장철수, 1995).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장법은 자연적·제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묘지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와 후손들의 산소 관리 어려움 등과 같은 개별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후손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도시 등 객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묘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완만하게 화장이 증가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은 20% 이상의 가파른 화장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다시 2005년을 기점으로 사망자의 50% 이상이 화장하였고, 2009년도에 2/3정도가 화장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이와 반대로 매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장철수, 1995).

나. 일본의 장사문화

고대 일본 사회에서는 보건 위생적인 관점에서 산자와 사자 간 공간의 분리가 있었으며, 이는 근세 이후 양묘제(兩墓制)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불교의 정토사상이 전개되면서 묘지에 사원을 건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불교와 장의가 결합하였다. 이때부터 죽음은 불결함의 대상에서 벗어나 참배 대상이 되었다. 12세기 중엽부터 유골을 도시나 주거 공간 안으로 편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납골 신앙과 분골관습이 발생하였다. 납골 형태는 정토사상 영향으로 사원묘지에 석탑을 건립하고, 여기에 유골을 보관하는 납골묘지가 나타났다(이삼식 외, 2003: 3-4).

일본에서의 불교는 사자구제 역할에 철저하지 않았다. 묘지 대부분은 가문 관념의 영향으로 사원보다 마을공동 토지나 사유지에 조성되었다. 불교는 가문의 장식물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는 근대 묘지에도 나타났다. 가족적인 연결 속에서 매장되는 가묘는 에도시대(17세기)에 발생한 이래 명치시대(1868~1912)에는 화장보급과 묘지 제한으로 인해 확대되었다. 가묘는 근대적인 묘지에서도 재생산되고 있는데, 공원화된 묘지구획의 면적 제한이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가묘형태의 납골시설이 건립되기에 이르렀다. 근대적 도시의 등장에 따라 발생한 인구증가, 위생관념 확대, 묘지부족 등은 장사 관행을 화장으로 전환하는 조건이 되었다. 명치시대에 도시에 화장장이 공급되었으며, 그 후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묘지 부족 문제를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1923년에는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일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식 공영묘지가 설치되었다. 현대에 인구밀도 상승, 토지부족, 위생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 및 정비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불교문화 및 납골 신앙과 결합하여, 현재 대부분의 일본인이 화장하는 이른바 화장 납골 문화가 형성되었다(이삼식 외, 2003: 4).

최근의 현상으로 일본에서는 생전에 자신이 묻힐 묘(생전묘 또는 수능)를 마련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조상과 함께 영면하거나 조상제사의 대상으로의 분묘라는 의식이 약해져 가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납골묘지의 사용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핵가족화, 단신 가구의 증가, 자식이 없는 세대의 증가 등으로 인해 묘소의 계승이 어려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이삼식 외, 2003: 5).

2. 한국과 일본의 장제급여 비교

한국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종류는 ①생계급여 ②주거급여 ③의료급여 ④교육급여 ⑤해산급여 ⑥장제급여 ⑦자활급여가 있다. 한편 일본의「생활보호법」⁷⁾ 급여종류는 ①생활부조 ②교육부조 ③주택부조 ④의료부조 ⑤개호부조 ⑥출산부조 ⑦생업부조 ⑧상제부조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생활보호법」의 급여종류와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①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① 생활부조 : 식비, 피복비, 광열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식비 등의 개인 비용(연령별 산정)과 광열수도비 등의 세대 공통비용(가구규모별 산정)의 합산으로 산출
② 주거급여 :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	② 교육부조 :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교재비 및 학용품비 등
③ 의료급여 :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	③ 주택부조 : 아파트 등의 집세, 보수 및 유지비용
④ 교육급여 :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④ 의료부조 : 의료서비스 이용 비용. 본인 부담 없이, 비용을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
⑤ 해산급여 :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⑤ 개호(介護)부조 : 개호서비스 이용 비용. 본인 부담 없이, 비용을 직접 개호기관에게 지불
⑥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⑥ 출산부조 : 출산 비용.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⑦ 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등	⑦ 생업부조 : 생업 자금, 취업에 필요한 기능습득 비, 취직지도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⑧ 상제부조(葬祭扶助) : 상제 비용이며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

가. 한국의 장제급여

한국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근거해 ‘장제급여’가 지급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급여 대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와 생계·의료·주거급여

7)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을 인수하여 관할하게 된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는 일본에서 비군사화와 민주화 정책을 실행했다. 민주화의 일환으로, GHQ의 복지정책은 전쟁 전의 사회사업(당시에는 아직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의 시혜적이고 자선적인 성격을 떨쳐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GHQ는 1946년 2월 일본정부에 대해 발표한 「사회구제(공적부조)」 비망록에서 공적부조의 세 가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①무차별평등의 원칙 ②공적(국가)책임의 원칙 ③최저보장의 원칙(보조금총액은 한정하지 않는다). 같은 해 9월, 이 원칙에 따라 구(舊)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다(伊藤周平, 2017).

수급자가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다. 급여액은 1구당 75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도 가능하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타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지급받은 수급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독가구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사망자가 단독가구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남겨 놓은 확인 가능한 금전(경찰관 입회로 확인)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9).

보건복지부의 각 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상에서 지급되는 장제급여의 지원 대상자는 2011년 35,050명에서 2012년 34,239명, 2013년 34,239명, 2014년에는 34,399, 그리고 2015년 34,399명으로 계획했다. 지원액은 2011년 15,350백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으나 해산으로 1,444백만 원(9.4%), 장제급여비로 13,906백만 원(90.6%)을 합해 18,267백만 원이 지출되었다(김재호, 2015: 568). 연고가 없거나 가족의 시신인도 거부 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장례식장과 장의업체에서 장례를 진행한다.

나. 일본의 장제급여

일본의 경우 상제부조는 「생활보호법」에 정해진 8개의 부조 중 하나로 생활에 곤궁한 자가 행해야 할 장제에 대한 부조제도이다. 또한 장제를 치러야 할 친족 등이 없어 자신의 장제를 지낼 만한 재물도 없이 사망한 자의 장제를 담당하는 제삼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가지고 실질적인 비용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생활보호법」은 후생 노동성의 소관이지만, 보호의 실시는 지방 자방자치단체이다. 그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나 정도에 관해서도 대부분의 지침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실시기관에 개별적인 결정이 위임되고 있다(高見晴彦, 2011). 2008년도에 상제부조의 적용건수는 전국에서 월평균 2,551건, 연간 총 보호비는 6,338,825천 엔이다. 이것은 동년도의 생활보호비 총액 약 2조 7,000억 엔 가운데, 약 0.235%에 해당한다(生活保護手帳, 2010).

「생활보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상제부조'는 빈곤으로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검안, 사체운반, 화장 또는 매장, 납골, 기타 장제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우선 피보호자가 사망하였으나 그자의 장제를 치를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사망한 자에 대해 상제를 행하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사망한 자의 유품으로 장제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다(노대명, 2014: 177).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무의탁노인 등이 사망했을 때 노인복지법

등에 의해 도도부현(都道府県) 지사, 시장 또는 복지사무소를 관리하는 시정촌장이 장제를 치르거나 양로원 등에 위탁하도록 한다. 친척이 없는 사망자의 매·화장을 이웃이 행하였을 경우로서 생활보호법에 해당할 경우 상제부조의 조처한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영장사 시설에서 할인금액으로 매·화장서비스를 제공한다(이삼식 외, 2003: 35).

상제부조의 기준액은 2010년도 기준으로 160,800엔부터 201,000엔(어른, 1~2급지) 정도이다. 상제부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낮아 도쿄의 경우 상제부조의 금액으로 장례를 해 주는 장의업자가 거의 없다. 도쿄는 거의 ‘도쿄복지회’라는 업자가 전담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시신을 관에 넣어 화장하는 직장의 방식일 뿐 추도식을 하거나, 스님을 부르고, 꽃을 올리는 것을 할 수 없다(高見晴彦, 2011).

3. 한국과 일본의 무연고사망자 장사행정 비교

가. 한국의 장사행정체계 및 무연고사망자 장사 행정

1) 무연고사망자의 정의

무연고사망자의 개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안내에서 무연고사망자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사망자이다(보건복지부, 2018). 여기서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라 다음과 같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 아.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그리고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며,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체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한편, 무연고사망자와 함께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고독사(孤獨死)’의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학술적 정의가 합의된 바는 없다. 일반적으로 ‘고독사’란, 자택에서 혼자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사망하고, 아무에게

도 알려지지 않고 수일이 지난 후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보다 앞서 고립사 문제가 사회문제화된 일본에서도 ‘고독사’와 ‘고립사’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 등의 정부 문서에서는 주로 ‘고립사’를 사용하고 있다. 나무위키에서 ‘고독사’를 정의한 내용을 보면 ‘임종을 지켜주는 사람 없이 혼자 사망하는 경우. 자살, 타살은 보통 제외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고립사를 정의한 용어들은 홀로 또는 외로이 살다가 혼자 사망하는 경우를 일컫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고립사에 자살을 포함하는지와 어느 정도의 기간 후 발견되는지가 여전히 명료하지 않다. 고립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이유는 홀로 사는 사람이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 속에서 살아가다가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송인주, 2016)’에서는 고립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구 간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살던 사람(독거인, 1인 가구)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된 죽음(통상 3일 이후)이다.” 이처럼 어느 용어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고독사와 고립사, 그리고 무연사 모두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발견된다는 점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무연고사망자의 정의는 고립사와 차이가 있다. 연고자의 유무 즉,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의 유무가 무연고사망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반면, 고립사는 연고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느냐 즉, ‘혼자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사회적 고립과 임종의 과정이 고립사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며칠 후에 발견되신 분의 경우 무연고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그렇다고 고립사 한 분이 모두 무연고사망자는 아니다. 반대로 무연고사망자의 상당수는 병원에서 삶을 마감한다. 따라서 무연고사망자가 모두 고립사한 것 또한 아니다.

2) 장사행정체계 및 무연고사망자 행정절차

한국의 장사제도는 해방 이후에도 일제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왔으나 1961년에 공설묘지 및 공설 화장장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매장등묘지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같은 법은 1968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로 개칭한 후 1997년까지 4차례 개정되었다. 이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0년 1월 12일 개칭과 함께 전면 개정된 후 3번의 개정을 거쳐 2007년 5월 25일 전부 개정되어 현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이르렀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연고사망자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개념인 ‘연고자’에 대한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도 무연고사망자의 처리에 관련된 조항들이 제정되었다. 연고가 없거나 가족의 시신 인도 거부 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장례비를 지원하고 장례식

장 및 장의업체에서 장례를 진행한다.

무연고사망자 발생 시 행정 처리 절차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이 그 시신을 운구해 화장하고 봉안까지 해야 한다. 즉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업무 책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업무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 장소에 따라 최초 업무에 차이가 발생한다. 무연고사망자의 사망 장소는 첫째 병원, 둘째 주거지·거리 등 두 곳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고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안치한 이후 가족 등 연고자를 찾는다. 둘째, 주거지·거리 등에서 사망한 경우는 경찰이 출동하여 범죄 여부를 파악하고 검안의사로부터 부검 결과인 ‘시체 검안서’⁸⁾를 발급받고 장례식장에 시신을 안치한다.

이후 행정처리 절차는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장사업무안내서(보건복지부, 2018)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장 등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경찰서장 등에게 인수한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사망자 신원 확인 및 연고자 탐문·조사로 사망자의 연고자 여부를 재확인한다. 둘째, 시장 등은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결과, 연고자가 확인되면 그 연고자에게 지체 없이 시신을 인도한다. 셋째, 시장 등은 사망자의 연고자 확인 결과,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시신처리 위임서’⁹⁾를 받아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넷째, 시장 등은 사망자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시신 인수를 통보하였으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면서 시신처리 위임도 하지 않아 시신의 손상, 부패 등 보건위생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고, 연고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신인수 또는 시신처리 위임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시신처리 의무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시신을 매장 또는 화장하여 봉안하고 연고자에게 매장·봉안장소 등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⁹⁾ 다섯째, 시장 등은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10년 동안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¹⁰⁾ 이때 시장 등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고자가 있으나 시장 등에게 시신 처리를 위임한 경우 또는 연고자에게 처리 의무를 통보하였음에도 처리하지 않아 시장 등이 처리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연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 ‘시신처리 위임서’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이 인정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시신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한 서류를 말한다. 흔히 이를 ‘시체 포기각서’ 등의 이름으로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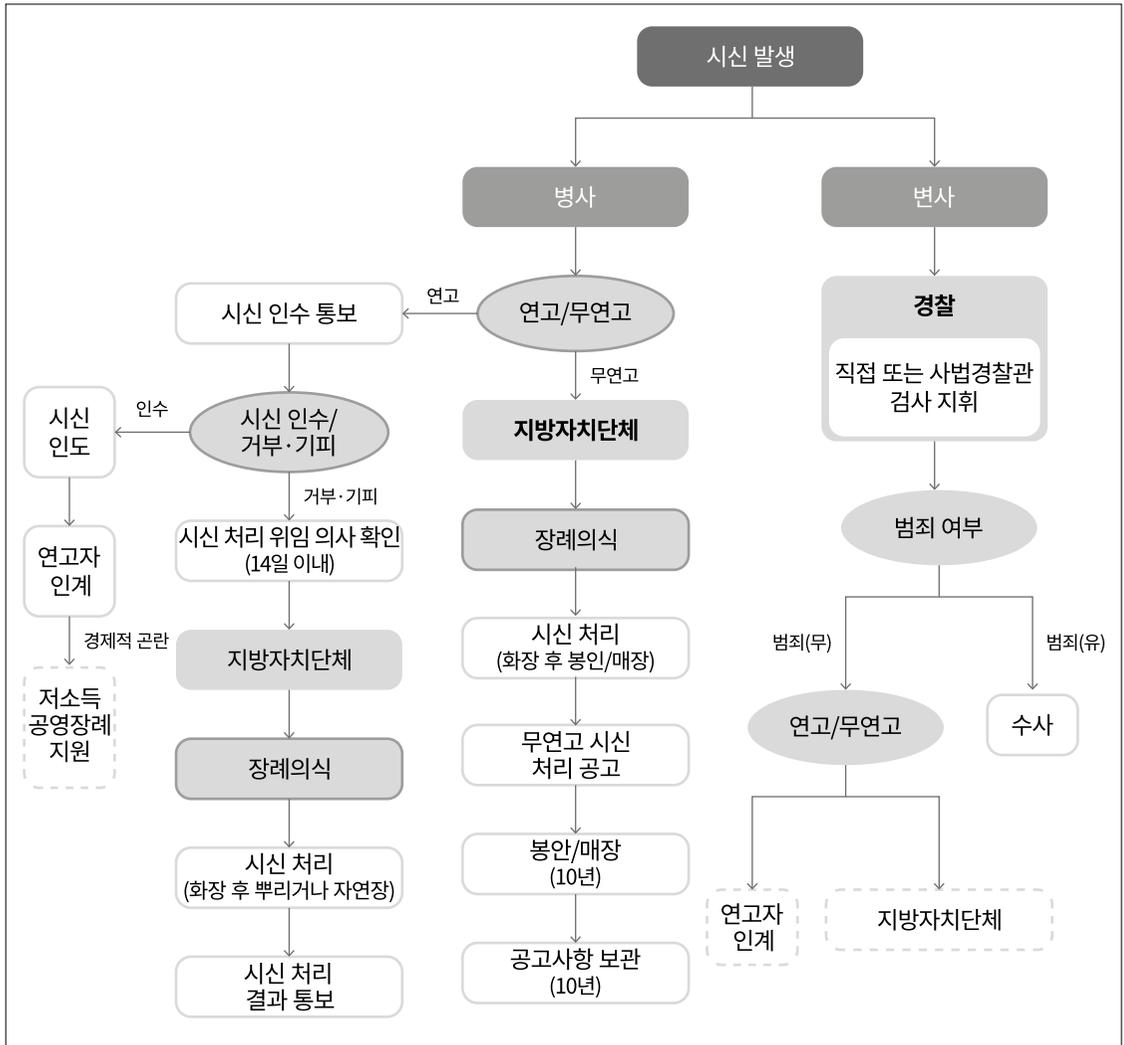
9) 외국인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적 영사에게 자국민 여부, 자국 내 연고자 파악 및 시신 인수를 요청한 후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 봉안 기간이 끝났을 때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하여야 한다.

이러한 행정처리 절차의 목적은 무연고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후자기결정권의 보장에 있다기 보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과 같이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보니 행정절차는 시신을 운구해서 화장하고 봉안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 즉, 시신을 인수할 가족을 찾고, 인수할 가족이 없거나 위임하면 국가가 화장해서 봉안하는 내용뿐이다. 말 그대로 무연고 시신은 ‘처리’될 뿐이다. 고인을 위한 최소한의 장례절차조차 없으며,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이동하는 이른바 무빈소 ‘직장(直葬)’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인들마저도 고인을 애도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무연고사망자 공고 시점이 화장 및 봉안이 완료된 “무연고 시신을 처리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고인의 지인들은 부고조차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2018년 10월 1일부터는 가족이 시신을 위임한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10년 동안 봉안하던 방식을 산골(散骨)¹¹⁾로 변경하였다. 결국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관 장소가 부족해지는 현실에서 무연고사망자의 유골을 산골 해서 공간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무연고사망자를 오직 효율성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무연고사망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연고자에게 75만 원의 장제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한국의 평균 장례비가 1,300만 원이 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수급자에게 제대로 된 장례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장제급여의 성격을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규정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빈소 마련과 같은 장례절차, 더 나아가 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11) 산골이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가루로 만들고 일정한 장소에 뿌리는 방식이다. 서울시립승화원의 경우 화장장에 산골을 위한 ‘유택동산’을 마련하여 무료로 산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연고사망자의 경우에도 같은 장소에 산골 한다.

[그림 4] 한국의 무연고사망자 업무흐름도



나. 일본의 장사행정체계 및 무연고사망자 장사 행정

일본의 경우 장사제도는 환경 위생적 관점의「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법률(墓地、埋葬等に関する法律)」과 묘지개발·운영에 관한「도시계획법」에 근거한다. 중앙정부법령은 장사행정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풍속이나 관습 기타 지역 상황에 적합하게 장사행정을 구현하도록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장사행정체계는 후생노동성(건강국 생활위생과)을 주축으로 횡적으로는 중앙의 건설성, 환경성과 종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사행정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은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이고 실질적인 장사업무는(시·정·촌)에서 수행한다. 일본에서 모든 사망은 시·정·촌에 신고하여야 하나 매장·화장 허가증은 별도절차로 진행되고 유골매장을 위해서는 묘소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장사시설 설치와 관련

한 제도는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 묘지만을 허가하고 사설묘지인 사원묘지는 묘지가 부족한 경우만 허가하고, 영리법인에 대해 묘지사업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공영묘지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을 포함한 지방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묘지이다(이삼식 외, 2003: 10-24).

일본의 무연고사망자 장사행정은 앞에서 언급한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과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行旅病人及行旅死亡人取扱法)」 그리고 「생활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東京都保健福祉局, 2017: 202).

첫째,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제9조¹²⁾를 적용하는 경우는 자살자 등의 신원 확인에 있어서 사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드러나지 않을 때이다. 이때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곳의 시·정·촌장이 이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의 비용에 대해서는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둘째,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제7조¹³⁾를 적용하는 경우는 행려(行旅) 중 또는 주소 불명으로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없을 때이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사람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행려병인이란, 여행 중에 질병 등으로 보행이 곤란해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빠진 경우를 말한다. 행려 중 또는 주소 불명으로 사망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 없을 때는, 이 법에 따라 사망자 소재지의 시·정·촌장이 장례를 하게 된다.

이 두 가지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과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의 적용의 공통점은 장례집행자가 없는 경우이며, 세부적인 적용의 경우는 아래 [그림 5]와 같다.

12)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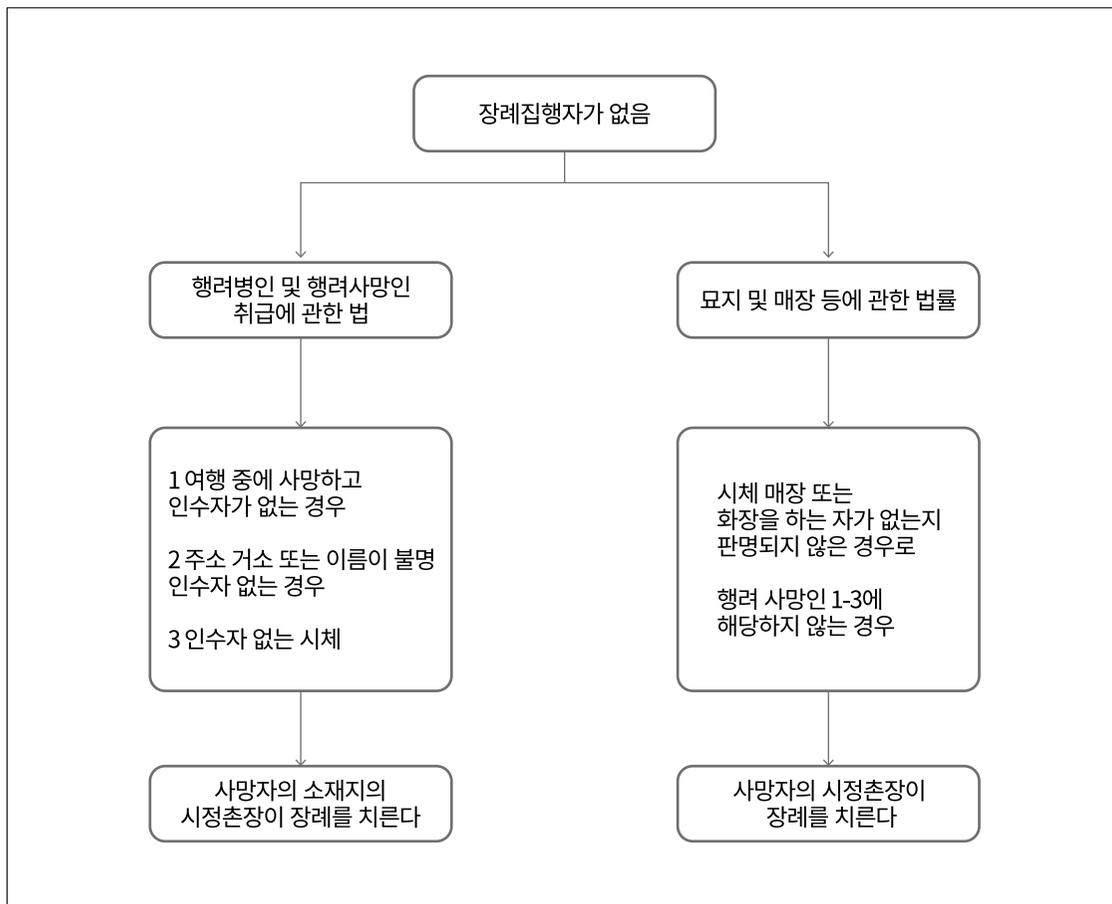
제9조 사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또는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지의 시정촌장이 이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매장 또는 화장을 하는 경우, 그 비용에 관해서는,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명치32년법률제93호)의 규정에 준용한다.

13)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

제7조 행려사망인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의 시정촌장은 그 상황, 양상, 유류물건, 그 외 본인의 인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후, 그 사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행하여야 한다. 묘지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는 본조의 매장 또는 화장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림 5]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과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東京都保健福祉局, 2017: 207)



셋째, 「생활보호법」제18조 상제부조¹⁴⁾를 적용하는 경우는 신원 불명과 상관없이 장례를 치르는 부양 의무자 없는 사망자가 그 장례를 행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상제부조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사망자가 생전에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장례에 대해서도 장제 집행을 민생 위원에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상제부조를 적용한다.

14) 「생활보호법」

제18조 1 상제부조(葬祭扶助)는 곤궁에 의해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좌측에 제시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행한다.

— 검안 二 사체의 운반 三 화장 또는 매장(埋葬) 四 납골, 그 외의 상제를 위해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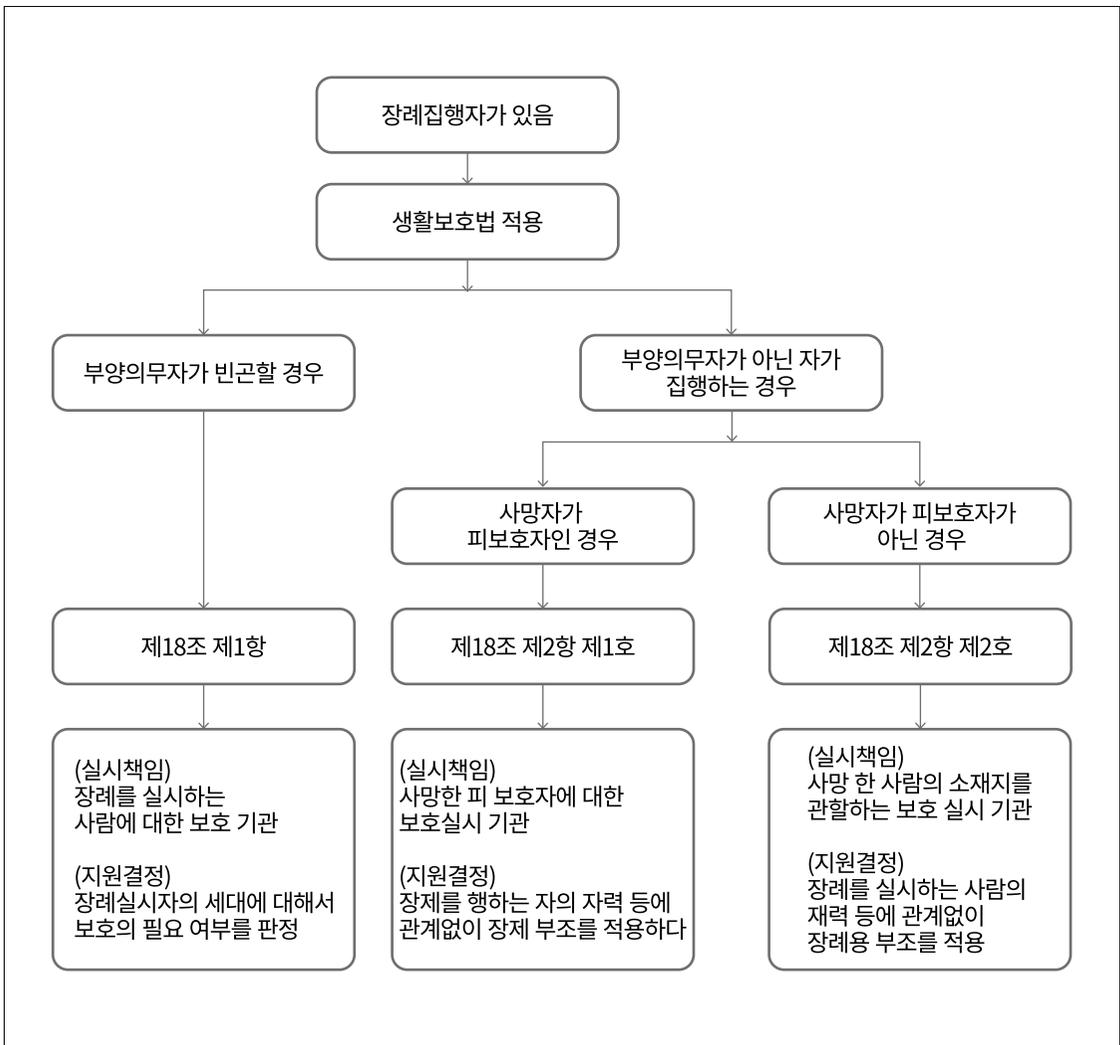
2 좌측에 제시한 경우에 있어, 그 상제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전항각호의 상제부조를 행할 수 있다.

— 피보호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 사람의 상제를 행하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二 사망자에 대해 그 상제를 행하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 유류된 금품으로 상제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보호법」의 적용은「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과「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의 적용과 달리 장례집행자가 있는 경우이며, [그림 6]과 같이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생활보호법」의 피보호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죽은 자의 장제를 실시해야 하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만, 그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제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조사를 거쳐 제18조제1항을 적용한다. 둘째, 「생활보호법」의 피보호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죽은 자의 장제를 실시해야 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그 장제를 제삼자가 행하는 경우 제18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며 셋째, 피보호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 죽은 사람의 장제를 지내야 할 부양의무자가 없고, 동시에 그 사망자가 남긴 금품에 의해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채우지 못하며, 그 장제를 제삼자가 행하는 경우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한다.

[그림 6] 「생활보호법」적용(東京都保健福祉局, 2017: 206)



지금까지 살펴본 「생활보호법」제18조제2항,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의 적용 관계를 유골과 사체로 구분하고 발견 시의 상황과 장례집행자를 기준으로 적용의 경우를 나눠서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2] 「생활보호법」제18조제2항과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 및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관계 (東京都保健福祉局, 2017: 203)

구분	발견시의 상황 등		비용 변상 항목	관계법
유골	신원을 특정할 수 없음. · 사후 수십 년 경과 · 뼈가 부분적으로 발견됨.		상제(葬祭)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
			공고(고시)	
	신원을 식별 할 수 있음. · 사후 몇 년 전후 · 옷 등 흔적이 남아있는 것		상제(葬祭)· 공고(고시)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
사체	행려(行旅) (주소·성명 불상)	장례집행자 有	상제(葬祭)	생활보호법
			공고(고시)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
		장례집행자 無	상제(葬祭)· 공고(고시)	
	기타 (주소·성명 등 명백)	장례집행자 有	상제(葬祭)	생활보호법
장례집행자 無		상제(葬祭)	묘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	

Ⅲ. 한국의 무연고사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 실태

1. 무연고사망자 현황 및 특징

무연고사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1,280명에서 2017년 2,010명으로 지난 4년간 57%가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전국 무연고사망자 2,010명 중 서울이 5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399명), 인천(180명), 부산(137명), 대구(116명) 등의 순이다. 이러한 무연고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크게 연령과 성별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표 3] 연도별 무연고사망자 현황(시도별)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280	1,389	1,679	1,832	2,010
서울	462	477	536	567	516
부산	60	86	113	135	137
대구	47	32	90	78	116
인천	97	94	137	160	180
광주	12	14	18	21	27
대전	39	40	51	61	38
울산	21	18	28	26	39
세종	2	2	2	3	0
경기	222	276	297	325	399
강원	41	38	54	67	73
충북	24	27	34	52	61
충남	52	41	47	60	78
전북	33	24	30	40	40
전남	25	56	30	41	52
경북	45	52	69	61	90
경남	52	65	87	109	103
제주	46	47	56	26	61

가. 무연고사망자의 연령별 특징

무연고사망자 중 64세 이하의 비율은 52.6%다. 즉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층에서 무연고사망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64세 이하의 중장년 무연고사망자 비율이 약 10% 이상 높다. 이처럼 무연고사망자 중에서 중장년층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적으로 연구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 분석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는 그 배경을 20년 전 발생한 1998년 외환위기, 산업구조조정, 금융위기, 대량 해고 등이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상황을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나눔과나눔의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적인 사례를 유형화시켜보면,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 외환위기 때 실직하게 되면서 가정 경제가 파탄 나고 이로 인해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다. 그 후 혼자 생활하면서 노숙자가 되었고 장기경제 침체 가운데 재기에 실패하면서 홀로 버거운 삶을 살다 고시원에서 혹은 길거리 등에서 죽은 채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는 각자도생의 삶 가운데 버겁게 살아왔던 아내와 또 다른 가족은 죽은 가족의 시신을 인수할 형편이 되지 않아 죽은 가족을 무연고사망자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다. 이는 한 국가의 경제 위기가 망가뜨린 수많은 가정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무연고사망자인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의 무연고사망자들은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다. 즉 외환위기 때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중장년층이 되어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 평균수명이 80세 정도이니 한국 사회에서 약 2,000명이나 되는 특정한 사람들이 평균수명보다 20년이나 일찍 이른 나이에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연령별 특징 중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13년 464명에서 2017년 835명으로 지난 4년간 80%나 급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노인 무연고사망자 역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방증이다. 즉, 무연고사망자의 문제는 중장년뿐만 아니라 노년층에게도 그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무연고사망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아기부터 20대, 40대에서도 나타난다. 아기들의 대부분은 베이비 박스에 놓였다가 어린이병원에서 치료받고 몇 개월이 지내지 않아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이며, 어떤 경우는 이름조차 없이 무연고사망자가 되기도 한다. 통계에는 나오지 않지만,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의 사례를 보면, 무연고사망자의 학력과 직업도 다양하다. 무연고사망자 중에는 서울대 출신도 있고,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던 분도 있으니 무연고사망자 문제를 특정 연령대와 홈리스와 같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의 사회현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표 4] 성별, 연령별 무연고사망자 현황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40세 미만			40세-49세			50세-59세			60세-64세			노인									미상 및 기타	총계				
													65세-69세			70세이상			합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2013	26	16	42	121	27	148	298	40	338	138	24	162	72	26	98	194	172	366	266	198	464	126	849	305	126	1,280	
2014	36	20	56	134	21	155	312	32	344	162	35	197	112	30	142	221	175	396	333	205	538	99	977	313	99	1,389	
2015	30	25	55	168	20	188	393	39	432	198	41	239	147	28	175	254	232	486	401	260	661	104	1,190	385	104	1,679	
2016	53	28	81	157	30	187	373	48	421	230	42	272	140	28	168	326	252	578	466	280	746	125	1,279	428	125	1,832	
2017	45	18	63	156	33	189	460	49	509	264	32	296	183	41	224	372	239	611	555	280	835	118	1,480	412	118	2,010	

*미상 및 기타: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별 파악이 불가능한 신원불상자 (둘 중 하나만 불분명해도 '미상'으로 취급)

나. 무연고사망자의 성별 특징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다. 이러한 현상 역시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되거나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문화를 통해 유추해볼 수밖에 없다. ‘남자, 혼자 죽다(성유진 외, 2017)’ 책에서 저자는 “무연고로 사망한 남성에게도 ‘관계’는 분명 존재했을 테지만 ‘남자는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관계를 끊어버리게 했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는 불안정 고용과 저소득층 증가,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다는 인식, 각자도생의 풍조,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 중장년층의 복지시스템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무연고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속에 자라온 남성들에게 더 치명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문화가 남성 무연고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다. 무연고사망자와 고립사 통계의 혼용

한편, 무연고사망자 통계와 함께 고립사 통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언론 보도에서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고립사를 보도하면서 무연고사망자 통계를 사용하거나 반대로 무연고사망자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고립사를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2월 18일 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명절에 더 외롭다... 노인 고독사 ‘최근 4년간 80%’ 급증”이라는 제목의 기사¹⁵⁾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기사는 제목과 달리 고립사가 아닌 무연고사망자 통계와 관련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렇게 언론에서 무연고사망과 고립

15) <https://news.joins.com/article/22376001> 2018.12.8.검색

사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두 개의 개념이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두 개의 용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 사회에서 고립사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게 된 것은 2017년 부산에서 단기간에 고립사가 연속해서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립사의 범위와 기간에 대한 정확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통계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통계가 없으니 당연히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또한 구체적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 고립사의 현실이다. 현재 공식적인 고립사에 대한 국가 통계는 없다. 그나마도 한국의 고립사 실태를 파악한 것은 2013년 KBS 파노라마, ‘한국인의 고독사’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2013년 연간 경찰의 변사자에 대한 현장 방문일지 전체 31,891건과 전국 지자체의 무연고사망자 처리보고서 966건 총 32,857건을 분석하여 고립사에 해당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정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신이 부패할 정도로 방치된 사례를 고립사로 정리하여 총 1,717건이 분류되었다. 이 결과는 하루에 4.7명, 5시간마다 1명씩 고립사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KBS 파노라마 분석 결과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전체 고립사의 25.45%, 경기 20.26%로 분석하고 있으며 40대~60대의 고립사 비율 73%, 남성 72%로 보고하고 있다(송인주, 2016).

[표 5] 2013년 고립사(孤獨死) 실태

연령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고립사 발생비율(%)	6.2	17.0	29.0	17.7	9.1

* 2013년도 고립사 1,717건

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고립사 통계를 만들고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가 유일하다. 부산광역시는 ‘친척·친지 간 6개월 이상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숨진 지 3일 이후 발견될 경우’를 고립사로 분류한다. 이는 고립사 상황을 파악할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부산광역시가 고립사 분류를 별도로 시작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고립사는 45건에 달한다.¹⁶⁾

16) 연간 2000명 ‘나홀로 죽음’... 고독사 해법은 공동체 회복뿐(안지나·공희정, 2018.11.13.검색)

2. 무연고사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 관련 문제점 및 사례

지금까지 무연고사망자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봤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사망자의 죽음의 문제가 ‘죽음’이라는 극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가족 중심의 혈연공동체의 그 기능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97년 한국경제위기 이후 가족해체와 실업과 빈곤이 증가하면서 1인 가구의 역기능과 함께 사회적 고립의 증가가 2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현상화된 사회이슈가 바로 무연고사망자의 죽음의 문제이다.

이러한 무연고사망자의 문제점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죽음 이후 발생하는 장례 등 사후사무다. 여기서는 사후사무와 관련해서 사망 후 시신 위임과정, 연고자의 범위와 그 순위의 적용 그리고 사후자기결정 관련 문제와 그 사례까지 살펴봤다.

가. 시신 위임과정의 문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연고사망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족 즉,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규정된 연고자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무연고사망자는 연고자를 찾을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을 위임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7년 9월 13일 자 서울경제신문에는 가족이 확인된 무연고사망자 비율이 전국평균 89.7%, 서울시는 96.3%였다고 보도했다.¹⁷⁾ 다시 말해 무연고사망자는 연고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 또는 오랜 단절 등의 이유로 가족의 시신을 국가에 위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의미다. 시신위임서에는 위임사유를 작성하게 되어 있다. 간단하게 작성된 위임 사유 대부분은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수십 년간 서로 관계가 단절되었고 현재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는 내용이다. 또한 고인의 시신을 인수하려고 해도 그동안 치료받으며 발생한 병원비 및 가족을 찾기까지 발생한 안치료 그리고 장례에 드는 비용까지 몇 백만 원에서 때로는 천만 원 이상의 상당한 비용이 한꺼번에 연고자에게 요구된다. 결국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시신인수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인간적 도리를 다하려고 해도 경제적 이유가 시신인수를 거부하게 한다.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나눔과나눔에 따르면 2018년 11월 말 현재 350여 건의 무연고사망자 중 가족 또는 지인이 참여한 장례가 약 60여 건이라고 한다. 장례에 참여했던 가족 또는 지인들은 최소한의 여건만 되었다면 고인을 무연고사망자로 보내고 싶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장례에 참여한 몇몇

17) 서울 무연고주검 100건 중 96건은 가족도 위임했다(송영규, 2019.3.10.검색)

가족들에 따르면 가족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가서 시신을 확인한 후 장례식장 담당자에게 안내받은 사항은 “돈이 없으면 시신을 포기”하라는 말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은 무연고사망자 장례 등 사후사무에 대한 적절한 정부 정책이 부재한 것이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왜냐하면 무연고사망자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실무자의 경우 시신위임서를 받으면 망자를 무연고사망자로 판단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연고자 등이 망자의 장례 등 사후사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관련 단체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에 대한 업무지침은 없다.

나. 연고자 범위와 그 순위의 적용 문제

앞서 무연고사망자 개념 정의를 내리면서 연고자의 범위를 살펴봤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6호에 규정된 연고자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 누구든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하면 무연고자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연고자 범위에서 선순위에 있는 연고자가 시신인수를 포기하면 후순위에 있는 연고자는 시신을 인수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은 무연고사망자 두 분의 장례사례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사례 1] 이모가 조카의 장례를 못 한 사례

2018년 5월 말, 중랑구 한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돌아가신 무연고사망자 최○○님의 장례가 있었다. 장례식에는 고인의 나이든 이모와 함께 고인을 가까이서 돌보던 이웃 두 분도 함께 참여했다. 고인은 이모 집 부근에 살았다. 그래서 이모가 자주 들러 고인을 챙겼다고 한다. 마지막 병원치료 때도 이모가 곁에 있었다. 하지만 고인이 돌아가신 후 장례만은 이모가 할 수 없었다. 이유는 오랫동안 고인과 연락도 하지 않고 멀리 다른 지역에서 살고 계신 어머니가 고인의 시신을 구청에 위임해서 무연고사망자가 됐기 때문이다.

[사례 2] 동생이 형님의 장례를 못 한 사례

2018년 6월 중순, 서대문에서 사시다가 심장성 쇼크로 돌아가신 이○○님의 장례에 동생이 참여했다. 동생은 갑자기 쓰러지신 형님 곁에서 임종을 지켰다. 너무나 황망했다. 하지만 동생에게 장례는 허락되지 않았다. 자녀들이 오랜 단절과 경제적 이유로 시신을 위임했기 때문이다. 동생은 조카들을 설득해서 형님의 장례를 치르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결국 조카들의 전화번호는 알 수 없었고, 형님의 장례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무연고사망자 장례식에 와서야 치를 수 있었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님과 이○○님 모두 연고자가 있었고,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이 법 제2조의 제16호에 따르면, 시신 인수의 최우선권은 아내 또는 남편이고 자녀가 2순위, 부모가 그다음이다. 그리고는 손녀·손자 등 자녀 외의 직계비속과 할머니·할아버지 등 부모 외의 직계존속이 각각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형제·자매는 여섯 번째다. 이 순서에 따라 연고자는 권리·의무를 행사한다. 그래서 이○○님의 자녀가, 최○○님의 부모가 시신 인수를 하지 않았을 때 이모가 그리고 동생이 장례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날 사회 문제가 되는 무연고사망자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양산하고 무연사회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법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현실 역시 시신위임 과정과 같이 무연고사망자 장례 등 사후사무에 대한 적절한 정부 정책이 부재한 것이 한 원인이다. 현재 시신위임서를 한 사람에게만 받을지 혹은 연고자가 여러 명 있을 때 모두에게 받을지 여부는 무연고사망자 관련 업무 실무 공무원의 재량행위이다. 연고자 범위 중 한 사람에게만 받아도 무방하며, 연고자 범위 있는 여러 사람에게 모두 받아도 상관없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에 따르면 시신위임서가 1장만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람의 시신위임서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체로는 앞 순서에서부터 연락이 되는 사람에게서 시신위임서를 받고, 그 사람에게 다른 연고자를 대표해서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받는 실정이다. 그래서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6호에 연고자 범위에 있지만 후순위 연고자라는 이유를 망자의 장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 삶의 동반자 등이 진행할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장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혈연의 가족이 아니면 망자에 대한 그 어떤 사후사무 행위도 할 수 없다. 즉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진행하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장례와 사망신고는 원칙적으로 혈연의 가족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실의 법·제도가 이렇다 보니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등 사후사무를 가족이 아닌 삶의 동반자였던 혹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누군가가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로 20년을 살았던 남편이 본인 품에서 돌아가신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무연고사망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시장 상인들도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이웃 상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한국 사회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 약속을 했던 남자친구에게 본인의 장례를 부탁한다고 유언장을 남겼지만 역시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무연고사망자로 보내야 했다. 혈연이라는 가족의 테

두리는 여러 삶의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죽음이라는 통과의례에서 혈연이라는 가족의 존재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다.

삶의 동반자 등이 장례 등 사후사무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무연고사망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무연고사망자 장례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3] 약혼녀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못 한 사례

2018년 2월 초,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파혼하고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무연고사망자 여성의 장례가 있었다. 그 여성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는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을 보호자로 지정할 테니 화장해서 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유언장을 본 연인은 마지막 유언을 지켜주기 위해 변호사도 만나고 경찰에 부탁도 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아무리 유언장이 있다고 해도 혈연의 가족이 아니면 장례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결국 나눔과나눔에서 진행하는 무연고사망자 장례의식에 참여해서야 고인을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사례 4]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장례를 못 한 사례

2018년 5월 말, 강○○님의 무연고사망자 장례가 있었다. 사실혼 관계의 남편은 부인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지만 병원으로부터 시신을 인수할 수 없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았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서로 남남이었던 때문이다. 사실혼 관계의 남편은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 시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고, 전남편과 강 씨 슬하의 자식들은 구청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리하여 강 씨는 ‘무연고자’가 됐다. 사실혼 관계의 남편은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법적 부부가 아니라 시신을 내어줄 수가 없대요. 법이 그렇대요”라며 본인이 장례를 했다면 마음이 더 가벼웠을 거라고 했다.

[사례 5] 고아원 출신의 친구들이 장례를 못 한 사례

2018년 9월 말, 김○○님의 무연고사망자 장례가 있었다. 그는 서울시 관악구에 사시다 관악구 신림동 소재 체육공원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되었다. 사인은 외인사로 고인 스스로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고아 출신으로 가족이 아무도 없어 무연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고아원 출신의 친구들이 있었다.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장례식에 참여한 고아원 출신의 친구들은 개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하겠다고 구청 직원과 경찰과 싸웠다고 했다. 부모가 없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항의했지만 친구를 무연고사망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고인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 전 집안 정리 후 “그동안 고마웠어”라며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례 6] 함께 동고동락 했던 시장 상인들이 장례를 못 한 사례

2018년 3월, 최○○님의 무연고사망자 장례가 있었다. 그의 지인들은 장례식 한 번 해보겠다고 경찰서에도 가보고 구청에도 가보았지만 ‘가족을 찾아야 한다’는 답만을 들었다. 사실상 법적 혈연 가족이 아니면 그의 시신을 위임받아 장례를 치를 수 없었다. 구청 측은 주민등록상에 남아 있는 그의 연고자들에게 연락했으나 끝내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최○○님은 무연고사망자가 됐다. 구청은 화장하는 날 나눔과나눔에서 장례식을 한다며 원하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고인과 친밀했던 이들과 함께 장례식에 참여했다. 지인들은 “무연고자라고 험하게 가는 거 아닐까 걱정했는데, 아주 엄숙하게 잘해주어서 고맙다”고 거듭 말했다. 그것이 남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사례 7] 돌봄을 제공하던 이웃이 장례를 못 한 사례

2019년 7월, 김○○ 님 무연고사망자 장례가 있었다. 이날 장례에 참여했던 지인은 고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르려고 했지만,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참 많이도 낙심했다고 한다. 단절돼서 살아온 가족들에게도 연락해서 돈은 내가 지불할 테니 와서 위임장이라도 써줘라. 그것만 해주면 된다. 애원해도 가족들은 전화번호마저도 바뀌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김○○ 님을 무연고사망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인연이 맺어진 것은 10년 전 우연히 어머니와 같은 병실을 쓰면서 외삼촌과 같은 연배라는 이유였다고 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살아 계신 동안에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면서 서류도 넣고 집에 세간살이도 전부 자비로 사서 장만해놓고 고인이 몸만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해놓았는데 갑작스레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넘어설 수 없는 법과 제도의 현실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르면 동거친족은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 의무가 있고, 그 외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혈연관계의 연고자가 장례와 사망신고를 진행한다. 법과 제도가 이렇다 보니 앞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가족은 아니지만, 삶의 동반자 등이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진행하려고 해도 시신을 인수하는 첫 단계부터 불가능하다. 반면 오랜 단절로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가족 또는 연고자에게 마치 마지막 특권처럼 장례와 사망신고의 의무를 준다. 과연 망자는 어떠한 방식의 장례를 원했을까?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혈연의 가족이 아닌,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에게 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연고자가 시신을 위임한다면 삶의 동반자 등에게 시신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을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즉 이제는 1인 또는 2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나와 함께 삶을 공유하는, 내가 믿는, 절망 속에 언제나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장례를 하고 싶다면 국가가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라. 장례 등 사후사무를 진행할 사람이 없는 예비 무연고자

앞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장례 등의 사후사무의 문제는 무연고사망자뿐 아니라 예비 무연고사망자라고 할 수 있는 가족과 단절된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에 다음과 같은 상담 및 문의 전화가 온다.

[사례 8] 직계가족 없는 40대 남성

2017년 10월,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 사무실에 40대 후반 남성이 전화했다.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아버지와는 거의 관계가 없는 상태이고, 어머니는 5년 전 즈음부터 실종상태예요. 어머니 외가 쪽 친척은 있지만 연락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이복형제도 있지만 역시 왕래하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아 직계가족도 없어요. 작년에 친누나가 돌아가셔서 이제는 정말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재는 요양 때문에 전라도에 와 있는데, 죽음이 걱정이예요. 내가 죽으면 왕래도 없는 친척, 이복형제가 시신을 포기할 거고.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가 될 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비용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볼 테니 제 장례를 치러줄 수 있나요?”

[사례 9] 가족과 단절된 60대 남성

2019년 6월 '53년생 어르신'이 나눔과나눔 사무실에 본인의 장례를 해줄 수 있냐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 어르신이 가장 궁금한 주요 내용은 본인은 결혼도 하지 않아 직계가족도 없고 가족과의 불화로 죽으면 반드시 무연고사망자가 될 테니 나눔과나눔이 책임지고 본인의 장례를 치러 줄 수 있느냐가 제일 궁금한 점이었다. 어르신께 현재 제도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왜 안 되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한참을 말씀하셨다.

[사례 10] IMF 사업실패 후 가족에게 절대 연락 가지 않도록 부탁하는 80대 남성

나눔과나눔이 장례를 지원하기로 약속드린 80대 남성분은 부모님이 어린시절 돌아가셔서 형님과 누나의 도움을 성장했다. 성인이 되어 연예·방송·패션계에서 활동했으나 IMF 사태 발생으로 사업에 실패하면서 노숙자가 되었고 지금은 수급자로 종로구 창신동 작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 이후 마음의 깊은 상처로 우울증이 악화하여 고통 속에 살면서 고독사가 걱정되어 대학병원에 시신을 기증하고자 했지만 역시 연고자 문제로 시신조차 기증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는 본인이 죽은 다음에 절대로 가족에게 사망 사실을 알려지지 않고 나눔과나눔이 장례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사실을 종로구청장에게 우편으로 호소까지 하기도 했다. 그리고 수급비를 모아서 장례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상담 및 문의 전화 사례에 보는 바와 같이 직계가족이 없는 그리고 가족과 단절될 경우 장례 등의 사후사무가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무연고사망자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의 비용은 부담할 수 있으니 본인의 장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분들에게 명시적으로 장례를 약속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

IV. 일본 사후자기결정권 관련 사례연구

1. 일본 생활보호법과 사후자기결정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생활보호법 제18조제2항은 장례를 행하는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 장례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상제부조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장례를 행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일본 동경도청 복지보건국에서 발행한 생활보호 운용 사례집에 언급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례 11]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없어 친구가 장례를 할 경우

[질문 6-86] A시에서 주택 보호를 받은 독신자 등이 사망했지만 장례를 치른 부양 의무자가 없어 B시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 을(乙)이 장례를 하게 되었다. 을(乙)이 상제부조를 신청했을 경우, 그 실시 책임 및 보호의 필요 여부 판정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답변] 상제부조의 신청자인 을은 갑의 부양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의 경우, 생활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적용된다. 이 경우, 을의 자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장례 협조의 결정을 하게 된다. 또, 이 경우 보호의 실시 책임은 사망한 피보호자에게 종전의 보호 기관, 즉 A시가 그 실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보호 금품은 장례 부조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은 자에 효과가 귀속하게 되는 것도 고려하여 기존의 보호 기관이 실시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다.

[사례 12]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고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지가 장례를 할 경우

[질문 6-87] A시 거주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 독신자 갑이 사망했다. 장례를 하는 부양 의무자가 없어 B시에 거주하고 있는 친지들 을이 장례를 하게 되었다. 을에서 상제부조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그 실시 책임 및 보호의 필요 여부 판정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답변] 갑은 생전에 보호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장례부조의 신청자 을은 갑의 부양 의무자가 없다는 점에서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의 자력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장례 부조의 결정을 하게 된다. 또, 이 경우 보호의 실시 책임에 대해서는 사망한 갑이 살던 곳을 담당하는 보호 기관이 그 실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가 장례를 하고자 할 경우 피부양자 지위와 상관없이 상제부조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 무조건 연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장제급여가 지급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가 장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망자가 생활보호법의 피부양자가 지위와 상관없이 상제부조를 통해 장례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즉,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친구든지 또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지인지 상관없다. 최소한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기관 즉, 지방자치단체가 그 실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굳이 무연고사망자로 국가가 나서서 시신을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일본의 생활보호법 사례를 통해 한국의 무연고사망자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일본 생활보호법이 망자의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장례집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지에 대해 살펴봤다. 다음은 민간 NPO 차원에서 사후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활동이 있는지 사례를 살펴봤다.

2. 일본 생전계약체결 NPO 법인 사례

일본은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문제를 한국 사회보다 일찍 경험했다. 그렇다 보니 가족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거나, 근처에 있어도 각각의 가정 사정에 의해 가족을 보살필 수 없는, 그러한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행정의 지원이나 사회복지 제도를 의지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노후 돌봄뿐 아니라 그다음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진 것이 일본 사회의 현실이다. 내가 죽은 이후 나의 장례를 비롯해 소셜미디어 계정 정리, 반려동물에 대한 조치 등 삶의 마무리와 관련돼 친척이 아닌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가족구조와 사회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고령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노후 병간호뿐 아니라 그다음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로 독거·무의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신원보증 및 일상생활 지원, 장례와 같은 사후사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100여 개정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 대부분은 아직 비영리 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NPO 법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나고야에 위치한 NPO 법인 ‘인연의 모임(きずなの会)’과 동경에 위치한 LISS시스템(LISS는 Living · Support · Service의 약자) 사무실을 방문해서 그들의 활동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혈연관계가 사라진 사회에서 인연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의 마지막을 의지할 ‘인연’을 만들고 있는지,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가. 인연의 모임(きずなの会)

1) 활동의 시작과 최초의 법인(法人) 신원보증인

일본의 병원이나 요양원 등은 당사자가 입원·치료비, 요양원비를 내지 못할 때를 대비해 비용을 대신 부담할 신원보증인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NPO 법인 ‘인연의 모임’이 처음부터 이러한 신원보증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전신은 모비석 판매회사였다. 그 당시 고객 중에 고령의 노인 부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보증인이 없어 시영 케어하우스(輕費老人ホーム)에 입소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법인(法人)이 신원보증을 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 이곳저곳에 문의하고 협의도 했다고 한다. 그 결과 2001년 9월, 아이치(愛知)현에서 NPO 법인 인증을 받으면서 최초의 법인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전례가 없었던 활동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계약 내용을 50번 이상 변경했다.

‘인연의 모임’ 활동을 설명해준 오가사와라 시게유키(小笠原重行) 전문이사는 “지금 제공하는 지원들은 국가 제도가 아닙니다. 인연의 모임이 만든 독자적 제도입니다.”라며, “이는 일본 사회의 귀중한 자원의 하나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원보증을 생애에 걸쳐서 한다는 것이 ‘인연의 모임’만이 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본인도 이 활동을 하면서 “혼자 살고 보증인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일본 사회에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연의 모임’은 초기부터 이러한 이유로 미디어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 신원보증에서 일상생활과 장례까지 지원

사업 초기에는, 신원보증인으로서 임대료, 입원비나 치료비, 요양원비 등의 시설이용료만을 보증하는 것을 상정했다고 한다. 즉, 갑자기 아프면 구급차 이송 등의 역할은 입소한 시설에서 담당해 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신원보증인이 긴급하게 와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초기에는 자원봉사를 통해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방법으로는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생활 지원을 유료로 확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원보증 대상이 되었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모르는 일이라고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장례와 납골의 사후사무도 서비스로 지원하게 되었다.

현재는 15개 사업소를 운영하는 ‘인연의 모임’은 지금까지 누계로 10,500명 이상과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계약자는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서 4,500명 정도이다.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다.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취업 관련 신원보증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녀별 비율의 경우 여성이 장수하기 때문에, 80대 이상은 여성이 2

배 이상, 90대도 여성이 많고, 100세 이상은 여성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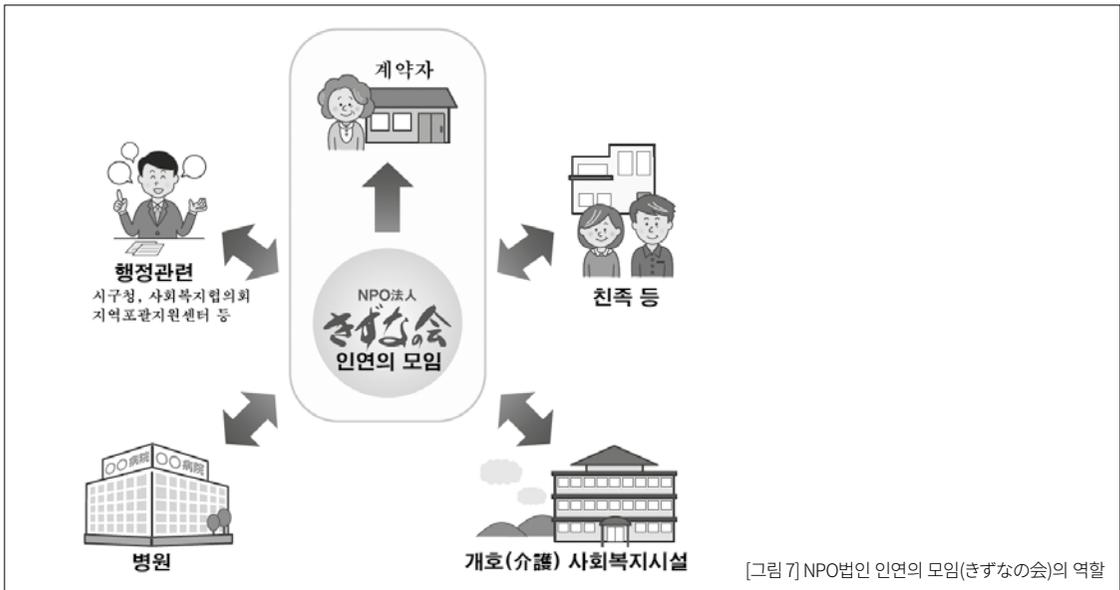
3) 생의 마지막 세 가지 인연

혈연관계가 사라지고, 인연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과 ‘인연의 모임’은 생의 마지막 세 가지 ‘인연’을 맺고 있다.

하나는, 신원보증의 인연이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했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사회복지 또는 요양보호 시설에 입소하거나 다른 곳을 옮길 때, 그리고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혈연의 가족을 대신해서 인연을 맺는다. 신원보증인의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은 이용료, 월세 등과 같은 금전의 책무보증이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의 인연이다. 일상생활 지원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병원·시설 관계자와의 협의, 진찰·퇴원 시 동행과 같은 일반지원이 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으로 지원 요청을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대응이 필요한 긴급 지원이 있다. 긴급 지원은 야간 휴일을 포함 24시간 365일 대응하고 있다.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일상생활 지원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밤에 혼자 집에서 갑자기 아플 때, 또는 욕실 등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함께 동행해 줄 사람이 없을 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생활 지원은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할 인연이 된다. 세 번째는 삶의 마지막 순간인 장례의 인연이다. 생애에 걸친 지원이기 때문에, 사망 시에 장례와 납골을 지원하고 있다. 장례지원은 계약하고 있는 장의업체가 고인이 돌아가신 곳에 가서 장례식을 진행한다. 기본적으로는 가족장으로, 친척도 거의 오지 않는 형태라고 한다. 장례가 끝나면 납골 지원도 한다. 나고야나 아이치현의 회원은 아이치현의 평화공원이라는 곳에 봉안된다. 납골한 이후, 사망 이후에 해야 하는 여러 절차,

보험증 반환, 연금 중지, 가스나 수도 등을 해약, 그리고 유품을 처분한다. 모든 것은 계약에 따라 진행된다. 이것이 전부 끝나면 남은 재산은 변호사와 역할분담을 하고 있어서, 변호사가 예탁하고 있는 돈에서 정산한다. 남은 돈은 변호사가 상속인 조사도 하므로 상속인에게 연락하여 변호사가 인계한다.



4) 문제는 비용부담, 예탁금

신원보증에서 일상생활과 장례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률로 보장된 사회보장도 아니다. 또한 서비스 특성상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는 예탁금 납부 방식으로 운영된다. 문제는 이 예탁금이다. ‘인연의 모임’은 약 1,900만 원(190만 엔)을 내야하며 매년 회비도 있다. 물론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만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미리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경영파탄으로 파산하게 되면 예탁금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은 이용자, ‘인연의 모임’, 그리고 변호사법인의 3자가 체결한다. 변호사법인의 역할은 계약에 따른 예탁금을 보관하고, 정산 후 잔여 예탁금을 상속인에게 인계하는 것이다. 또한, 예탁금 외에 통장과 인감 관리를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계약자의 생활지원 및 입원에 따른 비용은, 법률사무소에 청구서를 보내서 지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히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인연의 모임에서 지불하고 이후에 법률사무소에 청구하고 있다.

계약에는 일반계약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특별지원계약이 있다. 두 계약 모두 신원보증지원, 생활지원, 장례지원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또는 다른 두 가지를 조합해서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계약의 경우 세 가지 모두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약 1,900만 원의 예탁금을 내야 하지만, 신원보증지원만 가입할 때

는 약 870만 원, 신원보증지원과 생활지원을 가입할 경우에는 약 1,170만 원, 신원보증지원과 장례지원에 가입할 경우에는 약 1,600만 원의 예약금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년 연회비와 금전예약 수수료로 2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5) 생의 마지막 기부

인연의 모임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특별지원계약이다. 사실 인연의 모임 입장에서 특별지원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적자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NPO 법인으로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위해 이러한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계약을 체결했던 수급자가

[표 6] 인연의 모임 예약금 내역

계약구분		항목	금액(원)	비고
1	신원보증지원	기본금	1,800,000	계약체결 시 지불금
		소계	1,800,000	
2	생활지원	기본금	1,000,000	계약체결 시 지불금
		예약금	2,000,000	실비정산
		소계	3,000,000	
3	장례지원	만일의 사무지원	1,400,000	실비 정산
		장례지원	3,100,000	실비 정산
		납골지원	1,500,000	실비 정산
		소계	6,000,000	
4	입회금	가입비	1,000,000	계약체결 시 지불금
		첫해 수수료	100,000	계약체결 시 지불금
		연회비	100,000	계약체결 시 지불금
		계약준비수수료	200,000	계약체결 시 지불금
		소계	4,400,000	
5	소비세 및 예비비	실비 정산 관련	1,500,000	실비정산
		약체결시 지불금 관련	1,040,000	계약체결 시 지불금
		변호사법인 수수료 관련	560,000	
		소계	3,100,000	
6	변호사법인 수수료	계약 수수료	300,000	
		상속인 조사	400,000	
		소계	700,000	
		합계	19,000,000	

재정적 어려움으로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약한다고 하더라도 신원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는 집을 거의 쓰레기장처럼 만들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간혹 화재를 일으키거나, 때로는 사망 후 1주일 뒤 발견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래도 수급자분들을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인연의 모임에서 수급자를 위한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복지기금은 상속인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된다. 이 기부금으로 1년간 300명 정도는 대응할 수 있다고 하니, 생의 마지막 기부가 또 다른 인연을 되고, 그 인연으로 누군가는 생애 마지막 의지 할 인연을 찾게 된 것이다. 전체 회원 중에서 수급자 비율은 25% 정도로 약 1,000명 정도이다. 전체 가입자 중에서 일반계약으로 예탁금을 제대로 내는 경우는 55%대, 즉 제대로 납부 못 하는 경우가 45%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에 대한 대응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나. 생전계약 LISS 시스템

1) 활동의 시작과 활동의 근거가 된 두 개의 법률적 변화

1993년에 설립된 「LISS시스템」은 일본 내에서 ‘계약가족’, ‘생전계약’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곳이다. NPO 법인「LISS시스템」이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 역시 가족 중심의 혈연이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서비스를 하게 되기까지는 두 개의 법률적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1992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이다. 이 판결은 살아 있는 동안 체결한 계약이 계약자 사후까지도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한 한쪽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약 주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 민법 제 653조(위임의 종료 사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한쪽 당사자인 ‘위임자 또는 수임자의 사망’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죽은 이후의 장례와 같은 ‘사후 사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계약은 무효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1992년 9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민법 제653조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위임계약의 사후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특약이 있다면 사후에도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로 장례를 위임한 ‘사후사무위임계약’이 가능해졌다.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신고서 제출과 같은 법적 절차를 행하고, 화장과 납골 등의 업무를 해야 한다. 그 외에 연금, 보험 자격 상실 절차, 거주하던 집의 처리에 관련된 법적 절차와 소지품 등의 정리와 처분 등 상당한 업무가 있다. 그것 중 일부 또는 전부를 「LISS시스템」에 위임하는 것

이 사후사무위임계약이다. 이 판결을 통해 「LISS시스템」이 「사후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토대다.

두 번째는 2000년 4월 일본에서 「임의 후견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이다. LISS 시스템이 체결하는 계약에서는 ‘임의후견’ 계약은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전사무위임계약을 근거로 신원보증 서비스를 시행하던 중, 계약자의 판단 능력이 결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자.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지속할 능력이 없다면 그 계약은 존속될 수 없게 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 「임의 후견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임의후견계약 발효의 절차를 개시하여, 임의후견인으로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2) 묘지에서부터 일상의 삶까지

「LISS시스템」이 처음부터 생전계약을 통해 계약가족이 되고 사후사무까지 지원할 계획은 아니었다. 그 출발은 1988년, 종래의 묘지 승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던 고령자 등의 희망에 따라 ‘모야이의 비(もやいの碑)’라는 일본 최초의 합장 영세공양[永代供養, 절에 미리 돈을 내두고, 매년 기일(忌日)이나 피안(彼岸)의 불사(佛事) 같은 때에 올리게 하는 공양]묘를 만들고 ‘모야이의 모임’을 조직했다.

이후, 모야이의 모임 회원으로부터 가족이 없는 자신들이 혼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게 될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93년 10월 주식회사 「LISS시스템」을 설립한다. 「LISS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후의 사무위임계약이 유효하다는 최고재판소 판례와 유언에 의한 부담부유증, 제사주재자의 사전지정 등을 바탕으로, 사후사무위임계약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살아있는 동안 고령자 주택입소에 관한 보증인, 입원과 수술 때의 가족으로 해야 할 역할 등, 생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게 되어, 혼자서 살아가고 혼자서 사망하게 되는 고령자의 의사와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가족으로 해야 할 역할을 담당하는, 즉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에 따라 ‘계약가족’으로서의 업무를 확립하게 된다.

[사진 2] LISS시스템의 모태였던 ‘모야이의 비’ 전경



3)「생전계약」으로 만드는「계약가족」, 3개의 계약

「LISS시스템」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생전”, “임의 후견”, “사후” 이와 같은 3가지 계약에 의해 “살아있을 때”에서 “만일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때”,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까지를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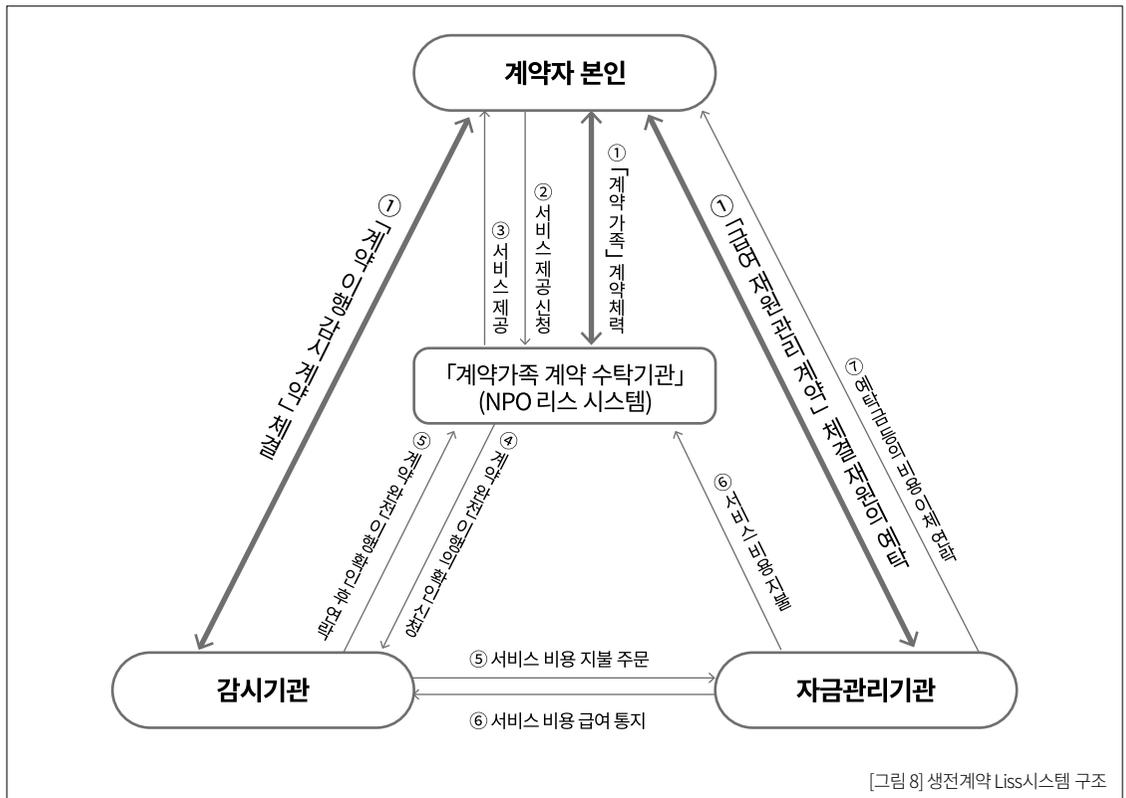
이러한 3가지 계약은 ‘공정증서(公正證書)’가 그 신뢰성을 더욱 높인다. 공정증서(公正證書)는 공증인이 공증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이다. 공정증서의 경우 강력한 증거력과 집행력이 주어진다. 공정증서의 경우 원본은 25년간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여 위, 변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LISS시스템」은 강력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생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가족’이 된다. 사실 가족 간에는 계약은 필요 없다. 하지만 타인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필요하다. 「LISS시스템」은 공정증서에 의해 ‘생전사무위임계약’, ‘임의후견계약’, ‘사후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이 3가지 생전계약을 통해 계약가족이 되면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지금까지 가족이 담당하고 있던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상생활 지원, ②양로원이나 임대 주택의 입주 보장, 병원 등의 입원·수술의 돌봄이나 신원 인수 보증, ③치매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지원(임의 후견 계약·법적 보호자의 위탁), ④사후에 발생하는 각종 업무 및 사무 처리의 인수(장례식 상주와 유품정리 지원 포함)이다.

4) 「계약가족」의 구조, 3개의 기관

‘계약가족’ 계약은 이용자가 심신 모두 약해진 상태 또는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계약이 이행되는 특수한 위임계약이다. 따라서 이용자를 대신하여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고, 위탁금 등의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계약가족’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의 기관이 필요하다.

첫째로 계약에 의해 가족의 역할을 맡는 기관으로 ‘계약가족 계약수탁기관’, 현행 NPO 법인「LISS시스템」이 이를 담당한다. 둘째로 이용자가 「LISS시스템」과 맺은 계약내용이 확실히 시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불완전한 부분이나 청구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시키는 권한을 갖는 ‘감시기관’이다. 여기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것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로, 「LISS시스템」이 실시한 일의 완전성을 감시기관이 확인한 이후, 그 기관으로부터 지급의 지시를 받아 「LISS시스템」에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는 ‘자금관리기관’이다. 직불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은행, 사후사무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자금을 금전신탁에 의해 준비하는 경우에는 신탁회사, 나아가 교육지책으로 자금을 맡아둔 NPO 등의 법인이 이에 해당한다. 각자의 역할과 3자 간의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5) 생전계약의 핵심 원칙

「LISS시스템」은 생전계약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회보장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고 원활한 운영과 미래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중요한 기준으로 강조한다.

첫째, 망자의 인권 확립과 옹호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으며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위해서는 망자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망자가 죽었다고 해서 물건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죽고, 마무리할 권리가 있다는 인권의 옹호가 중요한 원리이자 원칙이 된다.

둘째, 사후 자기결정의 원칙이다. 생전계약은 생전의 자기 의사에 의해 결정된 내용을 사후에 확실히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죽음을 맞이하며 의상을 스스로 고르고 준비하는 것도 사후 자기결정권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사후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장례절차뿐 아니라, 당연히 무덤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즉, 본인이 사망한 이후 진행될 절차마다 자기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죽음의 자기수용의 원칙이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을 피해왔으나, 자기 죽음의 시작과 끝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추구하는 생전계약에서는, 자기 죽음을 외면할 수 없다. 죽음의 자기수용은 호스피스에 평상심을 갖고 입원하는 사람들의 훌륭한 삶의 자세로부터 배워왔다고 한다.

넷째, 공익성과 비영리의 원칙이다. 생전계약이라는 사회적 서비스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무리란, 이용자의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전계약은, 비영리여야만 한다.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생전계약수탁 주체는 계약의 영구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인이 되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운영의 임무를 맡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과 운영지침과 그 자체가 비영리여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해야 한다.

6) 문제는 비용부담, 예탁금

「LISS시스템」은 약 1,020만 원(102만 엔)을 내야하며 매년 회비도 있다.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은 많은 사람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LISS시스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다.

대략 비용 부분을 정리하면 우선 비용은 두 종류다. 생전계약의 수탁 모체인 「LISS시스템」이라는 법인의 유지운영비와 「LISS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약자가 이용할 때의 이용료이다. 계약 시 신청금이 50만

원으로, 그 명세는 「LISS시스템」에 대한 신청금이 30만 원, 감시기관인 일본생전계약등결제기구에 대한 것이 20만 원이며, 분담금(법인 유지비)이 150만 원이다. 계약 절차 완료 후 시스템 유지비(회비)로 월 1만 원을 받는데, 이는 일생 동안 받고 있다.

생전사무 이용에 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용할 때마다 내도록 하고 있으나, 그렇게 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기 때문에 결제기구에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예탁하고, 서비스 제공 후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LISS 시스템」에 지급한다. 사후사무의 비용은 사전에 생전에 준비해 둔 재산(결제기구에의 예탁금을 포함)을 결제기구가 유언집행에 의해 가격으로 환산하여, 「LISS시스템」으로부터의 청구서의 정당성을 점검한 이후 지급한다. 기본형사후사무일 경우에는 500만 원을 지급하며, 자유선택형 사후사무는 선택에 따라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비용부담은 있지만, 생전계약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 있다.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천 명을 넘어, 사망한 사람이나 도중에 해약한 사람을 제외하면, 현재 ‘계약가족’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람은 약 3,500명 정도나 된다.

[표 7] LISS시스템 예탁금 내역

계약구분		항목	금액(원)	비고
1	신청금	리스시스템	300,000	
		일본생전계약등결제기구	200,000	
		소계	500,000	14일 이내 반납가능
2	분담금	법인유지비	1,500,000	분납도 가능
		소계	1,500,000	
3	예탁금	사후 사무를 위한 예탁금	5,000,000	결제기구가 보관, 해약 시 반환
		생전 사무를 위한 예탁금	2,000,000	결제기구가 보관, 해약 시 반환
		소계	7,000,000	1백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 예탁
4	공정증서 작성비용	작성수수료	1,000,000	
		증인비용(100,000원~)	200,000	공정증서 계약당일 현금지급
		소계	1,200,000	공정증서 계약당일 현금지급
5	시스템유지비	이용등록 다음 달~ 공정증서 작성 월까지		
	회비	공정증서 작성 다음 달부터 변경		5,000/월
	소계			10,000/월(120,000원/년)
		합계	10,200,000	

V. 한국의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법제 검토 및 입법제안

현대 사회의 도래는 공동체 구성과 관련해 도시화의 진행으로 인한 핵가족화를 가져왔는데, 이제는 핵가족화를 넘어 1인 가구¹⁸⁾가 우리 사회 가구 구성의 최대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까지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비율 증가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 약화와 가족 개개인의 개인주의적 성향의 영향도 있겠으나 경제력 약화라는 원인으로부터 사회적 고립이라는 결과를 배태하는 데보다 용이한 진행과정을 보인다는 점에서 고립사 및 무연고사망자와도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결과물인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등 사후사무와 관련하여 현행 법제를 검토하고 향후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1. 헌법적 기본권 검토

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 개념 및 근거

헌법 제34조 제1항, 제4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의 구체적인 부여 여부, 그 내용 등은 무엇보다 국가의 경제적인 수준, 재정능력 등에 따르는 재원확보의 가능성이라는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고,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된다”고 보았다.¹⁹⁾

2) 고립사 및 무연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

취약계층의 고립사 및 무연사는 경제적 빈곤이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충족된다면 고립사 및 무연사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고립사 및 무연사를 막기 위해 재정능력의 범위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²⁰⁾

18) 일본에서는 우리의 1인 가구를 ‘단신세대’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19) 헌법재판소 1995. 7. 21. 93헌가14 결정

20) 이상명, ‘고독사에 대한 법적 고찰’ - 노인 고독사에 대한 법사회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4호, 2016. 12., 69, 70면

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1) 개념 및 근거

헌법 제10조 2문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함께 경제적 빈곤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게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것이 명백한 경우인지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2) 고립사와 무연사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국가는 고립사와 무연사가 발생하는 취약계층에 대해 기본권 보장 수준이 너무 낮아 사회적·경제적 생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는 국가의 재정규모를 고려하되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급부를 하여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²¹⁾

다.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와 보장대상의 기본권 충돌 문제

1) 개념 및 근거

국가가 취약계층의 고립사와 무연사를 방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보장대상이 국가의 도움을 거절하면서 헌법 제10조 1문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을 주장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인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사사로운 자신만의 영역을 본인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권리인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우선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²²⁾

21) 위 논문, 72면

22) 위 논문, 72, 73면

2) 해결방법

기본권 주체 사이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규범조화, 우월적 기본권 우선 등 해결방법이 제시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 이행 과정에서는 공익 측면에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으로 공동체 전체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반해 개인인 보장대상이 느끼는 일반적 행동자유원의 제한이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제한은 일시적이거나 그 정도가 낮으므로 사익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보호가치가 낮다고 할 것이다.

라. 자기결정권

1) 개념 및 근거

헌법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그 근거를 헌법 제10조 1문의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에서 구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기존에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헌법 제10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2) 내용

자기결정의 의미는 ‘자기가 하는’ 결정이라는 측면과 ‘자기에 대한’ 결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자기결정은 자신이 결정의 주체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자기가 결정하여야 하고, 자신에 대한 사안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²³⁾

윤리적 차원에서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의미를 지니고,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 짓는 논거이기도 하나, 자기결정이라는 것이 규범적 정당화의 1차적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²⁴⁾ 즉, 권리는 무엇인가를 정당하게 보유하거나 행하는 도덕적 성질이며 도덕적 권능으로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보유하는 것이라는 그로티우스의 주장에 따르면 권리는 ‘정당한 이성’에 합치하며 ‘정당하게 보유하거나 행하는’ 권능이기 때문이다.²⁵⁾

23) 김현철,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9권 제4호(2015. 6), 360면 참조

24) 위 논문, 361면 참조

25) 위 논문, 361면; 재인용 Hugo Grotius(F. W. Kelsey tr.), De Jure Belli Ac Pacis Libri Tres, Vol.1, Clarendon Press, Oxford(1925), 35면 참조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보유 주체, 자기결정권의 행사 및 그 행사에 대한 승인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나뉘는데, 인간이 갖는 이성 덕분에 인간은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이지만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통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이성적 능력이 필요하다.²⁶⁾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타인에게 영향을 주므로 공동체 내에서 실현되는 시민권이기도 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이성적 능력이 부족한 구성원 개인을 도울 방법이 필요하고, 타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한을 가하는 자기결정권의 승인도 필요한 것이다.²⁷⁾

이러한 점에서 한국 사회는 자기결정권을 갖는 모든 구성원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선과 이익을 위해 그러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제한과 이성적인 자기결정이 있었다라면 행해졌을 선택에 대한 추정적 고려가 요구되는 것이다.

마. 사후 자기결정권

1) 사후 자기결정권 인정 여부 논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헌법상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데 위와 같은 권리가 개인의 생존 시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냐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의미 있는 결정을 하였는데,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본문이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형제들과 30여 년간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상 연고가 없는 청구인의 시체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2헌마940 결정

즉,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사인 조사와 병리학·해부학적 연구의 기초가 되는 해부용 시체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한다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시신 자체의 제공과 구별되는 장기나 인체조직에 있어서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반

26) 위 논문, 365, 366면 참조

27) 위 논문, 367, 368면 참조

대하는 경우 이식·채취될 수 없도록 규정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고, 실제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후 자신의 시체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공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3) 사후 자기결정권의 인정 가능성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눈여겨 볼 점은 바로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만일 자신의 사후에 시체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본권 주체인 살아있는 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다.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은 자연인의 경우 살아있는 자를 그 대상 범위로 하는데, 개인이 생전에 사후를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후라도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바.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인정해오던 자연인의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자신의 사후 설계에 대한 자기결정권까지 확대하여 인정한 것이라 보인다. 이에 따라 고립사 또는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생전에 사후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 그 사후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후 자기결정권을 가진다는 점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고립사 또는 무연고사망자 개인이 생전에 자신의 사후를 설계해두었다면 그 내용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러한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고, 만일 생전에 그러한 자기결정이 없었다면, 이성적 능력을 가진 개인이라면 자신의 사후 설계에 대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자기결정권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사후를 설계하는 사후 자기결정권 역시 인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는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개인이 생전에 그러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성적 개인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 것인지 고려해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실 이렇게 개인이 자신의 사후를 설계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언이라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고, 이외에도 최근 전면 개정된 후견제도 및 신탁법 등을 통해서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런 점에서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각 제도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사후자기결정권의 현행 법제 검토

가.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된 경우

1) 유언

가) 법정 유언사항

민법 제1060조 이하는 유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생전에 자신의 사후 재산관계나 신상에 관한 법정사항을 유언을 통해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정사항은 친생부인, 인지, 미성년후견인 및 후견감독인 지정, 상속재산 처분,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증, 신탁 설정 등이다. 다만, 법정사항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유언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립사 또는 무연고로 사망한 경우 자신의 장례에 관한 내용을 유언하더라도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나) 유언집행자 지정의 실효성 여부

이 경우 민법 제1093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101조는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폭넓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생전에 유언집행자 지정을 통해 비록 법정 유언사항은 아니어서 법적으로 그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자신의 의사대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의지대로 장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탁제도

가) 신탁법 개정과 유언대용신탁 도입

신탁은 주로 영미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통용되는 제도이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륙법 국가에서는 원래 잘 이용되지 않았던 제도이었던 탓에 우리 법제에서는 주로 담보권 설정을 위해 신탁제도를 이용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철회가능신탁과 유사한 제도인 유언대용신탁이 일본의 2007년 신탁법 개정 과정에서

도입되면서 이런 흐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²⁸⁾

우리 역시 2014년 신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우리 법제의 유연이 갖는 사후 설계라는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즉, 수익자를 차례로 지정하는 수익자연속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이 그 내용인데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①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②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으로 원칙적으로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신탁법 제31조에 따라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고,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미리 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는 자신이 사망 시에 지정한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면서 자신이 신탁한 재산으로 자신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위탁자는 만일 장례비용을 제하고도 신탁재산이 남는 경우라면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신탁재산 운용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다) 공익신탁제도 활용

2014년 제정된 공익신탁법은 동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장애인·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제3조에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의 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제4호의 인가요건을 갖추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공익신탁을 운용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신탁재산 운용과 함께 신탁재산 운용에 부수하는 필요한 행위로써 위탁자의 의사에 따른 장례지원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싱가포르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특별지원신탁회사(The Special Needs Trust Co, 약칭 'SNTC')가 존재하는데 위 법인은 싱가포르 유일의 비영리 신탁회사로 정부 사회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법무, 의료, 재정 분야 전문가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공적수탁인과 제휴관계를 체결하고 있다.²⁹⁾

28) 임채용,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인권과정의 Vol. 397 2009년 9월, 126 내지 129면

29) 에스더 탄(Esther Tan),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특별지원신탁회사', 한국성년후견학회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2015. 12. 11. 자료집 195면

3) 사후사무위임계약

가) 사후사무위임계약의 개념

사후사무위임계약이란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계약으로 위임인의 사망 후에 비로소 수임인이 계약상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인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후사무위임이란 계약 유형도 자유로이 창설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후사무위임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민법이 위임인의 사망을 위임종료 사유로 하고 있어 사후사무위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존재한다.³⁰⁾

나) 사후사무 위임계약의 유효 여부

① 민법 제690조 및 제691조 논의

위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우리 민법 제690조는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으로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1조는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 규정은 위임인 사망 시 위임계약이 종료하고, 수임인은 긴급사무만 처리하되 그 경우 위임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임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므로 위임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즉시 사무처리를 중단하면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³¹⁾

② 사후사무 위임계약 유효성 관련 학설 대립

우리 학계는 민법 제690조 및 제69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가 우선한다고 보고, 일본의 학설상으로도 위와 같은 내용의 일본 민법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해 위임인 사망 후에도 위임이 종료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가능하다고 본다.³²⁾

사후사무위임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이 위임계약 당시 상호 위임계약의 목적이 위임인의 사망 후 일정한 사무처리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고, 위임인이 사망하더라도 그 목적상 위임계약은 종료하지 않는다는 당사자의 합의(특약)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사무위임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³³⁾

③ 비교법적 고려

영국은 1985년 지속적대리권수여법(Enduring Powers of Attorney Act)을 제정하여 1986. 3. 10.부터 시행

30) 송영민,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유효성과 당사자의 해제권 - 일본에서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2016. 8. 31.), 123, 124면

31) 위 논문, 125면

32) 위 논문, 123, 126면

33) 위 논문, 126, 127면

하였는데, 지속적 대리권이란 구체적으로는 정신보건법에 정의된 심신상실상태의 발생 이후에도 지속하는 대리권이란 의미이다. 이러한 영국의 지속적대리권수여법은 사후사무위임계약과 유사한 계약 유형을 성년 후견처럼 보호법원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임의후견과 같은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³⁴⁾ 이런 규정은 일본의 이행형 임의후견계약과 유사하다고도 보인다. 즉, 영국에서도 전통적인 대리법에 따르면 유효한 권한의 수여 후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본인의 의사능력상실처럼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이런 경우, 대리권의 급격한 종료는 제3자에 대하여 확실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고 고령자 등 의사능력이 제한되어 대리인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경우, 오히려 대리권이 상실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³⁵⁾ 일본최고재판소 역시 1992년 9월 22일 平城4(오)67호 예탁금반환청구 등 사건에서 “자기의 사후 사무를 포함한 법률행위 등의 위임계약이 (중략) 당연히 위임자의 사망에 의해 계약을 종료시키지 않는 내용의 합의를 포함하는 취지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민법 제653조의 법적 의미에 대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략) 당사자간 성립한 계약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조항의 법적 의미 하에서 위임자의 사망에 의해 당연히 종료될 수 없는 임의계약으로 (이하 생략)”라고 판시하여 사후사무위임계약이 위임인의 사망 시에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해 존속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³⁶⁾

④ 검토

사후사무위임계약 자체의 유효성은 그 필요성 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는 사적 자치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사후사무위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임인의 상속인 보호 문제와 충돌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제한

① 사후사무위임계약과 상속제도의 충돌 문제

사후사무위임계약이 유효한 경우 피상속인인 위임인과 수임인의 합의를 상속인의 이익과 어떻게 조정하느냐의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위임인이 사망 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를 우선시할 수 있는가로 귀결된다. 특히 사후사무에 지출되는 비용을 수임인이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거나, 사후사무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인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이다.³⁷⁾

34) 백승흠, '고령자의 자기결정권 - 영국의 지속적대리권수여법을 중심으로', 아·태공법연구(제4집), 135, 136면

35) 위 논문, 134, 135면

36) 부록 2. 일본 사후위임계약 관련 판례 참조

37) 송영민,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유효성과 당사자의 해제권 - 일본에서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2016. 8. 31.), 127면

현행 법제에서도 유언 및 신탁 등으로 생전에 자신의 사후 세계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상속법 질서보다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우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 범위 내에서 처분 의사를 명확히 표명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자신의 사망 후 사무처리를 위임한 의사를 존중해 그러한 의사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³⁸⁾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사후사무위임계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거나, 상속법질서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종료될 수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실질적으로 유류분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부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마련해주고,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에 상속인의 재산이나 혼재하거나 상속인의 기여분이 포함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의 1/2 범위 내에서 상속인에게 보장된 것이기 때문이다.

② 사후사무 위임계약과 해제권 문제

위임인 사망 후에도 사후사무위임계약이 유지된다면 위임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임의로 해제권을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즉, 사후사무위임계약은 위임 사무의 종료 시까지 해제권 불행사 특약을 포함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위 계약을 승계한 상속인도 원칙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만 해제권을 인정해야 한다.³⁹⁾

이와 관련해 일본 동경고등법원은 2009. 12. 21. “위임인의 사망 후에 사무처리를 의뢰하는 취지의 위임계약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당연히 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합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실현이 곤란하여 이행에 과중한 부담이 생기는 등 계약의 이행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의 유언에 의해 지정된 제사주재자가 당해 위임계약을 해제하여 종료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합의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당사자의 합의를 근거로 위임계약의 종료나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⁴⁰⁾

예외적으로 사후사무위임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일본의 학설은 해제권 포기가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면 허용되지 않는다거나, 사회적으로 전형적이면서 상당하고 사망 시 어떤 형태로든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제할 수 있다는 설, 수임인이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행동해야 하므로 사무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⁴¹⁾

38) 위 논문, 127면

39) 위 논문 128면

40) 判例時報 2073号 32頁

41) 송영민,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유효성과 당사자의 해제권 - 일본에서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2016. 8. 31.), 130면 내지 133면

하지만, 사후사무위임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면 너무 널리 상속인의 해제권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장례 등 사후사무처리에 지출되는 비용 및 수임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상속재산 공제액이 유류분을 사실상 침해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 예외적으로 사후사무위임계약의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후사무위임계약에 의한 출연이 상속인을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도 이를 감수해야 하나, 그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수임인의 사무처리는 허용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예외적으로 해제권이 있다고 본다.⁴²⁾

4)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계약

가) 성년후견제의 도입과 임의후견계약

우리 민법 제928조 이하는 성년에 달한 사람들에 대해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기존의 금치산 등 제도는 권리능력의 제한이 과도하고, 획일적일 뿐 아니라 후견인에 의한 포괄적 의사결정대행을 기본구조로 하고 있어 피후견인이 자신의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왔는데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여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보호유형과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³⁾

또한, 이와 같이 새로 도입된 후견제도 중에는 임의후견제도 역시 포함되어 있어 기존과 달리 공정증서에 의한 후견계약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민법 제959조의14는 후견계약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 후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 내용에 따라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나) 비교법적 검토

이미 살펴본 영국의 지속적대리권수여법도 일정 부분 임의후견계약의 성격을 갖는 것처럼 2007년 법률에 따라 신설된 프랑스의 장래보호위임계약도 장래 능력의 손상으로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의 신상이나 재산적

42) 위 논문, 134면 내지 136면

43) 박인환, '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지원의 제도와 모색', 한국성년후견학회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2015. 12. 11. 자료집 57면

이익을 보호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을 대리하기 위한 수임인을 선택하고, 위임할 업무 범위를 지정해 사서증서 또는 공정증서로 체결한다. 이 계약의 성격은 후견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는데, 의학적 진단서, 공증 위임계약서 제출 및 수임인의 관할지방법원 출두에 따라 서기가 형식적 심사를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⁴⁴⁾

이때 타인을 위한 위임계약은 공정증서로, 자신을 위한 위임계약은 사서증서 또는 공정증서로 하는데 이를 공시할 방법이 없어 거래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점과 장래보호위임계약의 효력 발생 시에는 후견법관이 개입하지 않아, 본인의 판단능력 정도나 위임계약 효력발생을 정당화할 사유를 평가할 방법이 없어 본인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⁴⁵⁾

독일의 경우 기존에는 일시적 또는 지속적인 행위무능력 상태에 대비하여 사전에 자신의 권리를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사전적 전권위임(Vorsorgevollmacht)'을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정신적·신체적으로 쇠약해진 사람들 대부분이 일상생활을 영위했다. 이후 민법 제1896조 제2항 제2문에 성년후견 규정이 신설되면서 사전적 전권위임이 최초로 법에 규정되었다.⁴⁶⁾

사전적 전권위임은 개인이 원하는 개별적인 욕구를 수임인에게 전달할 수 있고, 법원의 번거로운 개입에서 벗어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후견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명의 위험이 따른 수술 등 치료나, 강제적 시설입소 및 재산문제를 제외하면 수임인의 사무 처리에 법원의 승인이 필요 없어 수임인의 권리남용이나 횡령 등 가능성도 있다.⁴⁷⁾

다)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의 실무와 계약 유형

① 장래형 임의후견계약

아직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되기 전에 재산관리, 신상감호 등 사무에 관해 위임계약 없이 임의후견계약만을 체결하여 자신의 판단능력이 저하될 경우 임의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로서, 임의후견계약법이 예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⁴⁸⁾ 그런데 이와 같은 장래형 임의후견계약은 동거하지 않는 전문가 등 제3자가 수임인인 경우 언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인지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

44) 김현진,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 - 장래보호위임계약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6권 1호, 96면, 107, 108면

45) 위 논문 109, 110, 116면

46) 조성혜, '독일의 성년후견인 제도와 자기결정권',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1호, 145, 146면

47) 위 논문, 146, 147면

48) 송영민,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유효성과 당사자의 해제권 - 일본에서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2016. 8. 31.), 159면

되고, 설령 임의후견계약 수임인이 선임 신청을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 본인의 건강이나 재산상태가 크게 변경될 우려가 있다.⁴⁹⁾

② 즉효형 임의후견계약

즉효형 임의후견계약은 즉시 임의후견이 시작되기 때문에 임의후견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본인의 판단능력이 다소 불충분한 경우에도 계약체결을 위한 의사능력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⁵⁰⁾ 문제는 본인이 임의후견계약 당시 임의후견인에 대한 충분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불신으로 인해 임의후견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은 장래 자신의 삶을 설계하면서 생활수준, 임의후견인의 보수를 정해야 하는데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었다면 이러한 위임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⁵¹⁾

③ 이행형 임의후견계약

이행형 임의후견계약은 임의후견계약과 동시에 임의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해 처음에는 위임계약에 따라 본인의 재산관리 등을 하다가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되면 임의후견계약으로 이행해 후견사무를 행하는 계약이다. 이 경우 계약의 진정한 성립을 확인하고 장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증서에 의해 위임계약과 임의후견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⁵²⁾

이행형 임의후견계약은 현재는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었지만, 장래 판단능력이 저하될 때를 대비하는 것이어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처리로부터 임의후견으로 이행되어 시간적 간극이 없이 피후견인 보호가 확실하다.⁵³⁾ 다만,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이행형 임의후견계약의 경우 위임계약의 수임인이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피하기 위해 임의후견으로 이행을 꺼리는 경향이 있고, 후견감독인 선임 시에는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쉽도록 대리권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남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⁵⁴⁾

④ 검토

일본에서는 장래형 임의후견계약 체결 시 본인의 판단능력 판단을 위해 월1회 연락, 연 1~2회 방문, 필요시 상담 및 적시에 임의후견감독인선임 신청 의무를 규정한 homelawyer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방법이 널리

49) 위 논문, 159, 160면

50) 위 논문, 158면

51) 위 논문, 159면

52) 오호철,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의 유형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시사점', 법학연구 제52집 2013, 154면

53) 위 논문, 155면

54) 위 논문, 155면 내지 158면

이용되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즉효형 임의후견계약은 판단능력이 문제되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재산관리 등을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⁵⁵⁾

이행형 임의후견계약의 경우 우리 민법 제959조의14 제3항은 임의후견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가정법원에 의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위임계약 수임인이 본인의 판단능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처리를 하는 등 남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본인의 판단능력이 저하되면 바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 청구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임의후견감독인의 대리권 범위는 일정 액수 이상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위임인이나 친척 등의 서면 동의 또는 대리권 제한 등 조치로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⁵⁶⁾

라) 사후사무를 위한 임의후견계약상 본인의 의사 실현 방법

① 임의후견계약상 본인의 의사 존중원칙

우리 민법 제681조는 임의후견인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959조의14 제4항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임의후견계약의 특성상 임의후견인은 그 직무의 집행에 있어 본인의 의사 및 희망을 중시하여야 한다.⁵⁷⁾

만일, 본인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본인의 평소 언동 등으로부터 그 의사를 추측할 수 있지만, 자의적 추측은 피해야 하고, 영국에서 2005년 제정된 의사결정능력법의 원칙인 최선의 이익 확보가 본인의 의사 추측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무엇이 최선이 이익인지는 본인의 의사, 희망, 감정을 존중해야 하고,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지시하여 두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가능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상에 계약조항으로 기재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⁵⁸⁾ 이 경우 사후사무에 대하여도 위임인이 자신의 의사를 공정증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다.

② 공정증서에 사후사무에 대한 본인 의사 기재하는 방식

일본의 경우 친척이 없는 본인이 자기의 사무에 필요한 사무를 임의후견인에 부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후사무의 위임계약은 위임자의 사망에 의해 종료되지 않는 특약이 기재된 통상의 위임계약으로, 아래와 같이 임의후견계약공정증서에 기재하는 것이 가능하다.⁵⁹⁾

55) 위 논문, 162면

56) 위 논문, 160, 161면

57) 위 논문, 99면

58) 위 논문, 100면

59) 위 논문 110, 111면

대리권 목록(임의후견)

제O조(사후의 사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

갑은 을에 대한 사후의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 (1) 갑의 생전에 발생한 을의 본건 후견사무에 관한 채무의 변제
- (2) 임원보증서, 임원 일시금 그 잔존하는 채권의 수령
- (3) 갑의 장의, 매장, 제사를 주재하는 것
- (4)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신청

2. 을은 상속재산액을 고려하여 상당의 액을 전항(3)의 비용으로서 갑의 재산으로부터 미리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위임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후 자신의 장례에 대해 결정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 위임인 사망 시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대로 장례가 진행될 수 있다.⁶⁰⁾

마) 후견인의 사후사무 처리 가부

① 후견인의 사후사무 처리 근거

임의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는 후견인의 업무는 종료하게 된다. 즉, 피후견인과 관련된 권리·의무는 모두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고, 후견인이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무에 한하여만 종래 권한을 행사한다. 즉 우리 민법 제691조는 긴급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정후견의 경우 동법 제940조의7, 959조의7, 959조의13이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위임계약의 일종인 임의후견에도 당연히 위 조문이 적용된다.⁶¹⁾

만일, 피후견인 본인이 판단능력이 충분한 시점에 사망 후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정증서 등으로 사후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내용은 유효하고, 그 내용이 상속인의 긴급사무에 한정되는 것이라면 임의후견계약에 부수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⁶²⁾

② 사후사무 처리 범위

위 긴급처분의 경우 위임자 등에게 사무인계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성이 있는 사무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인과의 이익상반·상속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필요·최소한으로 그쳐야 할 것이다.⁶³⁾ 이 경우 사전에 사후사무에 관한 위임계약이나, 임의후견계약상 사후사무 위임조항이

60) 위 논문 111면

61) 김은호,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대한변호사협회 2016년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자료집, 2016.11.5., 25면

62) 위 책 25면

63) 위 책, 24면

있다면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다면, 임의후견인은 다음과 같이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그 업무의 처리 범위가 달라진다.

만일,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후견인은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인계하므로 장례와 관련한 비용과 절차도 상속인들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존재하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 상속인이 즉시 상속재산 관리나 장례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후견인은 상속인이 그 사무를 처리할 때까지만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상속인과 협의할 수 있다면 피후견인의 시신을 장례식장에 안치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하는 사무, 사망진단서 발급사무 등을 처리해야 한다.⁶⁴⁾

반면, 위와 달리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라면 후견인은 위임의 범리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사무들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사무들에는 피후견인 명의 채무 변제, 공과금·세금 납부뿐 아니라 장례사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임의후견인은 즉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⁶⁵⁾ 이 경우 임의후견인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는 장례사무를 긴급사무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바) 검토

피후견인이 사망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매·화장허가신고 및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85조는 사망신고를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족이 없는 피후견인의 경우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만이 할 수 있어 사망신고권자에 임의후견인을 포함한 성년후견인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⁶⁶⁾

또한, 장례는 사회통념상 사람이 죽었을 때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행위이고, 그 특성상 비용이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지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여지가 크며, 사후 단기간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간 미룰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⁶⁷⁾ 임의후견인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사무로서,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의후견계약상 사후사무에 관한 조항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례 등 사후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64)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2018. 4. 123면

65) 위 책, 124면

66) 위 책, 27면

67) 위 책, 29면

따라서 사후사무에 관해서는 피후견인 사후 잔존하는 필요사무의 기준을 명시하고 관련 권한을 후견인에게 부여해야 하고, 유류분 침해 등 상속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과도한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며, 피후견인 사망 후 사무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종료 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⁶⁸⁾

나.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법률관계

1) 공영장례 관련 법령

가) 노인복지법

현행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며, 제3항은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하지 않고 있다.⁶⁹⁾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공영장례와 관련한 내용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사업의 형태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방식만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또한, 최근 고립사하는 계층이 비단 노인만이 아닌 청장년층까지도 확대되고 있어 노인복지법에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조 제16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등 선순위 연고자가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순위 연고자들이 시신인수를 거부하여 무연고자로 처리되는 경우 후순위 연고자들 또는 망인의 사실혼 관계 등 삶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유언, 임의후견, 신탁 등 생전에 자신의 장례의식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고립사 또는 무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후순위이나 생활을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선순위 연고자들보다 더욱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로 하여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여

68) 위 책, 30면

69) 이상명, ‘고독사에 대한 법적 고찰’ - 노인 고독사에 대한 법사회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4호 2016. 12. 79면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근거가 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공영장례 관련 조례

가) 신안군의 최초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기타 지자체 사례

한국에서는 2007년 신안군에서 최초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래 2014년 광주광역시의 각 구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자치구에도 조례가 제정되었다.

나)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 및 내용

서울특별시는 2018. 3. 22.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여 같은 해 9. 23.부터 시행·운영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6조 제1호는 무연고사망자를 지원대상자로 하는데 이때 문제는 위 연고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영장례 조례에 따른 장례절차도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법률이 규정하는 연고자의 순위에 따른 결정권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위 공영장례 조례 제6조 제3호는 2018. 1. 4. 제정된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의 고립사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조례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고립사를 포괄하지도 못하고 있다.

3) 현행 법령과 조례의 한계

현행 노인복지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를 실현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특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 따르면 동법의 제정 목적이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사의 대상이 된 개인을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객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주체가 아닌 장례의 객체에 불과한 대상이 생전에 자신의 사후 장례를 어떻게 계획하였는지 그 의사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보건 위생상 편의를 염두에 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연고자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무연고’ 여부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례의 제·개정만으로는 고립사 또는 무연고사망자 개인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 향후 입법 및 정책 방향 제안

가. 고립사 및 무연고사망자 관련 법률 발의안 및 개정안

1) 국회 계류 중인 발의안

가)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8844호)

위 발의안은 2017. 8. 29. 기동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계류 중으로 제안이유로 “고립사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고립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은 물론 발생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고립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되고도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은 요원할 뿐 아니라 최근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형태로 올라섰지만,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보건복지 정책도 부족하여, 이에 고립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라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고립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립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고립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고립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고독사 예방법(의안번호 제9759호)

위 발의안은 2017. 9. 29. 김승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여 계류 중인데 제안이유로 “고립사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립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립사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하며, 고립사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사 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고립사 현황 파악, 고립사 발생 위험의 사전 예방, 고립사 위험 발생 시 대응 및 지원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5년마다 고립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고립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기동민 의원의 법과 다른 점은 전국적인 고립사 발생 현황을 표시하고, 고립사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고립사 위험 지도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고립사 위험자 발굴 및 상담, 고립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 고립사 위험자에 대한 사회적 관

계 형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립사 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028호)

위 법률안은 2017. 7. 17.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계류 중으로 제안이유로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그 시신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재산관리에 관해 민법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절차에 따라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연고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검사도 소극적이어서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검사에게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면 검사가 반드시 선임청구를 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재산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나) 노인복지법 개정안

① 김해영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565호)

현행 노인복지법에 독거노인의 실태와 서비스 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종합적인 추진 시책이 없고, 홀로 사는 노인의 고립사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노인 고립사의 예방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독거노인의 실태를 조사 및 지원하고, 고립사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② 김영우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667호)

위 김해영 의원 안과 유사하게 고립사 위험이 높은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지자체장의 고립사 위험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지자체장의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고립사 노인의 연고자 부존재 또는 미확인 시 지자체장의 장례 대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발안의 및 개정안의 한계

가) 고립사 예방법 발의안 관련

현재 발의된 고립사 관련 발안의 모두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고립사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립사 현황을 파악하고, 고립사 발생 시 대응 및 필요한 지원 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고립사를 예방한다는 의미는 단지 고립사한 사람을 빨리 발견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설령 1인 가구로 홀로 산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관계망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립생을 예

방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망의 구축은 고립사 위험자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접근해야 한다. 실제 쪽방과 같은 곳에서 거주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일수록 고립사의 공포가 크다. 그래서인지 이들은 오히려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도 어떻게든 본인의 장례비 정도는 마련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연이 종종 뉴스에 보도되기도 한다. 고립사 대부분의 경우는 무연고사망자로 시신이 화장되는데, 가족이 있지만 단절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들도 이러한 현실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고독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관계망의 구축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사후자기결정권’의 보장에 있다. 하지만 두 발의안 모두 이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고립사의 정의에 있어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정한 시간’이란 며칠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고립사 통계를 작성할 때 3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통상 시신이 부패하는 시점이 3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고립생을 살았고 혼자 임종을 맞이했다면 이는 곧 고립사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발의안 모두 3년 또는 5년마다 고립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립사를 정의하기 위한 발견시점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법으로 어떻게 실태조사를 실시할지 의문이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위 법률안을 제외한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처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안들은 주로 장사시설 업체의 영업이나 위치와 관련한 개정안들이고, 위 법률안은 유일하게 연고가 없는 경우 그 사후 처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할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아쉬운 점이 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연고 사망자가 자신의 장례와 관련하여 유언을 한 경우 재산 관리를 처리해 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유언의 취지에 따라 장례가 진행될 여지가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현재처럼 시신을 포기한 경우 무빈소 직장(直葬)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노인복지법 개정안 관련

김해영의원안 및 김영우의원안 모두 기존의 노인복지법보다 독거노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을 강구하는 방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방향이지만, 고립사 발생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김영우의

원안의 경우도 여전히 고립사 발생 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장례를 대행할 권한을 준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고립사한 독거노인과 밀접한 생활관계를 영위했던 사람들을 장례 대행과 관련해 배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나. 향후 입법 등 개선 방향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

가) 가족 중심 장례 문화의 변화

전통적인 대가족 체제에서는 장사가 가족의 문제였고, 장례 역시 그러한 가족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로 들어와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고, 최근에는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망인의 장례를 주도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장례를 더 이상 단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되었다.

나) 장례의 공공성 반영 필요성

현재 시점에 이르러 장례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과제가 되었다. 과도한 허례허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만, 평온하게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사망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관점에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장례 절차는 개인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의 삶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재인식과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바에 대한 각성의 계기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장례를 단순히 하나의 요식행위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망한 망인이나, 망인의 가족을 비롯해 망인과의 인연을 유지해왔던 지인들에게는 반드시 망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까지도 돌아보는 더욱 성숙한 개인과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립사 또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한 개인이 이러한 죽음에 이르게 된 개인의 삶의 과정에 대한 공동체 전체의 반성과 그 대책 마련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영리적 부분이 만연해 있는 현 장례절차와 대비되는 공공성 반영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연고자 규정 개정 필요성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는 ‘연고자’를 정의하면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망인과의 관계에 권리·의무 행사의 순서를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망인이 동법에 규정된 법적인 관계가 단절되

있었거나, 그러한 법적 관계 외에 실질적으로 더욱 밀접한 생활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있는 경우 예외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이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선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서와 무관하게 연고자 범위에 있는 누구든 시신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둘째, 망인과 법적인 연고자 관계가 아니라도,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망인과의 법적 관계에서 선순위인 자가 연고자로서의 권리를 포기 또는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한다면 실질적 생활관계가 있었던 삶의 동반자가 장례를 희망한다면 관할 관청의 책임 하에 장례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즉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질적 사후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 사후자기결정권은 현재의 법률로도 보장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아목에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또한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담당 공무원이 해석에 의해 혈연의 연고자는 아니지만,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로 인정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공무원이나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책임 문제가 있기에 재량권을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현장에서도 아목의 규정을 근거로 연고자가 아닌 자가 장례를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밖에 없다. 결국, 실질적으로 사후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량의 여지가 있는 규정보다는 실질적 생활관계가 관할 관청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들면서 일반규정을 넣어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 범죄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친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살해했다거나 또는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게 따지면 가족끼리의 살해 후 장례도 똑같은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법 상황에서도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런 것을 악용하는 상황 자체는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한 경우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장례를 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이다. 즉 범죄 악용 부분은 장례의 권한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2) 향후 포괄적 고립사와 무연사 대응 법률 제정의 필요성

가) 고립사와 무연사 상황 변화

고립사와 무연사가 더 이상 예전처럼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중년층 및 노년층을 아우르는 현상이 되어 가면서, 우리 사회의 고립사와 무연사에 대한 대응에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즉, 고립사와 무연사가 비혼, 미혼 및 평균 수명의 증가로 늘어가는 1인가구의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장례를 공동체 전체의 것으로, 고립사와 무연사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나) 개별 법령 개정의 한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제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만 고립사와 무연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고립사와 무연사를 규율하는 규범 역시 연령·지역·성별 등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도 일정 부분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그 목적부터 다른 망인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포괄적 고립사와 무연사 대응 법령은 기존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이 다루지 못하는 고립사와 무연사에 대한 내용까지 다뤄야 할 것이다.

다) 사후자기결정권의 반영

고립사와 무연사에 대응하는 포괄적 대응 법률 제정 시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삶을 마감한 망인도 존엄한 인간이었고, 그러한 존엄성에서 유래한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는 최근 시행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제1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과 이들이 빈소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포괄적 고립사와 무연사의 대응 법률에는 만일 당사자의 장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만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경우는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의 수집 및 검토까지 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망인의 사후자기결정권이 최소한으로나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인간은 누구나 늙고 죽음을 맞이한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인생을 살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세상에 올 때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세상을 떠날 때도 모두 같은 모습으로 떠나는 건 아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땅으로부터 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에 따른 죽음이 아닌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자의 죽음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인수해 삶의 마지막을 동행할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혈연의 가족이 그 역할을 해왔지만, 점점 가족에게만 의지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마저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고독생을 살다 고립사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장례할 가족이 없어 무연고사망자로 시신수습과 화장만 진행되기도 한다.

사회복지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슬로건이 있다.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제창한 사회보장의 본연의 자세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즉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전 생애 중에 예측 가능한 사고는 국가가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책임을 진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연고사망자 등의 죽음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써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 비교와 한국의 법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장사 행정을 비교하였다. 우선 한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지급한다. 그 대상은 부양의무자 또는 연고자의 재산 상태 등과 무관하며,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달리 「생활보호법」에 따른 상제부조는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경우 자산조사를 받은 후 지원되며,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가 장례집행자가 될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 여부와 상관없이 상제부조를 지원한다. 또한 친구 등도 장례집행자가 될 수도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연고자를 규정하고 있어 연고자가 시신을 위임할 경우 무연고사망자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이 그 시신을 운구해 화장하고 봉안까지 해야 한다. 즉 연고자가 아닌 자가 장례에 개입할 수 없다. 이처럼 한국의 장사행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한편 일본의 장사행정은 「묘

지 및 매장 등에 관한 법률」,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 그리고 「생활보호법」의 세 가지 법을 적용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무연고사망자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실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관련 사례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1년에 2,000명이 넘는 무연고사망자들이 평균 수명보다 20년이나 일찍 이른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무연고사망자는 64세 이하의 중장년층의 비율이 65세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3배 이상이나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무연고사망자의 문제점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죽음 이후 발생하는 장례 등 사후사무다. 특히 사망 후 시신 위임과정, 연고자의 범위와 그 순위의 적용이 문제였으며, 연고자가 아닌 그리고 사후자기결정권 관련 문제와 그 사례까지 살펴봤다. 이를 통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혈연의 가족이 아니면 망자에 대한 어떤 사후사무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등 사후사무를 가족이 아닌 삶의 동반자였던 혹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누군가가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사실혼 관계로 20년을 살았던 남편이 본인 품에서 돌아가신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무연고사망자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시장 상인들도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았던 이웃 상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장례를 치르고 싶었지만, 한국 사회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 약속을 했던 남자친구에게 본인의 장례를 부탁한다고 유언장을 남겼지만 역시 혈연의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무연고사망자로 보내야 했다. 셋째, 일본 정부와 일본의 민간 NPO 법인의 사후자기결정권 관련 사례를 연구하였다. 일본의 생활보호법은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가 장례를 하고자 할 경우 망자의 생활보호법 피부양자 지위와 상관없이 상제부조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친구든지 또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지인지 상관없다. 최소한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기관 즉, 지방자치단체가 그 실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일본에는 주로 독거·무의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신원보증 및 일상생활 지원, 장례와 같은 사후사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100여 개정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NPO 법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나고야에 위치한 NPO 법인 ‘인연의 모임(きずなの会)’ 과 동경에 위치한 LISS시스템(LISS는 Living · Support · Service의 약자) 사례를 통해 그들의 활동내용과 운영방식에 대해 살펴봤다. 이러한 NPO 활동을 통해 혈연관계가 사라진 사회에서 인연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 생의 마지막을 의지할 ‘인연’을 만들고 있었다.

넷째, 한국의 사후자기결정권 관련 법제를 검토하였다. 우선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사후자기결정권을 검토한 결과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인정해오던 자연인의 헌법상 자기 결정권을 자신의 사후 설계에 대한 자기 결정권까지 확대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후자기결정권의 현행 법제는 크게 ‘당자가의 의사가

표시된 경우'와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검토하였다. 첫째,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는 ①유언, ②신탁제도, ③사후사무위임계약, ④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계약의 네 가지 법제도를 활용하여 사후자기결정권을 보장받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법 발의안, 공영장례 관련 법령과 조례를 검토한 결과 사후자기결정권 보장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향후 입법 및 정책 방향으로 장례의 공공성과 연고자 규정의 개정, 포괄적 고립사 및 무연고사에 대응 법률의 제정과 정책 수립을 제안하였다.

2. 정책제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자의 문제는 한국의 20여 년 전인 1997년 한국경제 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단시일 내에 몇 가지 법률과 정책으로 쉽게 변화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의 흐름을 만들고 사회문화를 조성하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변화의 흐름은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부 정책도 중요하며 아울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문화의 변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혹은 과거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차원이 아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서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는 돈과 남성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양극화 해소, 공동체 회복 등 비자발적 고독생(孤獨生)을 양산하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자 문제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와 얽혀 있다. 그래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 한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다음의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체계적인 무연고사망자 통계 관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연고사망자 통계관리가 중요하다. 현재 해마다 무연고사망자 통계자료가 발표되고는 있지만, 발표 자료는 무연고사망자가 규모와 지역별·성별·연령별 통계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는 무연고사망자의 추이와 대표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분석되어야 한다. 무연고사망자의 대부분은 고독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무연고사망자의 생전 주거지 통계자료가 중요하다.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고시원·쪽방·여관 등 비주거

지에서 생활했던 홀리스가 약 45%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무연고사망자 예방대책으로 이들의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주거지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 무연고사망자 예방대책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자 통계를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는 주거지·거리 등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주거지·거리 등 돌아가신 분들의 사인과 현장 상황 등을 자료화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러한 업무매뉴얼을 통해 경찰의 초기 수사단계에서 고립사에 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고립사 통계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에서 고립사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무연고사망자와 고립사에 대한 통계가 구축되었을 때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마련되면서 종합적인 정책과 대책이 수립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종합적 분석을 위해 무연고사망자의 심리부검 등의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해마다 증가하는 무연고사망자와 고립사, 이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통계관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해낼 때 구체적인 예방과 대책이 가능하다.

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전담 지원부서 신설

실제 고립사 및 무연고사망자 중 중·장년의 위험성은 통계 수치로도 잘 나타난다. 무연고사망자 통계에서 50대와 60대 초반의 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서울시 고립사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연구보고서’(송인주, 2016년)에 따르면, 고립사 사례의 연령별 비율은 45~64살까지의 중·장년이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5살 이상 노인(16.6%)의 4배에 가깝다. 연령대로는 50대가 35.8%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8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체 1인가구 중 중·장년(45~64살) 비율도 2010년 57만 가구에서 2016년 95만 가구로, 6년 사이 66%나 늘어났다. 직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연령대인 데다 가족 간의 불화나 이혼·사별 등으로 가족은 물론 사회관계망까지 끊긴 채 질병까지 겹칠 경우, 그대로 홀로 죽음을 맞을 가능성이 다른 어떤 1인 가구보다 현저히 높다(서울앤. 2018). 2018년 서울시는 중장년 남성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지원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수조사와 대책을 꾸준히 실행할 전담 지원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다. 사회적 고립예방 대책 마련

영국에서는 2018년 1월 17일 테레사 메이 총리의 발표를 통해서 고독 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을 신설했다. 영국 사회는 2017년 설립된 조콕스 외로움문제대책위원회(Jo Cox Loneliness Commission)

의 보고서를 주목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독은 개인적인 불행에서 사회적인 유행병(Epidemic)으로 확산되었다고 발표했다. 고독의 위기는 복지정책의 한계를 나타냈고 따라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외로움과 고립의 사회적 문제와 공공의 접근 방법’이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2018년 11월에 토론회를 진행했다. 경기복지재단도 최근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고립된 사람들은 보건·복지·정신·임대주택·학대상담·가족상담·금융상담·일자리안내·직업훈련·일상생활관리·도시환경개선(걸을 수 있는 환경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고립의 문제의 해법을 각 영역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고립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도시와 복지 서비스 기반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송인주, 2018).

라. 탈상품화된 공영장례 제도 마련

현재 많은 정책은 고립사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방도 중요하다. 하지만 예방 정책과 함께 현재 예비 고립사와 예비 무연고사망자라고 할 수 있는 홀리스, 홀몸어르신 등에게 공영장례를 제공하여 삶의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사후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다 빠른 방법일 수 있다. 즉, 당사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때 공공에서 최소한의 장례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삶의 마지막 불안을 제거하는 정책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은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시장 의존성을 얼마나 줄이느냐, 즉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 탈상품화란, 탈시장화라고도 한다. 즉,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소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을 통해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급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질에 격차가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복지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를 강화하고 집단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제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의 탈시장화와 탈상품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례도 복지서비스로 탈상품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으로서, 공공에서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제도가 필요하다. 여기서 공영장례란, 연고자가 없는 사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장례절차 없이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바로 가는 무빈소 직장(直葬) 방식이 아닌 최소한 가족과 지인 그리고 사회와 이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공공이 마련해서 최소한의 장례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장례는 죽은 사람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그 기본적 의미가 있다. 아울러 장례의 또 다른 의미는 다른 가족과 지인들이 돌아가신 망자와의 감정을 정리하고 이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함께 살아가며 사랑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던 희로애락

의 그 솔한 시간을 회상하며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화해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재정적 이유로 장례가 생략된다면 살아 있는 가족에게는 평생 풀지 못하는 숙제가 남게 된다. 결국 이것이 사회적 불안이 되고 사회적 비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권리적 차원에서 공공에서 최소한의 가족과 이별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마. 공영장례를 운영하는 공공의 컨트롤 타워 구축

탈상품화의 관점에서 공영장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영장례를 운영할 공공(公共)에서 직접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 독거노인문제가 심각해지자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복지관 및 노인지원기관을 통합해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는 민관협력의 협치가 중요시되고 있다. 장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에서 운영하는 장례상담부터 네트워크를 연결해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공영장례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현재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고독사 예방법」에서 규정한 고독사예방센터가 좋은 입법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바. 사회적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

죽음은 개인의 문제다. 하지만 무연고사망자는 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어차피 죽은 사람, 가족마저도 시신을 포기한 사람, 게다가 가족도 아닌 모르는 사람이라면 굳이 공영장례를 통해 장례를 할 필요가 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 죽음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신사회 위험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죽음은 사회적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다.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로 지향한다면 탈상품화의 관점에서 장례를 볼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권리적 관점에서 개인이 어떻게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지, 사후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보장할지 죽음에 대한 인식개선이 동반될 때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간디는 “사람들이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가 위대한 나라인지 (아니면 형편없는 나라인지), 그 국민의 도덕 수준이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죽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회가 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다” 즉, 죽은 사람을 존엄하게 잘 보내는 사회라면 살아 있는 사람의 존엄함을 잘 지켜줄 것이다.

사. ‘가족 대신 장례’와 ‘내 뜻대로 장례’를 위한 법률 제·개정

혈연과 제도를 넘어 동행의 관계 가기 위해서는 ‘가족 대신 장례’와 ‘내 뜻대로 장례’가 보장될 수 있는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당사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 혈연 중심의 가족에게만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고자 적용의 우선순위와 적용 범위가 개정되어야 한다. 연고자 범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삶의 동반자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사전에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유언, 신탁제도, 사후사무위임계약, 성년후견제도 중 임의후견계약 등 다양한 법률로서 사후사무를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후사무의 최종단계로 사망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민법의 개정도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연구의 함의 및 제한점

사후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최소한 공공에서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여 장례가 누군가 특권이 아닌 세상이 된다면 조금 더 평등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무연고사망자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를 향해가는 과정을 고려해 사회보장 및 탈상품화로서의 무연고사망자 정책을 제안했다.

현재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자를 주제로 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게다가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에 대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적 그리고 법·제도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혈연중심의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복지제도와 법·제도가 이제는 변화의 시점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혈연과 제도를 넘어 이제는 동행의 관계로 가기 위해 죽음 이후에 장례 등 사후사무를 사회적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직은 일부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자 또는 고립사위험자 정도의 문제로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점차 장례 등 사후사무와 관련된 사후자기결정권은 보다 보편적인 사회문제로 인식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무연고사망자의 문제와 사후자기결정권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의 시작되는 계기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독사와 무연고사망자 그리고 사후자기결정권에 대한 정보와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다소 부족하였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무연고사망자 등의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시도하였다. 향후에는 이에 대한 사회현상과 의미 분석을 위한 사회학적, 사회보장으로서의 사회복지학적 또한 사후자기결정권의 법률적 측면 등 다학제 간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

며, 이를 통해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연대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국가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고민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정원·이도정(2017), “무연고묘와 죽음권”, 『서울민속학』, 4: 7-51.
- 김영란(2006),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여성빈곤 그리고 탈빈곤정책”, 『한국사회학』, 40(2): 189-226.
- 김은호(2016),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대한변호사협회 2016년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자료집.
- 김재호(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장례방법과 장례비용 결정요인 분석”, 보건복지부.
- 김진선(2019), “무연고사망자 장례식의 실천과 의미: 서울시 NPO단체의 무연고 장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2012), “프랑스의 성년후견제도 - 장래보호위임계약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6권 1호, 한국가족법학회, 71-.
- 김현철(2015),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9권 제4호.
- 김혜화(2015), “한국의 무연사 시신 처리 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일본 무연사회와 비교하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대명 외(2014),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일본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인환(2015), “장애인권리협약과 의사결정지원의 제도화 모색”, 한국성년후견학회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2015. 12. 11.).
- 백남대·김미혜(2015), 『기록과 유물로 본 한국의 장례 역사와 문화』, 서울: 들샘.
- 백승흠(1997), “고령자의 자기결정권 - 영국의 지속적대리권수여법을 중심으로”, 『아태공법연구』, 제4집,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 보건복지부(2019), 『2019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제도 안내』.
- 보건복지부(2018), 『2018년도 장사업무 안내』
- 서울지방변호사회(2018),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 서정주·김예구(2017),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성유진·이수진·오소영(2017), 『남자 혼자 죽다』, 파주: 생각하는 힘.
- 송영민(2016),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유효성과 당사자의 해제권 - 일본에서의 논의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송인주(2016), 『서울시 고립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송인주(2018), 『고독사 위험 고립가구 특성과 지원모형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에스더 탄(Esther Tan)(2015), “(싱가폴)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특별지원신탁회사”, 『한국성년후견학회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 오호철(2013),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의 유형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시사점”, 『법학연구』, 제52집.
- 오호철(2013), “임의후견계약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 『법이론실무연구』 제1권 제2호.
- 윤태건(2016), “사회적 애도를 위한 메모리얼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 이범수(2017), “한국사회 변화와 상장의례의 계승 및 발전 방향-치유적 상장의례를 지향하며-”, 『“2020 화장률 90%와 나홀로 가구시대” 장례문화 진단과 발전방안』, 15-34.
- 이삼식 외(2003), “장사제도 및 행정체계 국제비교 분석”,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명(2016), “고독사에 대한 법적 고찰 - 노인 고독사에 대한 법사회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4호.
- 이상철·조준영(2017), “다차원적 사회적 고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정책』, 24(2), 61-86.
- 임영숙(2017), “喪禮의 收屍 및 斂襲에 관한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채웅(2009), “유언신탁 및 유언대용신탁의 연구”, 『인권과정의』, Vol. 397.
- 정원옥(2018), “무연고사에 대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책임: 공영장례 제도의 마련과 사회적 애도”,

『애도되지 못한 슬픔, ‘처리’되는 죽음-무연고사망과 공영장례, 그리고 사회적 애도의 의미』, 29-30.
정은주·정봉현(2017), “고립사와 사회적 배제에 관한 도시 공간적 접근”, 『도시행정학보』, 30(2): 131-152.
조성혜(2016), “독일의 성년후견인 제도와 자기결정권”,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제1호, 127-168.
황규성 등(2012),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표준교육교재』, 서울: 보건복지부.
황보상민(2008), “무연고 시체처리 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東京都保健福祉局(2017), 『生活報告運用事例集』, 東京: 東京都廳.
伊藤周平(2017), “일본 국내 생활보호법 및 생활빈곤 자립지원법의 현황과 과제”,
『2017台日韓 貧窮與債務國際研討會“翻轉貧困人生-談債務擴散效應及協助資源整合”』자료집.
中央法規出版(2010), 『生活保護手帳 2010年度版』.
Hugo Grotius(1925), 『De Jure Belli Ac Pacis Libri Tres, Vol. 1』, Claredon Press, Oxford.

인터넷 자료

강혜민(2018), “기원을 알 수 없는 삶이 시장 바닥을 유영하다” 최만, 50대 남성, 풍물시장에서 ‘잡화’를 팔았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840&thread=02r23>(2019.3.15.검색)>.
김선국(2018), “해마다 느는 고독사”...웰빙에 이은 웰다잉”
<<https://www.ajudaily.com/view/20181014094534913>(2018.10.20.검색)>
김혜미(2018), “살아생전 ‘부부’였던 당신과 나, 죽음으로 남이 되었다 - 법적 연구자’가 아니어서 무연고사망자가 되는 사람들”,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874&thread=02r23>(2019.3.15.검색)>.
송영규(2017), “서울 무연고주검 100건중 96건은 가족도 외면했다”, 『서울경제』(9월 13일: 9),
<<https://www.sedaily.com/NewsView/1OL0GIZ6NP>(2019.3.10.검색)>.
김도형(2018), “복지 사각지대의 중·장년 독거남, 노인 1인가구보다 취약”
<<http://www.seouland.com/arti/PRINT/3500.html>(2018.11.10.검색)>
안지나·공희정(2018), “연간 2000명 ‘나홀로 죽음’... 고독사 해법은 공동체 회복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08974>(2018.11.13.검색)>
이진경(2019), “[단독]가족해체 시대 민낯...무연고사망자 급증”,
『세계일보』(3월 22일: 1), <<http://www.segye.com/newsView/20190321575273>(2019.3.22.검색)>.
이택현(2018), “지난해 고독사 2000명 넘어섰다...65세 이상이 40%”, 『국민일보』(2월 19일: 12),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03120>(2019.3.10.검색)>.
장철수(1995), “장례(葬禮)”,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8409>(2018.10.20.검색)>
차근호(2017), “기초생활수급자 숨진 지 4개월 만에...부산서 또 고독사”,
<<https://www.yna.co.kr/view/AKR20170627015200051>(2018. 10.14.검색)>.
高見晴彦(2011), 葬祭扶助制度解説, 『キリスト教会葬儀研究所』
<<http://ccfi.jp/contents/lib/aid.html#pagetop>(2018.10.20.검색)>

부 록

1. 일본 장사(葬事) 관련 법률

1.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에 관한 법(行旅病人及行旅死亡人取扱法)⁷⁰⁾

메이지 32년(1899년) 법률 제93호

제7조 행려 사망인이 있는 경우 그 소재지의 시정촌장은 그 상황, 양상, 유류물건, 그 외 본인의 인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후, 그 사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행하여야 한다.

2. 묘지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는 본조의 매장 또는 화장을 거부할 수 없다.

2.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墓地, 埋葬等に関する法律)⁷¹⁾

쇼와23년(1948년) 법률 제48호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률은,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관리 및 매장 등이, 국민의 종교적 감정에 적합하고, 또한 공중위생 그 외 공공의 복지의 관점에서, 지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법률에서 ‘매장’은, 사체(임신 4개월 이상의 사태[死胎]를 포함함. 이하 같음)을 땅 속에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화장’은 사체를 매장하기 위해, 이를 태우는 것을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개장(改葬)’은 매장한 사체를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매장하고, 또는 수장(収蔵)한 분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당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4. 이 법률에서 ‘분묘’는 사체를 매장하고 또는 납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이 법률에서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기 위해, 묘지로서 도도부현지사(시 또는 특별구에 있어서는 시장 또는 구장.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은 구역을 말한다.

6. 이 법률에서 ‘납골당’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납골을 수장하기 위해, 납골당으로서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7. 이 법률에서 ‘화장장’은 화장을 하기 위해, 화장장으로서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2장 매장, 화장 및 개장

제3조 매장 또는 화장은, 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라면,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 단 임신 7개월을 채우지 못한 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조 매장 또는 납골의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 해서는 안 된다.

70) 출처: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82058000&dataType=0&pageNo=1

71) 출처: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AC0000000048&openerCode=1#1

2 화장은, 화장장 이외의 시설에서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시정촌장(특별구의 구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허가는, 매장 및 화장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사망 또는 사산 신고서를 수리, 사망의 보고 또는 사산의 통지를 받고 또는 선박의 선장으로 부터 사망 또는 사산에 관한 항해일지 등본의 송부를 받은 시정촌장이, 개장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사체 또는 납골이 실제 존재하는 땅의 시정촌장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 <삭제>

제8조 시정촌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해, 매장, 개장 또는 화장의 허가를 내는 경우에는, 매장허가증, 개장허가증 또는 화장허가증을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9조 사체의 매장 또는 화장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또는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지의 시정촌장이, 이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매장 또는 화장을 하는 경우, 그 비용에 관해서는, 행령병인및행려사망인취급법(메이지32년 법률 제93호)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3장 묘지, 납골당 및 화장장

제10조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도부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마련된 묘지의 구역 또는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또는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을 폐지하려고 하는 사람도, 위와 같이 한다.

제11조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시행하는 묘지 또는 화장장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해서는 도시계획법(쇼와43년 법률 제100호)제59조의 인가 또는 승인을 가지고, 전조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한다.

제12조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경영자는, 관리자를 두고, 관리자의 본적, 주소 및 성명을,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 소재지의 시정촌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3조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경영자는, 매장(埋葬), 매장(埋藏), 수장(収藏) 또는 화장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묘지의 관리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장허가증, 개장허가증 또는 화장허가증을 수리한 이후가 아니라면, 매장 또는 납골의 매장(埋藏)을 해서는 안 된다.

2. 납골당의 관리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허가증 또는 개장허가증을 수리한 이후가 아니라면, 납골을 수장해서는 안 된다.

3. 화장장의 관리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허가증 또는 개장허가증을 수리한 이후가 아니라면, 화장을 행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는, 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도면, 장부 또는 서류 등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관리자는, 묘지사용자, 납골수장위탁자,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 그밖에 사자와 관계가 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전항에서 규정하는 도면, 장부 또는 서류 등의 열람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묘지 또는 납골당의 관리자는, 매장허가증, 화장허가증 또는 개장허가증을 수리한 날부터, 5개월간 이를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화장장의 관리자가 화장을 행하는 경우, 화장허가증에, 성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입하고,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제17조 묘지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는, 매월 5일까지, 그 전월중의 매장 또는 화장의 현황을, 묘지 또는 화장장소재지의 시정촌장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8조 도도부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직원에게, 화장장에 출입하여 그 시설,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해당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해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고, 또한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9조 도도부현지사는, 공중위생 그 외 공공의 복지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묘지, 납골당 또는 화장장 시설의 정비개선, 또는 그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령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20조 좌측의 각호의 一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二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명령에 위반한 자

제21조 좌측의 각호의 一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1천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또는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二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해당직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22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앞의 두 개 조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3. 생활보호법(生活保護法)⁷²⁾

쇼와25년(1950년) 법률 제144호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제2장 보호의 원칙**(제7조~제10조),

제3장 보호의 종류 및 범위(제11조~제18조), **제4장 보호의 기관 및 시설**(제19조~제29조의2),

72) 출처: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5AC0000000144

제5장 보호의 방법(제30조~제37조의2), 제6장 보호시설(제38조~제48조),
제7장 의료기관, 개호기관 및 조산기관(제49조~제55조의3),
제8장 노동자립급부금(제55조의4, 제55조의5), 제9장 피보호자취로지원사업(제55조의6),
제10장 피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제56조~제63조), 제11장 불복신청(제64조~제69조),
제12장 비용(제70조~제80조), 제13장 잡칙(제81조~제86조)

제10조 보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一 생활부조
- 二 교육부조
- 三 주택부조
- 四 의료부조
- 五 개호부조
- 六 출산부조
- 七 생업부조
- 八 상제부조

(상제부조)

제18조 상제부조(葬祭扶助)는 곤궁에 의해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좌측에 제시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행한다.

- 一 검안
- 二 사체의 운반
- 三 화장 또는 매장(埋葬)
- 四 납골, 그 외의 상제를 위해 필요한 것

2 좌측에 제시한 경우에 있어, 그 상제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전항 각 호의 상제부조를 행할 수 있다.

- 一 피보호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 사람의 상제를 행하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二 사망자에 대해 그 상제를 행하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 유류된 금품으로 상제를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제부조의 방법)

제37조 상제부조는 금전급부에 의해 행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이에 의하지 못할 경우,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그 외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급부에 의해 행할 수 있다.

2. 상제부조를 위한 보호금품은, 상제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유류금품의 처분)

제76조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제부조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 보호의 실시기관은, 사자의 유류 금전 및 유가증권을 보호비로 충당하고, 여전히 부족한 경우에는 유류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이에 충당할 수 있다.

2.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은 전항의 비용에 대해, 그 유류 물품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선취특권에 대해 우선권을 가진다.

4. 건강보호법

다이쇼10년 법률 제70호⁷³⁾

(보험금부의 종류)

제52조 피보험자에 관한 이 법률에 의한 보험금부는 다음과 같다.

- 一 의료의 급부 및 입원 시 식사요양비, 입원생활요양비, 보험외비용요양비, 방문간호요양비 및 이송비의 지급
- 二 상병수당금의 지급
- 三 매장료(埋葬料)의 지급
- 四 출산육아일시금의 지급
- 五 출산수당금의 지급
- 六 가족요양비, 가족방문간호요양비 및 가족이송비의 지급
- 七 가족매장료의 지급
- 八 가족출산육아일시금의 지급
- 九 고액요양비 및 고액개호합산요양비의 지급

(매장료)

제100조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는, 그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로서, 매장을 하는 것에 대해, 매장료로서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매장료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매장을 하는 자에 대해, 동항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매장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자격상실후의 사망에 관한 급부)

제105조 전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금부를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금부를 받던 자가 그 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외 피보험자였던 자가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로 매장을 하는 경우는, 그 피보험자의 마지막 보험자로부터 매장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73) 출처: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211AC0000000070&openerCode=1

2. 제100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매장료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및 동항의 매장료의 금액에 대해 준용한다.

(가족매장료)

제113조 피보험자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매장료로서, 피보험자에 대해 제100조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사후사무 위임계약 관련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재판연월일 1992년 9월 22일 **재판소명** 최고재제3소법정 **재판구분** 판결

사건번호 ㄱ4(오) 67호

사건명 예탁금반환등청구, 동 부과사건

재판결과 파기환송 **문헌번호** 1992WLJPCA09220010

판결주문

판결문 중, 상고인 패소의 부분을 파기환송한다.

이전 항목의 부분과 관련, 본건을 타카마츠[지명]⁷⁴⁾ 고등재판소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 대리인 니시오 후미타카[西尾文秀]의 상고이유에 대해서

원심은 (일) 丙山良子[인명]는, 입원치료 중이었던 1982년 3월 초순 경, 본인[원문, 同人] 명의의 예탁금 통장, 인감 및 예탁금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을 상고인에게 교부하여, 丙山の 입원중의 제비용을 병원에 지급하는 것, 본인 사후 장례를 포함한 법회의 시행 및 그 비용의 지급, 본인 입원 중에 도움을 받은 가정부 丁野テル子 및 친구 戊山ミカ子에 적당한 사례금을 지급할 것을 의뢰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상고인은, 丙山가 같은 달 28일 사망한 후, 의뢰의 취지에 의거, 병원 관련비, 장례 관련비 및 49재 법회까지 시행한 비용 및 丁野·戊山에 대해 각각 사례금을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丙山가 상고인에 대해 오른쪽 금액 등을 교부한 것은 전술한 각 비용 등의 지불을 위임 받았기 때문이며, 위임자인 丙山の 사망에 의해 위

74) []: 번역자 추가

탁계약은 종료되었으며(민법653조), 상고인은 丙山로부터 맡아두고 있던 예탁금통장 및 인감 이외에, 상고인이 지불한 전술한 각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丙山の 상속재산을 모두 상속한 피상고인에게 반환해야 하며, 또한 전술한 각 비용 중 상고인의 戌山에 대한 사례금의 지불은 피상고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상고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되며, 상고인은 피상고인에 대해 같은 금액의 손해 배상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되었다.

그러나 자기의 사후 사무를 포함한 법률행위 등의 위임계약이 丙山와 상고인 간에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인정은, 당연히 위임자 丙山の 사망에 의해 계약을 종료시키지 않는 내용의 합의를 포함하는 취지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민법 653조의 법의(法意)에 대한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원판결이 丙山の 사후의 사무처리의 위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이 계약이 민법 653조의 규정에 의해 丙山の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종료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같은 조의 해석적용을 잘못된 것으로, 나아가서는 이유에 맞지 않는 위법이 있다고 귀착되어야 하며, 이 위법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침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을 말하는 논지에는 이유가 있어, 원판결 중, 상고인 패소의 부분은 파기환송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대해, 당사자 간 성립한 계약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 조항의 법의(法意) 하에서 위임자의 사망에 의해 당연히 종료될 수 없는 임의계약으로, 또는 지론의 부담부증여 계약임을 포함하여, 다시 한 번 그 법적 성질에 대해 더욱 심리하기 위해, 본 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한다. 이에, 민소법 407조 1항에 따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판결주문대로 판결한다.

(재판장 재판관 [인명, 생략], 재판관 [인명, 생략])

《당사자》<일부가명>

상고인 甲野花子

우소송대리인변호사 西尾文秀

피상고인 乙川シズ

I. 본고의 목적

일본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위임자와 수임자 간의 위임계약에 의해, 위임자가 사망한 후에도 계약의 효력을 존속시켜, 수임자에 의해 위임자의 생전 의사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후사무위임계약’이라는 계약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즉 유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위임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에 의해, 고인의 생전 의사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법상의 논점과 관련, 대심원[원문은 大審院; 최고재판소의 구칭]이 1930년[원문, 昭和5年]에 판결을 내렸으나(II ☆03판례 참조), 지금까지 거의 주목되지 않고, 최고재판소가 1992년[원문, 平成4年]에 사후사무위임계약을 인정하는 판결(II ☆10판례 참조)을 내린 이후부터, 일거에 이론적[원문, 學說] 주목을 받게 되었다. 민법에 위임계약은 위임자 또는 수임자의 사망에 따라 종료되는 것으로 하는 653조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위임계약은 위임자, 또는 수임자의 사망에 따라 종료된다고 민법 65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반하는 의사표시·특약이 있는 위임계약은 유효하지만, 바꿔 말하면, 민법 653조가 임의규정인지 아닌지가 가장 문제가 되어 왔다. 두 번째로, 임의규정이라고 할지라도 위임계약은 계약당사자에 의한 무이유해제권(無理由解除権)이 민법 651조⁷⁶⁾에 의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임자의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위임자의 상속인과 원래 위임계약의 위임자 및 수임자 간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으며, 이 문제는 유언제도에 놓여 있는 상속법리와의 충돌도 의미한다.

필자는 지금까지 약 3편의 사후사무위임계약에 직접 관계된 줄고와 사인증여(死因贈与)를 직접 대상으로 한 1편의 줄고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사후사무위임이라는 민법상의 논점은 최근 성년후견제도에서의 성년후견인의 직무범위의 문제로서 폭넓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지금까지 사후사무위임계약에

75) 타니구치 사토시(谷口聡, 2017, 産業研究(高崎経済大学地域科学研究所紀要) 第52巻第2号)

76) 第六百五十一条 委任は、各当事者がいつでもその解除をすることができる。

2当事者の一方が相手方に不利な時期に委任の解除をしたときは、その当事者の一方は、相手方の損害を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やむを得ない事由があった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출처-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129AC0000000089_20180401_429AC0000000044&openerCode=1#2371)

제651조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그것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 중 한 쪽이 상대방에 불리한 시기에 위임을 해제한 때에는, 그 당사자의 한 쪽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2017년 기준).

관한 ‘판례 및 재판례’의 초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중심적인 검토 대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론적[원문, 學說] 검토를 행한 줄고 등을 재검토하면 판례·재판례의 수도 적지 않은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판례·재판례의 지금까지의 경위를[판례·재판례가 나오게 된 지금까지의 경위를] 정리한 이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 점에서, 사후위임계약에 관한 판례법리가, 현시점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검토항목은 상술한 관점에 기반한 것이다. 즉 ① 민법 653조가 위임법규로 해석되고 있는지, ② 위임자의 상속인에 의한 위임계약의 무이유해제권의 행사가 인정되고 있는지, ③ 상속법리와 사후사무위임계약의 관계에 대해 판례는 어떠한 입장에 서 있는지, 이 세 가지 관점을 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판례는 인용자료와의 관계에서 사실관계 등이 불명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초기의 판례에 관해서는 검토항목을 간략화 하여 검토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II. 구체적 판례와 재판례의 검토

이하에서는 13건의 판례 및 재판례를 사실개요, 판결요지, 약간의 검토 3개 항목으로 나누고 검토를 행한다.

☆1판례~9판례 <생략>

☆10판례

최고재판소 1992년 9월 22일 판결(金法금법1358호55항)

[사실개요]

소외(訴外)[소송관련자 이외의 사람] A는, 입원치료중, 본인(同人)명의의 예탁금통장, 인감 및 오른쪽 예탁금통장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을 상고인(Y)에게 교부하여, A의 입원 중 제비용의 병원 납부, 본인의 사후 장례를 포함한 법회의 시행과 그 비용의 지불, 본인 입원 중 도움을 받은 가정부 B 및 친구 C에 대해 적당한 사례금의 지불을 요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Y는 A가 사망한 이후, [오른쪽] 의뢰의 취지에 따라, 병원관련비, 장례관련비 및 49재 법회까지 시행한 비용 및 B와 C에 대해 각각 사례금을 지불했다. A의 상속인 X는, Y의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판결요지]

「자기의 사후의 사무를 포함한 법률 행위 등의 위임계약이 A와 상고인 간 성립한다는 원심의 인정은, 당연히, 위임자A의 사망에 의해서도 [오른쪽] 계약을 종료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포함하는 취지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민법 653조의 법리가 관계되는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 것을 바탕으로 A와 상고인 간 계약의 법정성질에 대해 다시 심리하기 위해 본 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한다.

[약간의 검토]

◇본판결이 최근에 사후사무위임계약의 문제가 논의되는 계기가 된 사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며 다수의 해석과 비평이 이루어져 연구되었다.

◇민법 653조의 규정이 임의법칙에 있다는 대심원[원문은 大審院, 최고재판소의 구칭] 이래의 입장을 유지한 최고재판결이다.

◇상속인에 의한 본 건 위임계약의 무이유해제 등은 문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이와 같은 사후사무의임계약이 인정되는 것과, 상속법리와의 조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

☆11판례~13판례 <생략>

III. 종합적 검토와 결어

상기 II 장의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바탕으로 본고의 결론으로서 종합적인 시점에서 사후사무위임계약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본고에서 제시한 사후사무위임 관련 판례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초기의 것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후사무위임의 전형사례와는 거리가 있다고 보이는 사례로 ☆08판례와 ☆09판례와 같이 특수성을 가지며, 개별 사례적 특색이 강하다. 둘째, 위임계약규정인 민법 651조의 문제가 아닌, 민법 111조 1항 1호의 대리권 소멸 규정이 임의법규인가에 대한 논점과 관계있는 사례이다. 셋째, 현재 전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법리에 의해 고인의 사후에 생전의 의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례이다.

초기의 것으로서, ☆01판례와 같이 백지위임장의 유통에 관한 문제이거나, 도장의 수호역할을 후손에 이르기까지 영구히 위임한다고 한 계약의 유효성 문제와 같이, 분명히, 위임계약종료와의 관련성은 있지만, 현

재의 사후사무위임계약사례에 대한 시사를 얻기가 어려운 사례가 있다. 또한 ☆08판례는, 외국 국적의 여아의 감호권자가 외국법에 따라 외국재판소에 의해 선임되었다고 하는 특수한 사례, ☆09판례는 복대리인[復代理人]에 관한 사례로, 일반적으로, 복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이라는 점에서, 대리인 사망이라는 사례라고 할지라도, 사후사무위임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사례였다.

대리인 사망 후에 있어서도 대리권수권자가 대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05판결, ☆06판결은 이를 긍정했다. 이와 같은 위임의 의사가 당사자에게 있었던 경우이다. 즉, 민법 111조 1항 1호는, 임의규정이라고 해석한 판례가 된다. 이에 대해 ☆07판결은, 대리인의 사망에 의해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른쪽 규정은 강행법규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판결의 결론은, 결국, 상속인 측이 주장한 권리를 부정한 것이다.

현재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형적인 사후사무위임에 관한 사례는 ☆03판례, ☆04판례, ☆10판례, ☆11판례, ☆12판례, ☆13판례를 들 수 있다. 그 중 대심원과 최고재판소라는 상급심의 판결은, ☆03판례와 ☆10판례뿐이다. 그 외 하급심의 재판례의 수를 보아도,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아직, 사후사무위임계약에 관한 판례법리가 확립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지금의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03판례와 ☆10판례 모두,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제시한 3개의 논점 중, 민법 653조가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는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위임자의 상속인에 의한 위임계약의 무이유해제권 행사의 가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사후사무위임계약을 인정하는 것이 상속법리와 충돌을 유발하는 것으로부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하지만, ☆12판례에서는, 상속인(제사주재자)에 의한 무이유해제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의사였다고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판결이 내려졌으며, 나아가 ☆13판례에서는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성립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수임자의 선관주의의무[원문, 善管注意義務,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해 상속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정한 사례이다. 이와 같은 하급심을 고찰하면, 서서히 판례법리로서의 사후사무위임계약의 확립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판례법리로서 사후사무위임계약이 확립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술상 큰 주목을 받은 ☆10판례(최판1992년)가 등장한 경위를 다시 한 번 제시하고자 한다. ☆03판례는 대심원 1930년[원문, 昭和5年]의 판결이다. ☆10판례가 등장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10판례는 뜻밖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사이를 메운 것은 최고재판결을 중심으로 한 민법 111조 1항 1호의 규정이 임의법규라고 해석한 판례법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판례의 축적을 바탕으로 ☆10판례가 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최고재판소는 아직까지 위임자의 상속인에 의한 해제권행사라는 논점에 관해서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처음부터 상속법리와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판례의 동향에 크게 주목해야 할 것이다.

3. 생전계약 관련 일본 후생노동성 보고서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공적개호보험 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방식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보고서⁷⁷⁾

제1장 본 조사연구사업의 배경

1. 사회보장제도의 형태와 변천

- (1) 수명의 증가와 고령자 인구의 증가
- (2) 사회복지 기초구조 개혁
- (3)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의 구축
- (4) 고령자 대상 민간 서비스 시장의 성장

고령자의 증가와 자책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으로 인하여, 고령자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등장하여,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고령자의 생활에서의 니즈가 다양화됨에 따라, 배식과 같이 단가가 적은 지속적인 서비스에서부터 주거 서비스 등(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등)과 같이 고액 및 장기적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2. 계약 지원 기능의 필요성

- (1) 독거노인, 가족이 근거리에 없는 고령자의 증가 예측
- (2) 일상생활 자립지원사업(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 성년후견제도
- (3) 사업자 측의 요청

77) 2017년도[平成29年度] 후생노동성 노인보건건강증진 등 사업으로 2018년 3월, 주식회사 일본종합연구소가 보고서를 작성함. 이 보고서의 목차를 중심으로 생전계약과 관련된 일부 내용만 번역함.

3. 계약에 기반 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초적 고찰

- (1)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임파워먼트
- (2)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업자의 책무

4.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의 파탄사례와 소비자위원회의 건의

(1)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이란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은, 주로 독거·무의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신원보증 및 일상생활지원, 사후사무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단 이와 같은 서비스에 대한 공적 정의는 없으며, 일본 라이프 협회의 파단을 계기로 이루어진 소비자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이 용어가 사용·정의되었다.

(2) 일본 라이프 협회의 파탄

공익재단법인 일본 라이프 협회는,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자 중에서 규모가 큰 사업자였으나,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계약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예탁해 두었던 금액을 사업에 유용하였고 나아가 경영 파탄으로 인해 파산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고령자가 제3자(의료기관·각종시설)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그 고령자의 신원보증인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서포트를 하는 사업의 존재가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3) 소비자위원회의 건의

소비자위원회의 조사 결과,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한 법령도 존재하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나아가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의 제공자 및 제공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밝혀졌다. 한편 사업자별로 서비스의 호칭·내용·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일정액을 예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이 판명되어, 앞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이 염려된다. 조사를 바탕으로 소비자위원회는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내각부(소비자청)에 대해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에 관한 소비자 문제에 대한 건의’를 행하여, 실태파악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제2장 본 조사연구사업의 목적과 방법

1. 본 조사연구사업의 목적

<생략>

2. 본 조사연구사업의 범위와 방법

(1) 본 조사연구사업의 범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91건이다. 선행연구[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에 관한 소비자 문제에 대한 조사보고, 2017년(平成29年) 1월, 소비자위원회]에서 나타난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자는 약 몇 십~100건 정도 존재하고 있음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사업자 수는 현황과 크게 괴리된 수는 아니라고 보인다.

(2) 본 조사연구사업의 실태파악 방법

<생략>

(3) 검토위원회 개최

<생략>

제3장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 사업자 실태파악

1.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자의 개관

(1) 조사개요

<생략>

2.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자의 서비스 사례(인터뷰 조사)

(1) 인터뷰 조사대상 사업자 일람

이름	사업개시 연도	제공규모	
		지역	이용자수
① 일반 사단법인 시니어 종합 서포트 센터	2014	도쿄, 나고야, 오사카 주변	중규모
② 일반 사단법인 라이프 엔딩 스테이지 아사히	2014	쿄토, 오사카, 코베	소규모
③ NPO법인 인연의 모임 [키즈나노카이] (본부, 도쿄사무소)	2001	아이치, 기후, 도쿄, 카나가와, 사이타마, 시즈오카, 사가	대규모
④ 일반 사단법인 전국 실버 라이프 보증협회	2011	후쿠시마현, 도쿄도, 삿포로시, 센다이시, 하시마군사카마츠정, 오사카시, 오카야마시, 히로시마시, 기타큐슈시	중규모

이름	사업개시 연도	제공규모	
		지역	이용자수
⑤ NPO 리스시스템	1993	전국	대규모
⑥ 일반 사단법인 꿈네트 별새	2017	쿠마모토 시 주변	소규모
⑦ NPO법인 화목한 도움의 모임	2014	킨키지역	소규모
⑧ 일반 사단법인 믿음의 모임	2009	이바라키현, 치바현 일부	중규모
⑨ NPO법인 일본보증서 포트 센터	2011	전국(단 방문 가능한 지역은 칸사이)	중규모
⑩ 일반 사단법인 교토 고령자 지원 센터	2016	교토부, 사가현 및 오사카 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소규모

* 대규모: 이용자 1000명 이상, 중규모: 이용자 100명 이상, 소규모: 이용자 100명 이하

(2) 각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사례

① 일반 사단법인 시니어 종합 서포트 센터

<생략>

② 일반 사단법인 라이프 엔딩 스테이지 아사히

<생략>

③ NPO법인 인연의 모임[키즈나노카이] (본부, 도쿄사무소)

a) 사업개시 경위

- NPO법인 인연의 모임(인연의 모임)의 전신은 묘비석, 장의의 생전 계약을 생업으로 하는 판매회사였다. 우연히 이용자 중 보증인이 없어 시영 케어하우스[軽費老人ホーム]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그 사람의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2001년, 신원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 사업 시작 당시에는, 신원보증인은 시설이용료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었다. 다른 단체와 유사하게, 20만 엔 정도를 예탁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 구급차 이송은 입소한 시설에서 담당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신원보증인이 긴급하게 와 줄 것을 요청

받았다. 결국 초기에는 자원봉사를 통해 긴급사태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방법으로는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생활지원을 유료화하게 되었다.

- 신원보증 대상이 되었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다른]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모르는 일이라고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후사무도 서비스화 하게 되었다.
- 신원보증인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이었다. 변호사는 야간에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년후견인과 인연의 모임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에도 긴급 생활지원과 사후사무가 특히 요구되는 부분이었다.

b) 연대법인

- 명성[메이쥬]법률사무소는 사업개시 때부터 변호사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예약금 관리를 담당하는 등 밀접한 연계를 하고 있다.

c) 제공하는 서비스 패키지

- 1)신원보증지원,2)생활지원,3)장례 송영 지원의 세트가 주된 서비스이다.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긴급 시 이외에 자택 등에 방문하는 경우는 없다. 인연의 모임의 세미나 때,자택방문 의향에 대해 참가자 조사를 하였는데 희망자가 적었다. 신원보증인으로서의 긴급대응이 생활지원의 최우선임을 계약자들도 이해하고 있다.
- 하지만 한편으로 평상시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문제로 느끼고 있다.

d) 서비스 제공 지역

- 아이치, 기후, 도쿄, 카나가와, 시즈오카, 사가 지역에 제공하고 있다. 전국 14개 사업소가 있으며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시정촌[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역 확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인 계약이므로,채산성이 낮다고 해서 간단히 철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e) 주요 이용자, 이용자 확보 채널

- 독거노인이 대부분이다. 40%는 생활곤궁자로, 연금 수급액이 월 10-16만엔[우리나라로 100-160만원]인 사람이 많다. 월1만 엔, 월5천 엔 정도씩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패키지 요금은 190만 엔인데, 이

를 생존해 있는 동안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전체 회원은 약 10,000명이나, 현재 생존해 있는 회원은 약 4,300명이다. 아이치현[현지 조사에서 방문한 본부가 있는 현]의 회원은 약 2,000명, 도쿄 사무소의 회원은 약 200명이다. 이용자 확보 채널은 시설, 병원, 지자체로부터의 소개 및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소개가 많다. 특히 대학병원으로부터의 소개가 많은데, 대학 병원에서는 저소득 고령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소득 이용자가 많다.
- 사업개시 초기에는 저소득(근공)자도 포함하여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비율이 증가하면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균형을 생각하며 신중히 계약해 나갈 계획이다.

f) 이용자와의 관계구축, 유지

- 의료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어도 본인의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 신청 등 준비를 해두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무료로 코디네이터를 맡아 준다.
- 신원보증을 생애에 걸쳐 한다는 것이 '인연의 모임'만이 할 수 있는 특징이다.
- 이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스태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스태프가 높은 윤리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정이 발견된 경우 그 즉시 해고하고 있다.
- 한편 가족을 대신하여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엄밀하게 매뉴얼화 하고 있지는 않다.

g) 예탁금 관리

- 예탁금은 법률사무소가 관리한다.
- 예탁금 외에, 통장과 인감 관리를 법률사무소에 의뢰한 계약자의 생활지원 및 입원에 따른 비용은, 법률사무소에 청구서를 보내서 지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히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인연의 모임에서 지불하고 이후에 법률사무소에 청구하고 있다.

h) 해약대응

- 4년 미만 안에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를 바탕으로 입회금의 일부를 반환하고 있다.
- 계약 때 설명을 해 주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약 때 반환금에 관한 클레임이 있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수수료만 청구하고 종료시키는 경우도 있다.
- 긴급 시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방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해약하고 있다.

- 한 번 해약하더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i) 자(自)법인에의 기부

- 상속인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상속인에게 재산을 돌려주지만, 상속인으로부터 일부 기부를 받는 경우도 있다. 기부를 기초 자금으로 하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 계약자가 분할로 납부하고 있음에도 대응할 수 있다.

j) 과제

- 사업개시 시에는 적자가 계속되었으나, 최근 2, 3년 사이에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니다.
- 장래에 대비하여, 판단능력이 있는 자립하여 생활하는 고령자가 입회하고 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립사(孤立死)하는 경우도 있다. 민간 경비회사의 서비스 등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이용하는 회원은 적다.
- 의료 동의와 관련,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의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의사 등에게 알리고 있으나, 큰 수술을 하는 경우처럼 판단 자체가 어려운 상황도 있다. 다리의 절단(괴사하여 고열이 발생하여 본인은 의식 불명, 친척 등은 원거리 거주)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아, 몇 번이나 의사의 설명을 통해 결국 본인의 생명을 우선하여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 신원보증인이 사망신고서 제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제도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k) 특징

-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월1만 엔 정도). 이를 위해 곤궁자(생활보호수급자 포함)가 계약한 경우가 많다.

④ 일반 사단법인 전국 실버 라이프 보증협회

<생략>

⑤ NPO 리스시스템

NPO 리스시스템에서는 NPO법인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NPO로 통일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 표기 방법으로 ‘NPO리스시스템’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a) 사업개시 경위(연대 및 모체법인의 특성 등)

- 1998년에, 종래의 묘지 승계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던 고령자 등의 요망에 대응하기 위해 ‘모야이의 비’라는 일본 최초의 합장 영세공양[永代供養, 절에 미리 돈을 내두고, 매년 기일(忌日)이나 彼岸의 불사(佛事) 같은 때에 올리게 하는 공양]묘를 만들고 ‘모야이의 모임’을 조직하였다.
- 모야이의 모임 회원으로부터, 가족이 없는 자신들이 혼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게 될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93년 10월 주식회사 Liss시스템을 설립하고, 사후의 사무위임계약이 유효하다는 최고재판소 판례와 유언에 의한 부담부유증, 제사주재자의 사전지정 등을 바탕으로, 사후사무위임계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 이후 살아있는 동안 고령자 주택입소에 관한 보증인, 입원과 수술 때의 가족으로서의 역할 등, 생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게 되어, 혼자서 살아가고 혼자서 사망하게 되는 고령자의 의사와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즉 공정증서에 의한 계약에 따라 ‘계약가족’으로서의 업무를 확립하게 된다.
- 2000년 민법개정으로 임의후견제도가 시작됨에 따라, 발 빠르게 해당제도를 계약에 포함시켰고, 비영리로 활동해 나가던 중 NPO법인이라는 제도적 틀이 생김으로써 2000년 11월 NPO법인으로 업태변경신청을 하여, 2001년에 NPO법인격의 단체가 되었다.

<표> NPO리스시스템 연표

	내용
1988년	공덕원 도쿄별원, 도쿄도 토시마구 스가모에 절의 낙성식 개최
1989년	지연 혈연 국적 종교 불문의 회원제 합장묘 ‘모야이의 비’ 건립
1990년	모야이의 비를 운영하는 ‘모야이의 회’ 설립
1993년	장의 등 사후의 일, 생전에 어려움을 겪는 입원, 시설입소의 신원보증에 대한 니즈를 발굴하여 ‘Liss(리스) 시스템’(Living, Support, Service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을 개시
2000년	리스시스템의 ‘생전계약’이라는 체제의 취지에 동의하여 함께하던 공증인, 법률가 등 전문가, 학자 등 다수가 발기인 및 임원이 되어 NPO일본생전계약등결제기구를 설립
2001년	NPO법인격으로 설립인정을 받음

b) 연대법인

- ‘모야이의 회’라는 종교를 불문하고, 묘를 관리하는 모임이 원래 있었다.
- NPO일본생전계약등결제기구를 설립, 체크 기관으로 하였다. 성년후견사무의 이행, 나아가 일상생활에 대

한 지원업무 등, 수탁기관이 행하는 일이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시, 보증한다. 이 기관은 제3자기관으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사가 중복되는 일은 일체 없다.

c) 제공하는 서비스 패키지

- 생전사무위임계약(보증, 재산관리, 일상생활·요양간호), 임의후견계약(판단능력 저하시의 재산관리 및 신상의 감독과 보호), 사후사무위임계약(시신 인수, 매장 등)을 실시하고 있다.
- 5만 엔으로 체결할 수 있는 생전계약 기본계약만으로는 책임을 갖는 신원보증 등은 수탁할 수 없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2018년平成30年 여름에 폐지할 예정에 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5만 엔으로 할 수 있는 초기 등록제도를 만들고, 이후 상담회나 개별면담에 의한 세세한 기획서 등을 작성한 상태에서 공정증서계약을 체결한다. 최근에는 의료기관 등에서 신원보증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생겨, 긴급히 계약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세한 사후사무 등의 기획서 작성을 계약 체결 후에 하도록 하는 종합보증패키지를 마련해 두고 있다.
-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공증인이 계약자의 계약능력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후견인인 변호사로부터, 후견인이 할 수 없는 업무의 위탁을 받는 경우도 있다.
- 생활지원과 관련, 실제로 행위를 보조하기 보다는 계약자가 적절한 요양개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기를 바랐으나, 현재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d)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 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토리현, 시마네현 이외의 전체 도도부현에 계약자가 있다.

e) 주요 이용자, 이용자 확보 경로

- 계약자는 약 3450명. 1인 또는 부부만이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10년 이상 계약하고 있는 사람이 43%에 이른다.
- 나이가 젊을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핵가족화 때문에 아닌, 세대가 I형(부모 중 1명, 자녀1명)인 경우도 있다. T형(양친과 외동)의 경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해 신탁계약을 할 수 있으나, 자신의 장례를 치러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니즈가 있다.
-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가족이 있어도 부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고령자고 있다.

f) 이용자와의 관계구축, 유지

- 계약 전 설명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진행하고 있다.
- 현재 5만 엔을 지불하면 긴급대응이 가능(단, 공정증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신원보증에 관한 대응은 할 수 없다)하도록 카드를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 방식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다. NPO리시스템은 단순한 생활지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증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통해 처음으로 ‘계약가족’으로서 가족 대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매년 안부확인을 하고 있다. 건강한 동안에는 집에 방문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인기가 있는 접점은 신년회, 꽃놀이 등으로, 건강한 때 참가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g) 예탁금 관리

- NPO 일본생전계약등결제기구가 관리하고 있다.
- 생활지원에서 사용한 분에 대한 잔고는 줄고 있다. 예금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탁금을 넣어두는 이용자가 많아서 금액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프리페이드 카드[prepaid card] 방식 등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는 이런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렵다.

h) 해약에 대한 대응

- 본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신청이 있으면 해약수속을 안내한다. 단 공증인인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증사무소에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 신청금 등은 반환하지 않으나, 미사용 예탁금은 전액 반환한다.
- 해약을 위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해약신청이 있는 경우도 많으나, 본인의 해약 의사만 확인된다면 특별히 법인으로서 해약이나 예탁금의 반환을 주저하는 일은 일절 없다.

i) 자(自)법인에의 기부

-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 부유층만을 고객 타겟으로 하지 않고, 누구에게든 찾아오는 노후나 사후의 지원을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호부조를 이념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지원 비용은 매우 저렴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만큼, 사후에도 재산이 남는다면 기부하고 싶다는 신청이 있어, 이와 같은 기부 신청에 대해 감사히 받고 있으며,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비용과 조직의 안정적 지속이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유산을 전부 기부하게 한다는 소문이 있는 듯하나, 사후사무에 관한 비용을 일부 유산으로 제공하기 위한 유언을 작성 받은 것이 왜곡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전액 기부하는 사람도 있으나 다수는 아니다.

j) 과제

- 생활지원에 대한 니즈가 급증하고 있어 직원이 부족하다. 원래는 일상생활 지원보다 긴급한 때에 지원하는 코디네이터로서 역할하고자 한다. 준비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 신원보증인이 무엇을 하는지 일반적으로 불명료한 부분이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책무의 연대보증 보다는 의사표시의 대리, 생전 및 사후의 신원보증 인수로, 신원의 인수가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대체적으로 금전의 지불, 인폼드 컨센드, 세컨드 오피니언[병을 진단받고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받는 것] 등이 있다.

k) 특징

- 원래는 사후에 이르기까지의 자기결정의 존중을 의도하여, 이를 희망하는 의용자의 요망에 따라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왔으나, 현재는 일상생활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높아져 인원체제, 수익모델에 무리가 오고 있다. 실제 개호 등 지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종래 목표로 해온 ‘계약가족’으로서 적절한 요양개호의 절차를 행하는 본래 모습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전국 방방곡곡에 ‘계약가족’의 체제를 보급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⑥ 일반 사단법인 꿈네트 별세

<생략>

⑦ NPO법인 화목한 도움의 모임

<생략>

⑧ 일반 사단법인 믿음의 모임

<생략>

⑨ NPO법인 일본보증서포트 센터

<생략>

⑩ 일반 사단법인 교토 고통자 지원 센터

<생략>

3. 지자체, 사회복지협회의 서비스 사례(인터뷰 조사)

- (1) 인터뷰 조사대상 지자체 일람
- (2) 각 지자체에 의한 신원보증 등에 관한 검토내용 및 서비스 제공 사례

4.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자의 서비스 내용 분포(설문조사, 전화조사)

- (1) 응답률
- (2) 사업자 규모 및 재산성
- (3) 현재 제공하고 있는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의 내용
- (4)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프로세스
- (5) 계약체결 후의 프로세스
- (6) 서비스 제공체제
- (7) 계약자 특징

5.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 사업자 실태 파악 요약 정리

- (1)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 사업자의 증가와 사회적 배경
- (2) 사업자 설립에서의 특징
- (3) 사업자 규모의 특징
- (4) 제공 서비스의 특징
- (5) 예탁금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 관리방법
- (6) 이용자 소개처의 특징

제4장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 이용자의 실태파악

1. 실태파악 및 분석 방법

- (1) 조사개요

2. 소비자생활 상담 데이터 분석

- (1) 분석 개요
- (2) 분석 방법
- (3) 소비자 상담 분포
- (4) 크로스 집계

3. 지자체 등 인터뷰 조사

- (1) 인터뷰 조사 대상 지자체 등 일람

4.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 이용자 실태파악 요약 정리

- (1) 상담 데이터에서 나타난 서비스 계약에서 이용까지의 문제점
- (2)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 이용 동기 실태(이는 (1)의 전제임)
- (3) 밀려드는 상담의 특징(가상 사례)

제5장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의 실태파악에 관한 요약, 정리

1.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의 범위

- (1) 제공 서비스의 내용

<생략>

- (2) 사업주체 확대의 가능성

<생략>

2.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에 관한 사용자 및 이용자 실태

- (1)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의 제공사업자의 현황

①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의 규모

a) 사업자 및 이용자의 확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 의해, 사업으로서 제공되는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태파악을 진행한 결과, 현재 사업으로서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를 제공하는 사업자 91개 사업자를 특정하였다.

이들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수 분포를 보면, 약 45%가 이용자 수 99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였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률 수속사업 등과 같이 전문직인 개인이 서포트를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다수는 소규모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용자 수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이번 조사 대상인 91개 사업자 중 계약자 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35개 사업자의 계약자수(대략 산출)를 합산하면 대략 10,000명 규모였다. 이를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이용자의 약 62%가 상위 2개 회사의 계약자이고 약 80%가 상위 6개 사업자의 계약자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소규모 사업자가 많은 만큼, 일부 대규모(대규모라고 해도 실제로는 중견규모) 사업자에 이용자가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b) 사업자의 활동범위

서비스 제공 범위와 관련, 전국 규모로 사업을 전개하는 곳은 4개 사업자가 있었으나, 계약자가 100명이 안 되는 사업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외 많은 사업자는 비교적 좁은 영업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률 수속 사(士)업[‘사’자가 들어가는 업무] 등 전문직인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본 조사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에 의한 서비스의 주변부에 위치함을 고려해 보면,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의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자에 의한 지역 밀착적 활동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사업자 설립 연도

사업자가 설립되어 서비스를 시작한 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이번 실태조사에서 대상으로 한 사업자 중 설립 및 서비스 개시연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업자에 한정하였을 때, 개호보험제도의 실시 전(2000년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가 1개, 2000년 이후 개시한 사업자가 24개 있었다.

그 중 2010년 이후 설립한 사업자가 21개로, 최근에서야 업계에 진입한 사업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후발진입 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진입 패턴을 보인다.

첫째, 장례 송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가, 의료기관이나 이용자로부터 생전의 신원보증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진입하는 패턴이 있다.

둘째, 사후사무 및 위임계약업무를 제공하던 법률 수속 사업(사법서사, 행정서사 등)의 전문직이, 이용자의 희망에 의해 진입하는 패턴이 있다.

셋째, 법률 수속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하던 사업자가, 신원보증인이라는 문제에 주목

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입한 패턴이 있다. 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장례 송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진입하는 경우, 커버하는 이용자 범위가 넓고, 또한 사후에도 회원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률 수속 사업의 경우, 특정 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층을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사업자의 경우, 지역포괄지원센터 등과 밀접한 연계를 통해,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포함하여 역할을 담당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③ 비용

서비스 이용 비용과 관련, 단가뿐 아니라, 사업자에 따라 납부 방법에 차이가 있다.

서비스별 과금 방법을 살펴보면, 신원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시불로 납부 또는 이에 더하여 월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생활지원(긴급 대응, 동석 또는 각종 수속 지원 등) 등, 계약자의 유고에 따른 유사 시 대응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요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사업자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요금체계와는 달리, 평상시 회비의 형태로 월별로 납부하도록 하는 사업자도 있다.

④ 타 관계주체와의 연계, 협동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에서, 이용자 확보를 위해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자의 다수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발굴한다고 할지라도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으며,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니즈의 파악을 위해 사업자의 자원이 충분히 분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지자체(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 친척이 없는 고령자를 염두에 두고,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사업자가 지자체나 성년후견인 등과 같은 공식적 서비스와 연계하여, 보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이, 타 관계주체와의 연계, 협동은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2)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에 관한 이용자의 인식

PIO-NET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소비자가 불안이나 트러블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문의하는 행위

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행동을 하기 직전 이용자나 소비자의 불안과 관련해서는 데이터를 통해 알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 이용자 상

<생략>

b) 이용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이유

<생략>

c)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 이용과 관련된 불안이나 문제

PIO-NET 데이터에 의하면, 사업자의 신뢰성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를 알려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의 상담이 많고,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해약 및 환급에 관한 응답이 15%정도, 사업자의 대응에 불신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11%정도 있었다. 소비자 피해가 명확한 경우 보다는, 사업이용에 관한 불안감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작은 일이 계기가 되어 불신감을 갖거나 해약 의사를 쉽게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포트 사업의 이용과 관련된 문제

이상에 제시한 사업자 및 이용자의 실태를 통해, 현 시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과제를 이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독거노인의 경우, 주로 신원보증인 또는 사후사무에 관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신원보증 등 고령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나, 사업자의 신뢰성 및 가격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이용을 주저하거나 이용 후에도 불안감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② 의료기관에서 신원보증인을 요구함에 따라 이용을 검토하는 경우 등 판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③ 소규모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업자를 신뢰해도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고민한다. 또한 애초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사업자 자체에 대한 정보가 적거나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④ 본인 이외의 가족이나 지원자가 계약 내용을 알기 어렵고, 본인이 긴급한 상황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평상시에도 가족 등에게 본인이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

4. 문제점에 대한 대책(가안)

<생략>

제6장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점

<생략>

4. 「가족 대신 장례」, 「내 뜻대로 장례」를 위한 일본탐방 좌담회

2018년 8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열흘 동안 나눔과나눔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의 지원으로 법률, 사회복지 등 관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가족 대신 장례, 내 뜻대로 장례’를 위한 연수팀을 조직하여 일본의 주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가족 대신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 NPO법인을 방문하여 그들의 역사와 활동이 가능했던 노하우 등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연수팀은 2019년 1월 20일 화우공익재단에서 좌담회를 열어 일본연수의 경험과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참석자

함보현 변호사 /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 **홍유진** 변호사 /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박지숙 서울대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 **박은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정현경**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객원교수

박진옥 나눔과나눔 상임이사

함보현 사후 자기결정권을 위한 가족 대신 장례, 내 뜻대로 장례를 주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0일 동일한 주제 입법화를 위한 일본 탐방 좌담회를 하게 됐습니다. 각자 간략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옥 나눔과나눔의 박진옥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나눔과나눔이 사단법인이 되면서 직함이 사무국장에서 상임이사가 되었습니다. 나눔과나눔에서는 무연고사망자, 기초생활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장례를 지원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사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와 관련해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대담은 작년 8월에 다녀왔던 일본연수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현경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석, 박사학위를 하면서 시민교육,

복지 관련 활동을 했고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강의를 했는데, 같은 학교에서 동일한 강의를 하시는 박진옥 상임이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나눔과나눔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교육 시간강사분들과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영역을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박진옥 상임이사님이 일본에 가고 싶다고 하시고 제가 일본에 대해 조금 알고 있어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양희철 나눔과나눔, 그리고 고독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국제엠네스티에서 알고 지내던 상임이사님이 몇 년 전 나눔과나눔 활동을 하신다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회원이 되었습니다. 나눔과나눔이 종로구장례지원단 활동을 할 때 법인 자문 역할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활동에 참여하다가 나눔과나눔 사무실을 방문해 상임이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눔과나눔은 장례만이 아니라 장례 문화와 죽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 기획도 하고,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와 관련해서 제안을 해주셨고, 함께 사전 준비를 하고 일본에 같이 가게 됐습니다.

박지숙 정현경 교수님께서 일본에 가게 되었는데 함께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셔서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가게 된 가마가사키는 2011년에 연구를 위해 갔던 곳이었습니다. 전공이 교육, 복지 쪽이라 죽음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노숙인들의 경우에도 살아가는 데 교육 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연구의 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2011년 연구 이후로 2~3회 다녀온 경력이 바탕이 되어 같이 가게 되었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함보현 화우공익재단이 홈리스 지원 사업으로 쪽방촌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법률 상담 외에도 경제적 지원 등의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빈곤의 문제에 접근하다 보니 결국 죽음과 장례에까지 그 관심이 닿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죽음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삶의 대한 성적표이니 개인에 대한 책임을 국가로 돌려선 안 된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은 전환되어야 할 부분이었고,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임이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분야에서 앞서 있는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홍유진 화우공익재단 홍유진 변호사입니다. 빈곤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제대로 활동해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공익재단이 인연을 맺고 있는 나눔과나눔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재단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쪽방촌에 가서 홈리스분들 법률 상담을 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작년 여름에 일본으로 연구하러 간다고 할 때 같이 갔으면 좋았겠지만 아

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훌륭한 결과물을 받기만 해서 죄송스런 입장이라는 하나, 결과물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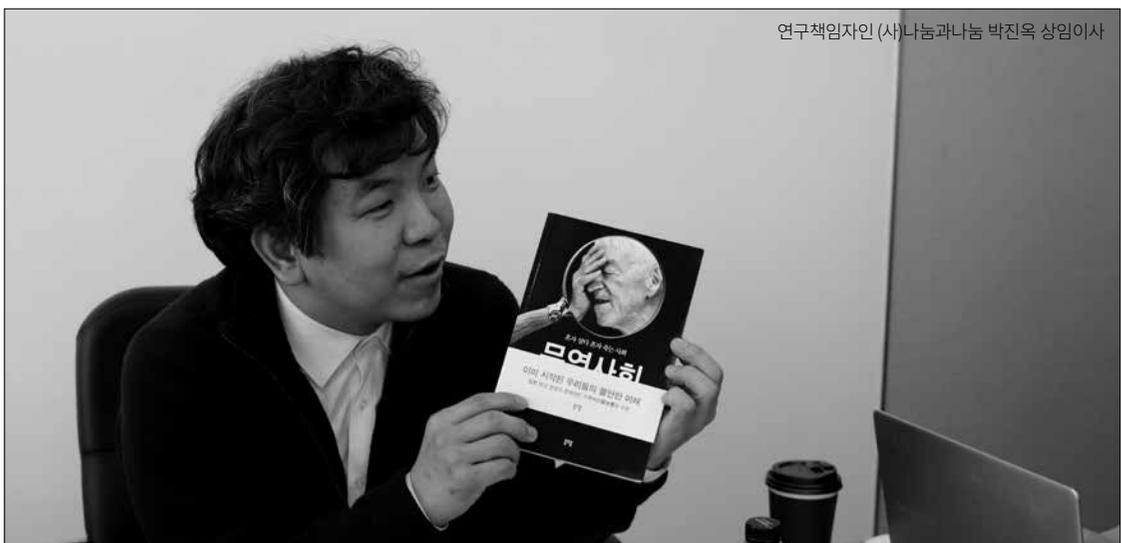
박은순 저는 주로 수원에서 활동하면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사회복지 쪽에서도 일했고, 최근에는 시민 운동을 해왔습니다. 전직이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직책이었습니다. 첫 업무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홀로 사시는 분을 만나는 일이었는데, 그분들 중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장례를 동에서 치른 경험도 있었습니다. 정 교수님을 통해 박 이사님과 인연이 되어서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연수를 통해 놀란 건 우리의 사회복지제도가 일본의 것을 많이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법, 제도 등 실제 용어, 단어도 그대로 차용해서 쓴 것을 곳곳에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 오히려 일본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생활보호법을 쓰고 있고 우리는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변화된 사회복지 분야가 있어 일본의 상황과 더불어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연수는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 무연고 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함보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특히 박진옥 이사는 국내에서 고독사(고립사), 공영장례 문제에 대해 개념조차 확실하지 않을 때부터 활동하면서 제약을 많이 느꼈을 텐데,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무연사회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나왔고 이사님이 우리나라에 많이 전파를 하셨는데, 일본 탐방이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는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회를 맡은 화우공익재단 함보현 변호사

박진옥 <무연사회>라는 책이 2009년 일본에서 출판되었고 한국에는 2012년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일본 사회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놀란 건 157페이지 “가족 대신 NPO”라는 소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만난 NPO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읽을 당시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족 대신 장례를 꼭 봐야겠다는 생각을 어렵פות이 하게 되었죠. 마침 작년에 화우공익재단에서 관련한 연구 제안을 해주셨는데, 곧바로 ‘가족 대신 장례’ 타이틀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가족 대신 장례’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느낀 문제를 더욱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바꾸는 데 집중했고, ‘사후 자기결정권’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형태(타이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화우공익재단에서 라운드테이블 자리가 있었습니다. 나눔과나눔 활동을 소개했고 이후 MOU를 체결하면서 일본 방문의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8월 그 꿈은 현실이 되었고 일본 연수를 통해 막연했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기동민 의원실과 의견을 나누고 입법화의 첫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간의 과정들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현장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 시작은 <무연사회>였고, 화우가 현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현장에서의 문제 제기가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함보현 일본 탐방이라 하면 일본 사회복지 전문가이신 정 교수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각각의 방문지 선정은 어떠한 포인트로 계획을 세우셨을지가 궁금합니다.

정현경 전공이 한국에서는 사회복지였고 일본에서는 사회교육이었습니다. NHK 다큐멘터리 등을 흥미 있게 봐서 <무연사회> 책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활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박 이사님을 뵙고 무연고 장례 지원하는 단체를 하신다고 해서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무연사회라는 단어는 떠올랐는데 한국에서 이런 걸 하나 싶었죠. 1990년대 전부터 일본은 그와 관련해서 이미 여러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한국은 민주화운동이 끝나면서 신사회운동, 단체활동 등이 생겨났는데 경제발전 등 흐름 속에서 15~20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유사한 활동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연사회>를 보고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활동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저로서는 연수를 가겠다는 생각은 못 했어요.



일본 전문가로 일본연수를 총괄한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정현경 교수

일본 연수 제안을 받고, 박 이사님이 저한테 책에 나오는 ‘나고야의 한 단체(나중에야 알게 된 ‘기즈노카이’)’를 알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뿐 아니라 같은 영역의 NPO가 얼마나 있는지 찾아봤더니 실제로 꽤 많았어요. 2000년 이후 법률이 바뀌면서 한 15년 지났는데 꽤 많은 단체가 생겨났어요. 단순히 NPO 설립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일본 사회가 어떤 역사를 갖고, 사회복지는 어떻게 돼 있고, NPO는 무엇인지 등 그들의 복지나 교육에 관련한 기초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함께 3~4회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일본에 관한 기본적인 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꼭 가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찾았죠. 바로 ‘장례 현장에서의 답답함’이었어요. 한국의 법적 한계, 현장의 한계를 보면서 일본 법률가와의 만남을 기획했습니다. 이후 박 이사님이 가장 큰 NPO인 ‘리스시스템’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리스’와 ‘기즈노카이’ 방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방문지는 오사카의 가장 빈민 지역이었던 가마가사키(홀리스 지역) 지역이었어요. 굳이 봐야 하느냐를 두고 이견이 있었죠. 연수의 가장 큰 목적은 ‘가족 대신 장례’를 치르고 가족 중심의 사회복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일본이 경험했는지도 중요했어요. 하지만 빈곤 문제를 현재의 문제점과 지나온 역사 등을 두루 살펴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연구해보고 싶은 지역이기도 해서 방문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어서 나고야 기즈노카이, 도쿄의 리스, 그리고 법률사무소도 갔고요. 도쿄도청에 가서 자료도 직접 봤어요. 공무원이면서 사회복지직 정년퇴직하신 분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박진옥 처음에는 이곳을 꼭 가야 하나 싶은 곳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무연고사망자의 50% 정도가 비공식 주거지(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리 등)에서 돌아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사회에 대한 이해 없이 단체만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에는 ‘사후 자기결정권’이라는 두루뭉술한 타이틀이었는데, ‘가족 대신 장례’와 ‘내 뜻대로 장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건 현장의 모습을 본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함보현 고독사나 공영장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이 많지 않은데 양희철 변호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시대가 변화하면서 고독의 문제, 절연의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후 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 문제의식을 갖게 된 계기 등 이번 탐방에서 확인하고 싶고 의도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양희철 사후 자기결정권 개념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법조인, 관련 법 조문,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는데, 2015년 11월 26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흥미로운 결정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결정권이라 하면 대부분 성적 자기결정권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시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사후 자기결정권에 대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둘 다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으로 헌법 10조에 나오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그 근거를 둡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기에 대해,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사후 자기결정권도 그렇게 보면 같습니다. 다만 사람이 죽고 나서도 그것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현재의 결정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자기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사후에 그러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이 살아 있는 다른 사람의 자기결정권”으로, 즉 “결정을 내릴 때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부분은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수천 년간 형식을 갖춘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보통 재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유언으로서 사후 자기결정권이라

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단어를 명시적으로 썼을 뿐이지 사실은 인류가 오래도록 간직해온 보편적 개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어 관련 부분(법철학)을 찾아보니,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사회 전체의 공익과 선을 위해 결정하는 것이고 그 사회가 그 사람에게 최대의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이성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공익과 선에 반하는 판단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익과 선에 맞게 판단하도록 지원해줘야 하고, 그 사람이 그러한 판단을 하지 못한 채로 사망했다면 생전에 그가 정상적이고 이성적이었을 때 어떻게 판단했을 것인가를 사회가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무연사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친인척과 연락이 안 되지만 사회적인 관계라는 것은 혈연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족보다 훨씬 친한 친구 또는 이웃이 있을 수 있는데, 사망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장례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그 사람이 살아 있었을 때 유언을 하거나 자기결정을 해서 자신의 장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했다면 친구, 지인 등이 친인척 대신 장례를 치르도록 결정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친인척만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병원 등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만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고가 확실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한 예외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예전처럼 가족이 장례를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자녀가 나가 있는 경우

도 있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물론 못 올 때가 있기도 하고요.)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존중, 사후 자기결정에 대한 묵시적 의사 존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연수를 준비하면서 일본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위임에 의한 것인지, 이 사람들은 사망하면 그냥 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많은 부분을 명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수를 가서야 알게 되는 것이었죠. 일본은 기존의 위임 계약에 대해 빠른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은 해석론이 우리보다 더 치밀하고, 다양한 사례가 연구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생전에 위임 계약을 해서 자신의 사후에 대한 장례 등을 이야기했다면, 일반적으로는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 계약이 종료되지만 이 경우는 사후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족 대신 장례’가 가능했던 것은 원칙적인 ‘위임’에 의한 것이고,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바탕으로 ‘내 뜻대로 장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도 (장사법과) 비슷한 시스템이 있어서 20~30년 전에 먼저 이런 상황이 왔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더 많이 고민했었고, 제도 자체가 명확히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장례가 가능하도록 변화를 줬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다 보니 유럽에서는 훨씬 전부터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1980년대 말부터 했고 프랑스, 독일도 1990년대를 거치면서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마 일본도 그런 사례를 참고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것이고요. 법제도가 바뀌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욱 다른 의원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관련 법제도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장사법상에 ‘실제 시신을 관리 보관하는 사람’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을 바꿔서 가족 대신 장례가 허용되어 혈연관계가 아닌 누군가에게 시신을 내줬을 때 범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주장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것에 대해서 법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희철 ‘실제 시신을 관리 보관하는 사람’으로 의료기관은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지인도 아닙니다. ‘실제로 시신을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았던 지인, 이웃일 것이고 돌아가신 분도 의료기관의 의사나 원장보다는 지인들이 장례를 치러주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규정이 없으면 책임 문제가 있기에 재량권을 발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타’로 뺏을 경우 실무 지침을 명확

히 해서 그 부분은 다 허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 지침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드는데, 공무원들 역시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자기 마음대로 지침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실무 지침을 만들어야 하지만 그건 기타에 관한 부분을 국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의원 입법, 행정 입법, 시행령, 시행 규칙, 행정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법은 그대로인데 실무적으로 지침을 하거나 당사자가 공무원 재량으로 하라고 하면 책임질 상황을 겪고 싶지 않을 겁니다.

범죄 위험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친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살해했다거나 해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가족끼리의 살해 후 장례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 법 상황에서도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것을 악용하는 상황 자체는 수사 단계에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이지, 장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으로 두는 건 지나친 우려라고 봅니다. 범죄 악용 부분은 장례의 권한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박은순 미혼모에게 복지를 지원하면 미혼모가 늘어난다? 무연고 장례를 잘해놓으면 무연고 사망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와 같은 논리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100만 건 중 1~2건 때문에 아주 큰 철학적 의미를 가지는 사회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박진옥 서울시에서 30년 정도 장사 업무를 한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일하던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일본 오사카 등처럼 재량권으로 이웃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양희철 시간이 갈수록 공무원 재량이 늘어나면 이 재량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모든 사례에 유사한 기준으로 하면 좋은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만을 갖는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함보현 박은순 부회장께서 공직에 오래 계셨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번 주제는 죽음이나 장례의 문제입니다. 부회장님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고독사 문제나 혈연 중심에서 벗어나는 등의 사회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과 경험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순 유럽에서도 1990년대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법제도화했다고 했는데, 그게 산업화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사카엔 만국박람회 이후 공장들이 세워졌고, 산업화가 과정에서 도산되다보니 홀리스가 늘어났죠.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한국 사회의 가족 문화, 즉 혈연 중심의 가족 문화가 끝난 건 많은 이들이 공
공연하게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에게 물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에 계세요?’, ‘시골에 있어요’,
‘가족이야, 아니야?’, ‘아니예요’, ‘강아지는 가족이에요?’, ‘네’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기고 있
어요. 혈연에 대한 의무감이 가족 공동체를 더 해치는 게 아닌가 생각하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도 부양의무자 문제가 그거예요. 다신 얼굴 보지 말자는 이야기. 국가가 혈연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
는 거죠.

그런 법제도는 사회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 실제 일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제대로 대처
하지 못하고 있어요. 법으로서의 규격화된 전형적인 모형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장례죠. 무연고
자, 기초수급자는 형편이 안 되는 분과 가족이 아예 없는 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아예 없는 경우는
동네에서 이장, 통장 등이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에 교회 분들이랑 같이 해서 1박2일 장례를 한 경우
가 있었습니다.

장례에 대해서도 차별이 느껴져요. 도쿄 ‘리스시스템’에 한 특징은 고급화로, 즉 우리의 경우에는 00
상조같이 요양원 중에서도 비싼 곳은 상조회사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민간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사실은 자기결정권이 뭔지도 모르며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것을 법으로 정한다
면 다른 분들도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지는 장애인 복지로 시작해요. 바닥
의 턱을 없애는 것은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죠. 그렇듯 무연고에 대한 장례
현장에서 알게 된 필요한 무언가를 법적으로 정할 수 있으면 우리 사회에서 보편타당한 장례 문화가
만들어지고, 사각지대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사회복지 행정 전문가 박은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우리와 일본 제도를 비교해보면서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장례에서도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연고자가 되고 싶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회가 뒷받침해주지 못한 부분을 낫 부끄럽지만 마주해야 해요.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한 민족’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는 혈연을 떠나 이주민, 다문화가 함께 살 수 있는 포용국가가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 모습을 드러내고 직시할 필요가 있겠죠. 차별화된 사회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민낯을 드러내놓고 함께 이야기 하며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진옥 장례 자원활동하는 분이 자신은 무연고사망자로 죽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무연고사망자로 장례하려고 하냐고 물었더니, “나눔과나눔이 ‘자기결정권’으로서의 장례 문화를 바꾸려 하지 않느냐? 나는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의미로 공영장례의 혜택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막연하게나마 공영장례를 서비스 지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 ‘자기결정권’이라 하면서도 공공에서 지원하는 장례로 마감하겠다는 생각을 못 했던 걸 반성하게 됐어요.

함보현 홈리스 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현행 법제도가 이웃, 공동체에 의한 장례를 가로막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이런 법제도 개선 연구가 우리 공동체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일까요?

박지숙 저는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 그런 제가 공동체를 연구하고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만, 교육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본에서 느낀 건 가마가사키나 도쿄, 나고야 NPO 등에도 차이가 있었어요. 제대로 된 삶을 생각하자면 가마가사키는 버려진 지역이었고, 인정받지 못한 곳이었죠. 하지만



일본어 통역과 자료 번역을 담당한 박지숙 서울대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삶을 위한 모든 장치들을 본인들 스스로가 만들고 이용하고 있었어요. ‘자기결정권’이라는 개념도 몰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뷰했던 스님(장례를 해주시는 분)은 자기 일자리를 위해 시작했다고 말하긴 했지만 어느 지역이든 그런 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면 나고야, 도쿄 등은 같이 고민하던 사람들이 계약 조건으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면서 덩치가 커졌죠. 중요한 지점으로 위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도쿄의 ‘리스시스템’은 사실 있는 분들이 일종의 ‘서비스’처럼 이용하며 금액도 되게 비쌌어요. 그게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가마가사키 쪽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족 대신 죽음’ 혹은 ‘우리의 죽음’, 반면 도쿄 등은 ‘나의 죽음’으로 바라본 것 같아요. 교육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곳에서는 공동체를 스스로 만든 것 같고(가마가사키), 오히려 돈이 있으신 분들이 가족도 있을 것 같은데 NPO에 모두 맡기는 게(리스)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가마가사키에서 아쉬운 건 제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들의 공동체가 ‘요새’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헤매서 빌딩 있는 곳을 갔는데 롯데 타워 비슷한 높은 건물로 안이 보이지 않는 요새처럼(우리나라 쪽방촌이랑 비슷) 가마가사키는 공동체로서 외부와 차단된 분위기였어요. 일본 사회가 그런 빈민촌을 드러나지 않도록 가두는 느낌이었죠. 제도적으로도 차단하고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많이 없어지니 결국엔 공동체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대안은 나고야나 도쿄 쪽이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가마가사키는 이제 존재 자체도 부정당하는 것 같아 아쉽고 아이러니했어요.

예전에 <춤추는 죽음>(진중권 저)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죽음을 시기에 따라 어떻게 다뤄왔는지에 대한 책인데, 예전에는 공동체 죽음으로 지금은 개인화되었죠. <춤추는 죽음>에서도 한바탕 제의를 이야기하고, 박 이사님도 그런 식으로 한 번 치유를 하는 경험이 없으면 이분들이 다시 일어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가마가사키의 제의를 보고 그 책이 생각났어요.

박진옥 우리의 죽음과 나의 죽음으로 구분한 것은 ‘사후 자기결정권’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가족 대신 장례’와 ‘내 뜻대로 장례’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변호사님이 명시적으로 유언이나 계약 관계가 아니었을 때 우리의 죽음이라는 측면에서는 ‘가족 대신 장례’는 공동체가 장례를 하는 것, ‘내 뜻대로 장례’는 돈이든 계약이든 그 계약자가 고인의 뜻대로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것이 가마가사키의 죽음, 그리고 NPO인 나고야, 도쿄의 죽음으로 정의하신 게 박지숙 박사님과 연결됩니다. 박사논문에서 망원시장을 연구하셨는데, 시장공동체가 학습공동체라고 정의한 것에서도 의미가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습의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공간을 지켜내면서 공동체가 유지됐다고 말하는데, 나눔과나눔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의 장례를 생각하면 나눔과나눔은 처음엔 정

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장례가 어떻게 되고, 지금의 모습을 제안하고 사회에 이야기하고, 해야 할 것을 처음부터 세팅하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해서 장례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현상도 경험하는 등 그렇게 학습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가 나온 거죠.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가족 대신 장례, 내 뜻대로 장례’도 처음부터 방향을 잡은 게 아니었죠.

박지숙 사실 제안을 받고 처음엔 시큰둥했었어요. 그런데 제 또래 친구들은 ‘너 그거 잘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산 지도 오래된 친구들이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친구들이 뒷일을 책임져야 하니 연구를 잘 하고 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홍유진 다양한 공동체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혼 공동체도 있고요. 혈연 공동체의 중요성이 약화되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박진옥 장례를 매개로 공동체 문제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경 아까 박은순 선생님께서 혈연 중심의 사회가 깨어진 지 오래데 그것을 붙잡고 있음으로써 가족을 더 해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공동체나 가족의 개념에 비교적 세뇌(?)되지 않은 세대가 이 문제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박지숙 선생님 친구 얘기나 홍 변호사님 이야기도 사실 머릿속으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몸은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늘 익숙한 공동체, 운동권, 가족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함보현 저는 건강한 공동체가 뭔가 생각해봤어요. 공동체라는 말에 매몰되어서 개인이 매몰되는 게 아니라 각자 의지가 살아 있는 그런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다고 봐요. ‘가족 대신 장례, 내 뜻

대로 장례'가 가능해지면 나의 뜻이 반영되는 건강한 사회가 될 거란 생각도 들고, 이런 연구도 변화된 사회상 속에서도 새로운 공동체 모습을 찾아가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자발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진옥 참고로 '가족 대신 장례'라는 명칭은 함 변호사께서 처음 말씀하셨습니다.'가족 대신 장례, 내 뜻대로 장례' 연구팀은 작년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하고, 오사카 가마가사키 홈리스 거주지역을 시작으로 나고야, 도쿄의 NPO 들을 방문하고, 일본의 장례 시스템에 대한 법률적인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사후 자기결정권'에 관한 고민을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하고 현재 입법화를 추진하는 중입니다.

박진옥 '리스시스템'에서 처음으로 '계약 가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고 생전 계약, 사후 위임 계약 등 신조어들을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일본 사회에서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리스의 창립자에 따르면 2020년에 일본 호적법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고, 올해 법원에서 하는 공청회(호적법부회)에 자기가 초대되어 참고인으로 진술할 기회를 얻었다며 자신들의 활동이 어떻게 호적법에 반영될지 기대가 많다고 합니다.

정현경 우리나라 호적법이 장남법만 바뀌고 일본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죠.

양희철 이제 호적법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박진옥 가족관계등록법에 사망신고를 누가 할지 명기가 돼 있어서 장례를 못 치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리스시스템에서 이야기하기를 성년후견인, 임의후견인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게끔 호적법이 바뀌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장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NPO가 내 뜻대로 장례를 할 수 있는 데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고재판소가 일방의 계약 관계에서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례까지의 특약이 유효하다고 본 게 1992년 판결인데, 그 이후에 리스가 사후 위임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스는 1994년에 생겨서 계약관계에 따른 장례를 시작했는데, 계약 관계에 있어도 치매에 걸리면 유효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로 2004년 즈음 성년후견인 제도가 생기면서 민법, 호적법에 장례를 할 수 있는 지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후 위임 계약이 완전히 가능해졌다고 했는데, 판례 후 사후 위임 계약을 하게 된 것이 그것입니다.

양희철 공무원도 애매하면 불안하지만 계약하는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제약이 걸려서 이행을 못 하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하는 겁니다. 후견 계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죠. '내 뜻대로 장례'는 후견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대신 장례'는 별도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요. ‘내 뜻대로 장례’는 두 가지로, 첫째는 정신이 온전한 분이 미리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분들은 위임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사후 위임 계약은 ‘내가 정신이 온전하지만 사망하면 내 장례를 누가 지낼지 모르니깐 사망했을 때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신이 온전치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성년후견, 임의후견, 한정후견을 미리 계약하는 것”으로, ‘성년후견, 한정후견’은 계약이 아니라 법원에 요건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살아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돌아가셨을 때는 사후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계약으로 임의후견인을 정해놓는 거죠.

박진옥 치매에 걸렸으면 계약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혹시 치매에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임의후견까지도 계약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양희철 리스시스템에서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사후 위임 계약을 하면서 임의후견 계약까지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살아 있을 때 혹시 치매에 걸렸다면 임의후견인이 대신 보조하고, 사망하면 리스가 임의후견이지만 사후 장례까지 해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었죠.

박진옥 삼각형 구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자 본인, 리스(서비스기관, 감시기관으로 법무법인 구축), 자금관리기관(회계기관)이 있고, 계약자-리스-회계기관 등으로 안전하게 삼자 계약으로 하게 돼 있고, 누적 계약자가 4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정현경 참고로 왜 NPO인지 설명하면, 일본은 전통적으로 시민단체들을 시민단체라고 하거나 자조그룹이라 불렀는데, NPO법은 1997년 고베 지진 이후 관이 대응을 못 하니 시스템상 체계를 가진 단체를 법인화했는데, 사단법인으로 하기는 어렵고 시민단체로 하기도 어려워서 1997년에 ‘비영리단체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NGO는 일본에서는 통념적으로 국제기구 쪽, 국제 활동 쪽이고 NPO는 우리나라의 시민단체, NPO법에 따른 법인체입니다.

박진옥 일본에는 장례를 지원하는 기관이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상황이 과연 괜찮은지 조사를 했는데, 일본 라이프협회에서 장례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한 뒤에 파탄을 내버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00상조가 위기를 겪은 것처럼 미리 돈을 받는데(가입비, 회비 등)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없게 되니 이후에 일본 사회가 라이프협회 사례를 보면서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재판소의 법률적 근거인 임의후견 제도에 따라서 활동은 하지만 이를 규정하는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기관은 리스, 기즈노카이로 연간 누적 회원 4,000명 정도입니다. 돌아보니 우리가 잘 만나고 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한국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두 곳 느낌이 달랐는데, 우리가 나고야에서 만난 기즈노카이는 처음에 신원 보증 쪽이 강했고,

신원 보증을 하면서 장례까지 갔습니다. 반면 리스시스템은 원래 장례업자인데 생전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장례를 지원할 것인지로 간 케이스라서 접근 방식도 조금씩 다르고 구체적 법률을 근거하지 않고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기즈노카이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장례지원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하지만 리스는 없어요. 기즈노카이는 65세 이상만 가입을 받고 있지만, 리스는 나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특색이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일본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이겠죠.

함보현 일본의 장례지원 시스템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박진옥 다양한 사회 요구에 따라서 단체가 만들어지고 활동하고 있고, 여전히 문제점도 있지만 사회가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두 단체를 보면서 제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공공성을 함께 가져갈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지금 두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돈으로,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도쿄에 갔을 때 백화점에서 꽤 비싼 식당가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연금이 있는 고령자가 혼자 백화점에서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경제성장 시대를 거친 노인이 돈을 내면서 하는 게 이 두 단체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족 대신 장례처럼 돈이 없어도 공공에서 어떻게 사후 결정권을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한 것이어서,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수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후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를 고민하는 것이 과제로, 영리에서는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대신 장례를 한국 사회에 소개하기에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로서 사후 자기결정권을 생각하는 게 우리의 고민이자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정현경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공공성으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지만 포커스는 가족이 아니어도 장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근거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체(리스시스템 등)가 생긴 것이고, 저는 그것이 비단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가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를 대행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보증을 들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의견이 전달된다면 말입니다. 일본의 경우 전에는 어르신들만(가입 신청하러) 왔는데, 요즘은 50대 후반 여성이 남편과 같이 온다고 합니다. 이 법률이 도입되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혈연 중심의 가족 제도를 없앨 수 있는 근거고, 공영 장례 이야기도 더 논쟁이 붙을 것 같고, 더 공적 부조인 국민연금공단은 아니더라도 ‘장례 공단’과 같은 제3의 섹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은 분명히 바뀌어야 하고 그와 관련해 저마다 다른 생각이 나올 것입

니다. 비슷한 예로 유치원만 하더라도 돈을 벌려고 시작해도 공공성이 더해지고 있죠. 법률이 바뀌면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붙으면서 이 논쟁이 확산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공공성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입법 청원이 될 것이니, 더 논쟁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함보현 시장이 활성화되면 빈곤층의 장례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혹은 제도 설계부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공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두 트랙으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의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은순 가족, 혈연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 변화를 보여준 게 요양원이라고 보입니다. 서유럽 복지 국가에서는 사회보험 제도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복지가 빈곤층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 생애 주기가 바뀌었습니다. 노년기도 초년, 중년, 장년기로 나누고 있어요. 지금은 100세 넘는 사람들이 많고, 60은 반밖에 안 산 건데 그 이후의 삶이 다양한 형태의 구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중 하나가 요양원이죠. 요양원 제도는 처음부터 법률을 촘촘하게 만들어놓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후에 법으로 규모나 전문가 조직 등을 제도화 시킨 것이죠. 거꾸로 한 거죠. 우리 사회복지 제도가 대부분 민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만 해도 (일본 개요 보험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의료보험에다가 개인당 얼마씩 떼고 있어요. 장기요양에 들어갔을 때 그 등급에 따라서 지원받고 있는 거죠. 유럽의 사회복지를 보면 동일하게 내지 않아요. 소득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을 내고, 10만 원 벌면 2천 원 내고 차등적으로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병이 났을 때 수술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을 국가가 대신하고, 대신 그 사람은 서비스를 세세하게 고를 수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이런 드레스를 입겠다’, ‘나는 1인실을 쓰겠다’ 등의 선택권이 있는 제도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연고든 기초생활수급자든 제도를 만들면 많은 보편적인 것이 가능하다는 논리에서 국가 보험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누구는 니스처럼 계약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눔과나눔에서 할 것이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제도를 만들게 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하게 하는 여러 제도가 더 생길 거예요.

함보현 오늘 논의가 많이 나왔는데 정리를 하자면 일본 연수를 다녀와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혈연 중심의 공동체 가족을 기반으로 한 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작동을 하더라도 곳곳에서 허점과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연고사망자 등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사후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해서 법제도의 부분을 더 촘촘하게 명문화해 해서라도 국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부회장님, 상임이사님은 이 같은

입법화 과정을 통해야만 현장에서도 그러한 목소리가 대변이 된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장례를 떠나서 최종적으로 나의 장례까지도 고민해보는 것을 일본에서도 많이 배워온 것 같습니다. 더위로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후 사회 변화를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석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 [칼럼] 일본탐방, 일본사회와의 마주이야기

가. 첫 번째 마주이야기: 일상에서 죽음을 마주하다

그 어떤 여름보다 무더웠고 폭염일수가 길었던 2018년 8월,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 한국만큼, 아니 그 이상 덥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무더위 속에서 일주일이 넘는 긴 일정을 어떻게 소화할까 걱정스럽기도 했다. 그래도 다행히 8월 말을 향해 가는 일본의 늦여름은 생각보다는 덥지 않았다. 버거운 일정으로 몸은 지쳐갔지만 함께 했던, 새롭게 만났던 사람들로 머리는 오히려 맑아져갔다. 생각해보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이렇게 실제로 일본은 가게 될 줄이야. 내 기억의 범위에서는 2016년 초반 정도인 것 같다. ‘무연사회’라는 책을 통해 알게 된 ‘가족대신’ 장례하는 NPO. 그 뒤로 일본에 이런 NPO가 있고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떠들고 다녔다. 책의 쪽수를 외울 정도였다. 157쪽. 뜻이 있으면 길이 생긴다고 했던가. 화우공익재단의 연구 지원 사업으로 일본 현지로 가서 일본사회는 어떻게 가족대신 장례를 할 수 있는지, 제도적인 근거는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그곳을 탐방하며 만났던 사람들과 경험했던 일본사회와의 마주이야기를 하나씩 풀어 보려고 한다.

유곽(遊廓)을 걷다

오사카시 니시나리구(西成区)의 북부에 위치한 가마가사키(Kamagasaki, 釜ヶ崎), 행정용어로는 아이린 지구(愛隣地区/あいりん地区)라고 불리는 지역 일대를 오사카 대학 미야모토 교수의 소개를 받으며 둘러봤다. 가마가사키는 오사카 시민들도 잘 가지 않는 지역이라고 한다. 흔히 ‘일본 최대 슬럼가’, ‘일용직 노동자와 노숙자의 집합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 여행안내를 보면 우범지역이니 가지 말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현장 탐방에 있어서 이곳을 빼놓을 수 없었다. 무연고사망자와 빈곤은 서로 떼어 놓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을 소개해 주던 미야모토 교수가 ‘어신등(御神燈)’이 걸려 있고 ‘토비타(Tobita)’라는 글씨가 붙어있는 기둥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는 “지금 이곳부터는 사진을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라며 카메라를 가방에 넣으라고 부탁했다. 그곳은 토비타신치(飛田新地)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 곳이었다. 예전에는 공인을 받아 성매매가 이뤄지기도 했던 곳, 하지만 1958년 매춘방지법 시행 되면서 지금은 요리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입구에서부터 전체를 둘러보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천천히 그곳

의 분위기를 살피며 걸었다. 사실 흔히 '홍등가'라고 하면 붉은색 불빛이 즐비한 거리가 떠오른다. 하지만 방문한 시간이 저녁 6시가 안된 아직은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마가사키의 다른 상점가, 음식점이 있는 거리와 크게 다르지는 않은 느낌이었다. 물론 몇몇 여성이 유리창 너머로 다소곳이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남성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는 모습에서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었다.



유곽 위령비를 마주하다

설명을 들으며 마지막으로 간 곳은 유곽 위령비가 있는 곳이었다.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하기 때문일까? 누군가를 추모하는 공간을 보게 되면 눈길이 머물게 된다. 제일 먼저 「자비공생(慈悲共生)」이라고 글자가 있는 사람 키만한 비석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앞에 놓여 있는 생화는 약간 시들기는 했지만 최근까지 누군가 이곳을 방문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누구까? 이곳에 꽃을 들고 와서 추모를 하는 사람은? 그리고 유곽에 위령비가 세워진 까닭은 무엇일까?

위령비 앞에는 위령비의 유래에 대한 안내석이 있었다. 안내석은 “위령비는 여러 사정으로 토비타 유곽에서 일하고, 거주해 온 다수의 남·녀(유녀)들이 여러 사정과 세간의 악평으로 유곽 밖으로 이주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사망한 영혼의 안녕을 빌며 세워졌습니다.”라고 말로 시작한다. 유곽이라고 하니 그곳에서 버거운 삶을 살았던 여성만을 떠올렸다. 그런데 이 위령비는 유곽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사망한 다수의 남·녀를 기록하고 있다. 생각해보니 유곽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이 여성만 버거운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곳에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 남성의 역할도 필요했을 것이고 이곳에서의 남성의 삶 역시 버거웠을 것이다. 안내판은 이렇게 이어진다. “자모관음은 지역에 공헌해 왔음에도 가족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많은 유녀들의 영혼을 공양하고, 그녀들의 노력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지역이 하나가 되어 모시고

싶다는 생각으로, 동시에 생활 근거지(地元)인 니시나리구 산노산초메(山王三丁目)에 마련한 것입니다”라고 쓰여져 있다. 그리고 말미에 “여기에서 평안히 잠들기를 마음으로부터 바랍니다”라고 마무리 한다. 이 위령비는 토비타 사회복지협회가 2008년 8월에 세웠다고 한다.



일상에서 죽음을 마주하다

이 위령비를 마주하며 단면일수도 있지만, 위령비를 일상 삶의 한 가운데 두고 그곳에 꽃을 올리며 추모하는 이곳 사람들의 일상에서 죽음을 마주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상에서 죽음을 마주한다는 것, 한국사회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 올해 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과 학생과 교사를 기릴 세월호 추모공원이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조성되는 사안에 대해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화장유원지는 안산의 심장인데, 그 곳에 납골당이 웬말이냐며 안산을 죽음의 도시로 만든다고 ‘화랑유원지를 시민품으로 돌려달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사실 봉안시설은 유원지 면적 0.1%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가다가사키 거리를 걸으며 일본사회가 생명과 죽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었다. ‘고양이 신사’였다. 일본에서는 생활 곳곳에 있는 작은 신사가 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일본 내 신사는 약 8만여 곳에 이르지만, 알려지지 않은 작은 신사들까지 포함하면 30만여 곳이 족히 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한다. 고양이 신사는 샤미센이라는 일본의 악기를 만들기 위해 죽어간 많은 고양이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샤미센(三味線, しゃみせん)은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현악기다. 샤미센 몸통 양면에는 동물의 가죽을 붙이는데, 가죽은 본래 고양이의 뱃가죽을 사용했다고 한다. 아마도 근처 유곽에서 노래하기 위해 필요한 샤미센을 만들기 위해 이곳 부근에서 많은 고양이들을 잡아야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신사문화를 통해 일본인은 한국인에 비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살 기회가 많을 것 같다. 죽음은 삶과 결코 구분된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다. 일본 가마가사키의 유곽 위령비와 고양이 신사를 마주하며 죽음을 터부시하는 한국사회도 언젠가는 일상에서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나. 두 번째 마주이야기: 일본 홈리스 거리에서 쪽방을 만나다

‘다다미 널장방’보다 더 작은 ‘쪽방’

‘다다미’는 일본의 전통 방 크기를 말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한국으로 말하면 ‘평’이라고 할까. 일본에서 ‘다다미 널장방’이라고 하면 ‘이보다 더 작고 싸게 구할 수 없는 방’이란 뜻으로 사용된다. 한국으로 치면 고시원이나 쪽방쯤의 이미지로 통한다. ‘다다미 널장방’의 넓이를 굳이 평으로 환산하면 2.25평 정도. 한국의 고시원이 1.5평 내외인 점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넓이인지 대략 느낌이 온다.

오사카시 니시나리구(西成区)의 북부에 위치한 가마가사키(Kamagasaki, 釜ヶ崎)에는 일본의 쪽방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다미 널장방’에도 미치지 못하는 다다미 ‘두 장’ 혹은 ‘세 장’짜리 여관이 홈리스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가마가사키 거리를 걷다보면 입주자를 모집하는 저렴한 숙박업소를 자주 마주하게 된다. 이런 숙박업소는 하루씩, 주간으로 또는 월세로 숙박요금을 낼 수 있다.



한 숙박업소 벽에 붙어 있는 요금표에는 간이숙박여관 다다미 세 장짜리 방이 500엔(약 5천 원 정도), 새로 단장한 듯한 방은 전기요금을 별도로 내야하는데 700엔에서 800엔이었다(약 7천 원에서 8천 원 정도). 여관

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약 1만 원 정도로 하룻밤 누워 잠을 청할 수 있는 것 같다.

거리를 걷다 숙소 현관문에 붙은 홍보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생활보호 응원합니다. 연금도 대환영!!

생활보호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사도 친절하게 돕습니다.”

이렇게 ‘생활보호대상자와 연금대상자’를 특정해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도 있었다. 아마도 이곳에 이런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 아닐까.

그런데 ‘고도의 질서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어떻게 이러한 홈리스 지역이 만들어졌을까? 가마가사키에는 홈리스 지원단체가 몇 군데 있다. 그 중에서 ‘NPO 법인 가마가사키 지원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야마나카씨 만나 홈리스 거리를 함께 걸으며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가마가사키의 지난 과거와 현재를 마주했다.

폐기 처분된 ‘일회용’ 노동자

1970년 일본에서 개최한 세계 박람회, 흔히 일본 만국 박람회(日本万国博覧会)라고 불리는 이 행사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됐다. 이는 1964년 하계 올림픽과 함께 1960년대 일본의 빠른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행사였고, 일본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음을 과시하는 행사였다. 이로 인해 오사카에는 건설 붐이 일어났다. 당연히 많은 남성 노동자가 필요했고, 1960년대 오사카 가마가사키에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 자연스럽게 폭력조직인 야쿠자들이 건설현장을 관리했고, 용역업체까지 운영했다. 때문에 여러 차례 폭동과 경찰과의 충돌 등으로 일본에서 가마가사키는 흔히 말해 ‘슬럼’으로 통하게 된다. 이렇게 도시 이미지가 추락한 후 오사카 정부는 실추된 지역 이미지를 살리고자 이곳을 ‘아이린지구(愛隣地区/あいりん地区)’라는 새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의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건설 산업의 불황, 그리고 건설현장의 기계화로 인한 업무감소로 일용 건설노동자의 실업이 증가했다. 결국 이들은 실업자가 되고 노숙생활을 시작한다. 경기호황기에 정부는 젊은 남성들을 부추겼다. 고향을 떠나라고. 그래서 고향을 떠난 남성들은 혼자 살면서 일용 건설노동자가 됐다. 한 때 이곳의 인구 비율은 남성 90%, 여성 10% 일 때도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젊은 남성들이 이곳으로 몰려왔는지 실감할 수 있다. 그래도 경기 호황기에는 괜찮았다. 언제든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경기 불황기다. 실업자가 되자 이들은 슬럼가에 살고 있는 홈리스 신세가 되고, 정부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어쩌면 정부는 건설에 쓸 ‘일회용 기계’가 필요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곳에 온 것은 ‘일회용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왔던 것이다. 1960년대 30~40대였던 일용 남성 건설노동자들. 이제 그들이 70~80대의 고령의 홈리스로 방치되고 폐기처분된 것이다. 그리고 이곳 가마가사키는 홈리스 거리로 ‘장기실업’, ‘노숙’, ‘독거’, ‘초고령’, ‘고립사’라는 삶의 무게가 심각한 곳이 되었다.

초등학교 벽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안내하던 야마나카 씨가 걸음을 멈추고 퀴즈를 냈다. “여기는 초등학교입니다. 보시면 담벼락에 파이프 관이 보이시지요? 이 관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담벼락에 설치된 ‘파이프 관’이라면 아이들의 놀이를 위한 무엇이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곳이 홈리스 거리라는 점을 주목했어야 했다. 이것은 놀랍게도 초등학교 주변에 홈리스분들이 노숙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치였다. 정답은 ‘스프링클러’. 등하교 시간이면 파이프 관에서 물이 나오고 그러면 노숙하던 사람들이 흐르는 물 때문에 이동한다는 것이다.



이 설명을 들으니 몇 년 전 서울시의회 근처에서 일할 때 경험이 떠올랐다. 그 당시 서울시 의회에서 청소하는 분들이 아침마다 지하보도를 물로 청소했다. 처음엔 깔끔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저녁이면 박스를 치고 잠자리를 만드셨던 분들을 쫓아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초등학교 담벼락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보며 ‘쫓겨나지 않을 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2016년 ‘홈리스 추모제’에서 당사자분이 했던 ‘쫓겨나지 않을 권리’ 발언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일본 초등학교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서울시 의회 앞 물청소를 마주하며 그 당시 발언문이 떠올라 발언 일부를 요약 발췌한다.

“우리에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 질문은 네가 잘못 살아서 거리 잠을 자게 된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는 개인의 불행에 대한 사회의 책임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잠자리와 일자리와 치료 받을 권리입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요구하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쫓겨나지 않을 권리’라는 것은 쫓아내는 놈이 있고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서울역에서, 쪽방에서 우리를 쫓아내는 겁니까? 언제까지 쫓겨나기만 할 겁니까? 밀려서, 또 밀려서 이제는 더 갈 곳도 없는데 가만히 밀려주니까 가마니로 보입니까? 밀껍데기로 보입니까?

지금 도시 시민들이 지하철 탈 때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피나게 투쟁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덕분에 시민들도 편하게 지하철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아야 합니다. 홈리스가 피나게 투쟁하면 나중에 모든 시민들이 살던 방에서 일터에서 병원에서 쫓겨나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은 얻어 죽을 수 없습니다. 죽어서도 무연고 시체처리 될 수 없습니다. 먼저 가신 홈리스 고인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12월 동짓날 하루 전날이 21일에 서울역에서 ‘홈리스 추모제’가 열린다. 열악한 홈리스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사회적인 대책을 요구하며,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홈리스 무연고사망자분들을 위한 제단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 홈리스 추모제를 기회로 일본탐방을 통해 알게 된 바를 더 알릴 예정이다. 앞으로는 혈연과 제도의 틀 안에서 외롭게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없도록 ‘가족 대신 장례’에 대한 공론의 자리가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다. 세 번째 마주이야기: 장례 지원하는 ‘배웅의 모임’스님을 만나다

일본의 장례문화는 불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기 때문이다. 결혼은 기독교식으로 교회에서 했더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러서는 생전에 고인의 종교와 상관없이 불교사찰에서 불교식 장례를 치른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불교만의 독특한 특징인 장의불교(葬儀 佛教)가 성립한 것이다.

오사카시 니시나리구(西成区)의 북부에 있는 가마가사키(Kamagasaki, 釜ヶ崎)에는 고령이 된 독신 일용직 노동자가 많다(관련해서는 일본탐방, 일본사회와의 두 번째 마주이야기 참조). 이들 대부분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홀로 생활하다가 사망한다. 그리고는 가족 또는 친척과 연락이 닿지 않아 무연고사망자로 행정의 매뉴얼에 따라 장례절차 없이 화장된다. 당연히 일반적 장례와 달리 스님도 안 부르고, 불경도 읊지 않는다. 또한, 고인을 위한 법명도 없다. 일본 ‘무연사회’의 한 단면이다.

이곳에 사회적 고립으로 ‘무연사’한 이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가마가사키 배웅의 모임(釜ヶ崎見送りの会)”이 있다. 이 모임은 정토종 승려 스기모토 요시히로(杉本好弘) 씨(74세)의 제안으로 2011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우연이겠지만, 나눔과나눔이 활동을 시작한 년도와 같다. 과연 일본에서는 어떻게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할까? 한국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궁금한 게 많았다.

승려가 되어 가마가사키로 오다

스님과는 NPO 법인인 가마가사키 지원기구(NPO 釜ヶ崎 支援機構)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인사를 나눈 후 놀랍게도 스님의 첫마디는 일본도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면 기본적으로 장례를 할 수 없습니다”였다. 즉, 가족, 친척, 사망자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삼자만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고 친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본인이 스님이 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다. 스님은 원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정년퇴직 후 여생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어릴 적부터 관심을 가졌던 불교를 다시 배우기 위해 불교 대학에 편입학하여 승적을 취득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던 사람이 승려가 되었다고 주지 스님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절의 주지가 되지 못한다면 승려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시기 눈에 띈 곳이 바로 ‘가마가사키’였다. 가마가사키로 오게 된 것은 정식으로 승려 자격을 딴 이듬해인 2010년.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당시 이곳에서는 고령이 된 독신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생활하다 죽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됐다. 게다가 그들은 장례를 치르지 않고 바로 화장해서 시체만 처리되었다. 즉 망자를 기리는 것이 아니다. 망자는 ‘사자(死者)’가 아닌 ‘시체’가,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을 받고 있었다. 이런 곳이다 보니 절에 공양을 드리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라면 스님과 장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곳, ‘가마가사키’로 오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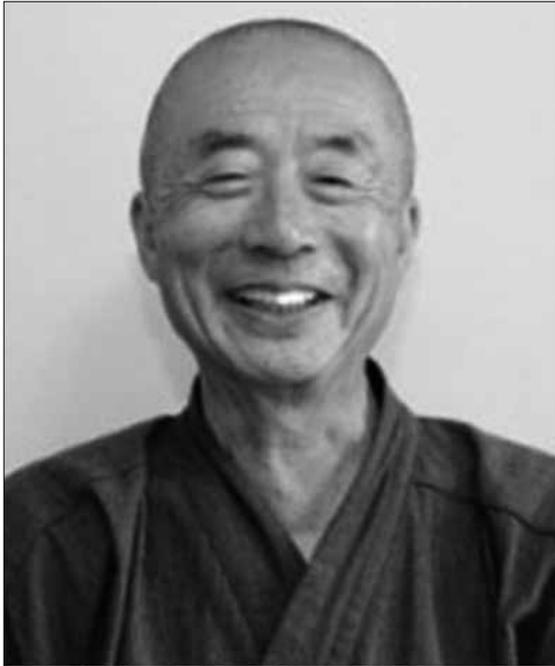
일본탈방팀과 대화하는 스기모토 요시히로 스님

처음 가마가사키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 어떤 이는 “이곳은 산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고, 스님이 활동할 만한 곳이 아닙니다”라고 하기도 했다고 한다. 게다가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스님이 시작한 것은 ‘푸른 하늘 노래방’이었다. 그가 잘하는 아코디언 반주에 노숙하는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하기 차야 미나미 공원(菰ノ茶屋南公園, 통칭 삼각 공원)에서, 그리고 시의 공민관 같은 곳에서 아코디언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생각해 왔던, 여기서 승려로서 혼자 사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러 주는 활동을 하자고 여러 곳에 제안하게 되었다.

장례지원 모임 시작

2011년, 드디어 홀로 사망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자는 취지의 ‘가마가사키 여정의 모임’을 만들었다. 하지만 생각만큼 장례지원은 쉽지 않았다. 혈연의 가족이 아니면 장례식을 치를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장례를 치를 수 없다기보다 사망신고를 낼 수 없으므로 발생하는 어려움이었다.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앞에 두고서 하는 진짜 장례식은 어려우니 사망한 이후라도 그 사람을 보내주는 ‘추도회’ 활동을 목표로 2011년 2월에 모임을 시작했다.

2월에 만들었던 모임이 안타깝게도 그해 여름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가을이 되자 두 개로 갈라진다. 이유는 문제의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스님은 승려이니 문제의식을 ‘장례’에 두었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상의 삶에 문제의식을 두었다. 어쩔 수 없이 두 개로 갈라져서, 남은 사람들끼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자원봉사자든,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든,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든, 모두 평등한 회원으로, 이름도 바뀌어서 2012년 ‘가마가사키 배웅의 모임(見送りの会)’을 다시 시작했다.



홀로 사는 이웃의 장례지원, 새로 역사를 쓰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한 모임은 무엇보다 정체성부터 명확히 했다. “장례를 치르는 상호조합” 이렇게 ‘장례’를 함께 치르는 단체로 지향점을 결정한다. 사실 민간시장에도 이런 조합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이름이 장례부조 상호조합일 뿐, 실제 하는 활동은 회사와 계약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모두가 장례를 함께 치르자는 의미에서의 ‘상호조합’으로 정체성을 결정한 것이다.

또한, 장례지원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장례를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검토하기 시작했다. 모임 내에 법무사였던 분이 계셔서 ‘사후사무계약’을 맺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 명 한 명의 회원과 대표가 1대1로 장례에 대한 임의계약을 맺자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장례를 치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군가가 장례를 치러 달라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을 때 사망 정보를 배움의 모임에서 파악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실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장제급여를 행정예 신청하는 것이었다.

초창기에는 아파트 관리인이나 행정 쪽에, 우리 회원이 사망하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사망은 중요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삼자에게는 유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당했다. 그래서 모임 내에서 논의했던 ‘사후사무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2013년 11월 7일에 니시나리구청 생활원조담당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때 요청했던 것이 ‘생활보호수급자의 사망정보의 제공에 대해서’였다. 다시 말해 배웅의 모임 회원이 사망하면 생활원조담당과에서 배웅의 모임에 사망소식을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이 면담은 성과가 있었다. 구청에서는 장례에 관한 위임계약이 있다는 전제 하에 사망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첫째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장례일시와 장소를 모임에 연락하고, 둘째 장례를 치를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장의업체 또는 장례일시와 장소에 대한 정보를 모임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오사카 시의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정보제공 여부를 최종판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그 후 12월 25일에 반가운 답변이 전해졌다. 오사카시 관계기관이 “가마가사키 배웅의 모임(釜ヶ崎見送りの会)”에 사망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위임계약서 사본, 배웅의 모임의 회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회원증 사본, 그리고 이 사본이 원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 이 세 서류를 구청의 케이스워커(사회복지사)에게 제출하면, 배웅의 모임 회원의 ‘생활보호수급자 카드’에 사망 시 긴급 연락처로 배웅의 모임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만약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고 경찰이 사법해부(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해부)를 하게 될 때에도 똑같이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활보호 수급자가 아닌 회원의 경우에는 검토 결과 어렵다고 했다.

배웅의 모임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니시나리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장례를 요청하면 장례를 지원할지가 고민스럽게 된다. 일례로, ‘미야코지마구’에 사는 회원이 ‘나는 미야코지마구 주민이지만, 미야코지마구에서도 니시나리구처럼 똑같이 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시에 했다. 그리고 미야코지마구에서도 검토한 결과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배웅의 모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활동 범위를 늘릴 역량이 없으므로 ‘니시나리구’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장례는 추모뿐만 아니라 참석 한 사람의 삶을 바꾼다

스님은 배웅의 모임 최초 결성에서부터 구청에 협조를 요청,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연락이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었다. 배웅의 모임의 회원 수는 1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사망 소식을 받으면, 이 회원 모두에게 부고를 알리고 장례 준비를 시작한다. 장례식 참석자는 50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중 일부는 고인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며 장례식이 열린 것에 고마워한다. 이제는 “장례는 사망자 추모뿐만 아니라 참석 한 사람의 삶을 바꾼다”라는 배우의 모임의 이념을 구현한 장례식이 되었다. 배우의 모임은 최후를 맞이하는 때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불안도 제거하는 모임이 되는 것 같다. 이야기를 나누며 나눔과나눔의 ‘인기척’이 떠올랐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힘이 생겨나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이 힘을 믿는 사람이 한국에서 그리고 일본에서도 더 늘어 가기를 희망한다.

* 추가 질의응답

[일본 탐방의 질문]

생전의 복지 문제와 사망한 후의 장례 지원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돼서 같이 하려던 분들이 두 파로 나뉘어서 조직이 분해되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사실 나눔과나눔 우리 사회에서도 보는 시각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전의 문제를 지원에서 더 우선해야지 무슨 사후 장례 문제를 얘기하느냐, 이러면서 한국에서도 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6개월 가까이 내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하셨다면 그것에 대해 스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굳어졌을 거 같아요, 스님께서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후 장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스기모토 스님 답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니시나리에는 살아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단체는 매우 많아요, 하지만 장례를 치르는 곳은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 모임의 회원이 아닌 사람 중에는 ‘만’단위로 셀 수 있는 생활보호 수급자가 니시나리에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회원은 100명밖에 없어요. 그들은 우리 모임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바로 화장되어 버리죠. 저는 승려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고, 또 제가 승려기 때문에 우리 회원 중에는 내 장례를 제대로 치러줄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안심하고, 그것으로부터 살아갈 힘을 갖게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은 산 사람 저쪽은 죽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을 곳이 제대로 보장된다면, 살아갈 힘을 갖게 되는 구나라고 제가 오히려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본 탐방의 질문]

말씀하시면서 장례가 문제가 아니라 사망신고가 문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마친 다음에 사망신고를 누가 하는지, 장례식 다음에 사망신고를 직접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스기모토 스님 답변]

장례의 실무는 장의업체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망신고도 실제로는 장의업체에 부탁드립니다. 사망신고서

를 낼 수 있는 것은 가족, 유족, 거택관리자인데, 거의 거택관리자가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신청합니다. 배웅의 모임에서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의업자 이름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 가족도 없고 친족도 안 한다, 그러면 거택관리자 이름으로 냅니다. 그래서 가끔 거택관리자 중에서 ‘그쪽에서 장례를 하니까 저는 협력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민생위원에게 부탁하고, 거택관리자 수준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안 된다면 민생위원, 거기서도 안 되면 구청장이 하는 거죠.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사후 사무위임계약과 같이 임의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상제권이 임의계약에 명시되어 있으면 유효하다는 판례가 나와 있으므로 그 수임자가 장례 신고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청구한 적이 있지만 거절당했어요. ‘운동’의 측면에서는 임의계약의 수임자가 전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문

화우공익재단 귀하

본 보고서를 귀 재단의 연구용역지원사업 과제인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8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연구책임자 박진옥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상임이사)
연구원 박은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박지숙 (서울대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정현경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한일비교 및 입법·정책 방안 연구

발행일 2019. 9

연구수행기관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연구책임자 박진옥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상임이사)

연구원 박은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박지숙 (서울대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정현경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1, 402호(아현동, 영진빌딩)

홈페이지 www.goodnanum.or.kr | facebook.com/goodnanum | hopenana.bolg.me



법무법인(유) 화우

T 02)6003-7000
www.hwawoo.com

(재) 화우공익재단

T 02)6182-8011
www.hwawoo.or.kr